노동동향

경제일반 동향

최효미*

◈ 경제활동 부진 지속

○ 2003년 7월, 대규모 사업장의 분규영향으로 생산은 증가세 둔화[1)]

- 산업생산은 섬유・의복, 자동차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세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서비스업의 생산(부가가치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내수 출하는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4% 감소하였으나, 수출 출하는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이 10.7% 증가하여 제품 출하 전체는 1.4% 증가함.
- 재고는 석유정제, 반도체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와 제1차금속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9.1% 증가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4.8%포인트 감소한 73.8%로 전월에 비해서도 3.8%포인트 감소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chm@kli.re.kr).

1)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와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등은 '2000년 기준 생산자물가 개편' 결과 반영과 연간보정 작업으로 인해 2000년 1월 이후 자료가 변경됨. 도소매 판매액지수는 2000년 기준으로 개편함에 따라 전체 시계열이 변경되었으며, 경기종합지수도 구성지표의 시계열 변동에 따라 전체 시계열이 변경됨(통계청, 『2003년 7월중 산업활동동향』 2003. 8.을 참조).

<표 1> 생산 동향

(단위 : %, 1996=100, 2000=100)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p			3/4분기
						5월	6월p	7월p
생 산	109.1 (7.2)	106.2 (6.9)	116.4 (11.5)	110.0 (6.1)	112.4 (3.0)	111.3 (-0.9)	112.2 (8.4)	108.0 (0.7)
제 조 업	109.2 (7.2)	106.2 (7.2)	115.8 (11.3)	108.5 (5.8)	112.4 (2.9)	111.3 (-1.2)	112.4 (8.7)	107.7 (0.7)
서 비 스 업	154.1 (9.6)	153.1 (8.5)	157.2 (7.1)	149.0 (1.6)	154.3 (0.2)	155.6 (-1.0)	155.5 (2.0)	155.9 (1.1)
출 하	109.6 (6.8)	106.2 (6.3)	116.4 (11.0)	110.0 (4.8)	112.4 (2.8)	111.3 (-1.1)	112.2 (8.8)	108.0 (1.4)
재 고	102.8 (-5.9)	102.1 (-3.3)	104.9 (-0.4)	112.2 (10.1)	113.0 (9.9)	113.5 (11.8)	113.0 (9.9)	113.7 (9.1)
평 균 가 동 률	78.2	78.4	78.8	78.6	77.1	75.8	77.6	73.8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서비스업 생산은 1996=100, 평균가동률은 %, 그 외에는 2000=100.
서비스업 생산은 『2002년 7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참조한 것임.
생산, 출하, 재고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광공업동태조사」에 기초함.
평균가동률은 제조업 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에 기초함.
자료 : 통계청, 『2002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03. 8.

[그림 1]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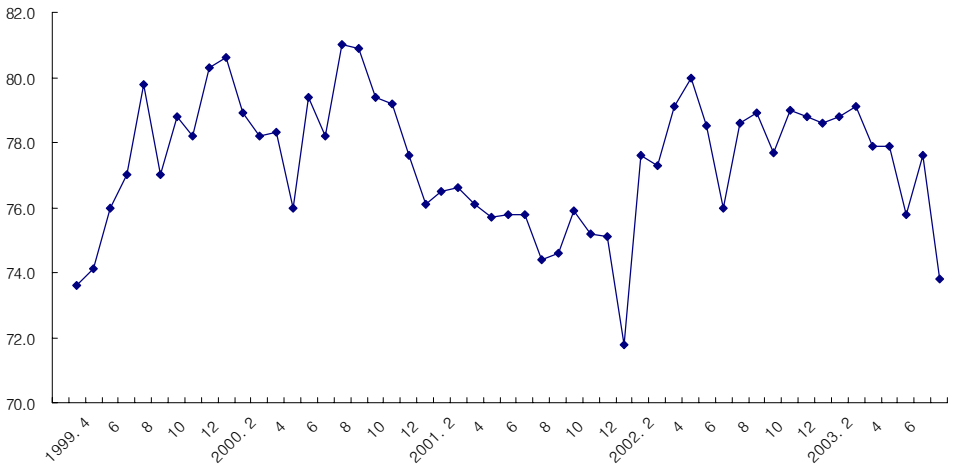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2003년 7월의 소비는 감소

– 도소매 판매는 도매업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분규 영향으로 자동차 판매 감소와 소매 판매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 내구소비재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2.6% 감소하고, 비내구소비재가 1.2%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3.6% 감소

<표 2> 소비 동향

(단위 : 2000=100)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p	5월	6월p	3/4분기 7월p
도 소 매 판 매	115.4 (8.6)	113.6 (7.4)	120.7 (7.1)	113.4 (1.5)	113.4 (-1.7)	115.6 (-1.9)	111.9 (-0.4)	109.9 (-1.8)
내수용 소비재 출하	111.5 (7.1)	109.2 (4.7)	116.2 (9.5)	106.4 (-1.6)	103.2 (-7.4)	104.2 (-11.2)	112.1 (-4.2)	100.5 (-3.6)
내 구 재	125.2 (14.4)	118.3 (10.0)	123.8 (15.1)	109.8 (-4.4)	109.4 (-12.6)	112.1 (-16.8)	104.0 (-10.7)	99.6 (-12.6)
비 내 구 재	105.1 (3.3)	104.9 (2.0)	112.7 (6.9)	104.9 (-0.1)	100.3 (-4.6)	100.5 (-8.1)	102.3 (-0.6)	101.8 (1.2)

주 : 도・소매업 판매지수는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도소매업동태조사」에 기초함.

자료 : 통계청, 『2003년 7월 중 산업활동동향』, 2003. 8.

○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건축허가 면적, 종합주가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4% 증가한 107.0을 기록

–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월에 98.7

– 한편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 비농가취업자수 등이 증가하여 114.7

<표 3> 경기종합지수 동향

(단위 : 2000=100)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p	5월	6월p	3/4분기 7월p
선행종합지수	108.5	107.1	107.8	107.3	105.9	105.4	106.6	107.0
동행종합지수	110.0	111.2	113.2	114.9	114.5	114.4	114.6	114.7
후행종합지수	110.1	112.1	112.8	114.9	116.3	116.3	117.0	117.9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8	100.6	101.0	101.2	99.5	99.4	99.1	98.7

자료 : 통계청, 『2003년 7월 중 산업활동동향』, 2003. 8.

[그림 2] 경기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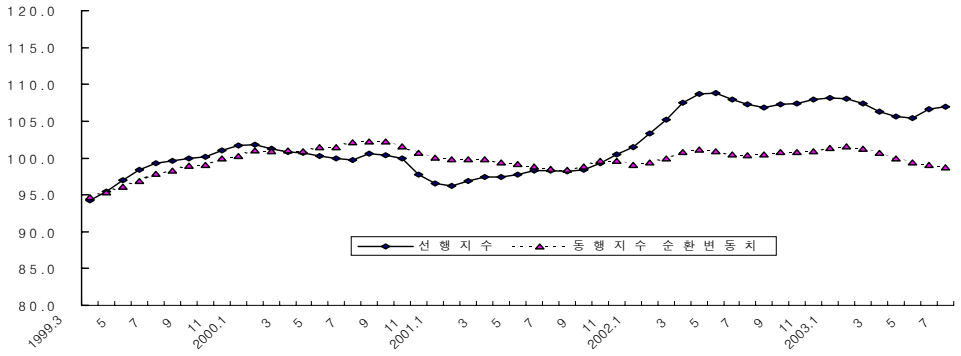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8월중 물가 다시 상승

○ 2003년 8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0%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부문별로 보면, 도시가스 요금 인하에 따른 공공서비스 부문 물가는 하락했으나, 잦은 비로 인한 과실 및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식료품 및 주거비 부문의 물가가 상승

–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5%, 전월대비 0.7% 상승

○ 8월 중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는 1.9%, 전월대비로는 0.4% 각각 상승

– 장마로 인한 채소류 및 과실류의 출하물량 감소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산품 물가 상승으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됨.

<표 4> 물가지수 동향

(단위 : 전년동월대비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6월	7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106.9 (2.7)	107.4 (2.6)	107.9 (3.3)	109.8 (4.1)	110.5 (3.4)	110.2 (3.0)	110.1 (3.2)	110.6 (3.0)
생활 물가지수	108.0 (2.6)	108.2 (2.1)	108.5 (3.0)	111.1 (4.6)	111.7 (3.4)	111.2 (3.1)	111.2 (3.7)	112.0 (3.5)
생산자 물가지수	99.7 (-0.5)	99.2 (-0.2)	99.7 (1.6)	101.2 (3.0)	101.0 (1.3)	100.5 (1.1)	100.7 (1.6)	101.1 (1.9)

주 : 1) 소비자물가지수란 도시가구가 소비생활 영위를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총 516개 품목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됨.
2) 생활물가지수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쌀, 배추, 쇠고기 등 156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3) 생산자물가지수란 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물가지수로 총 94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생산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 판매가격(공장도 가격)을 사용하여 작성함.
4)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8월 중 생산자물가 동향』, 2003. 9.
통계청, 『2003년 8월 중 소비자물가 동향』, 2003. 8.

◈ 무역수지 흑자 지속

○ 2003년 8월 중 수출은 154.8억달러, 수입은 135.6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9.3억달러 흑자를 기록, 4월 이후 흑자 지속

- 2003년 8월 중 수출(통관기준)은 154.8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9% 증가
- 2003년 8월 중 수입(통관기준)은 135.6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

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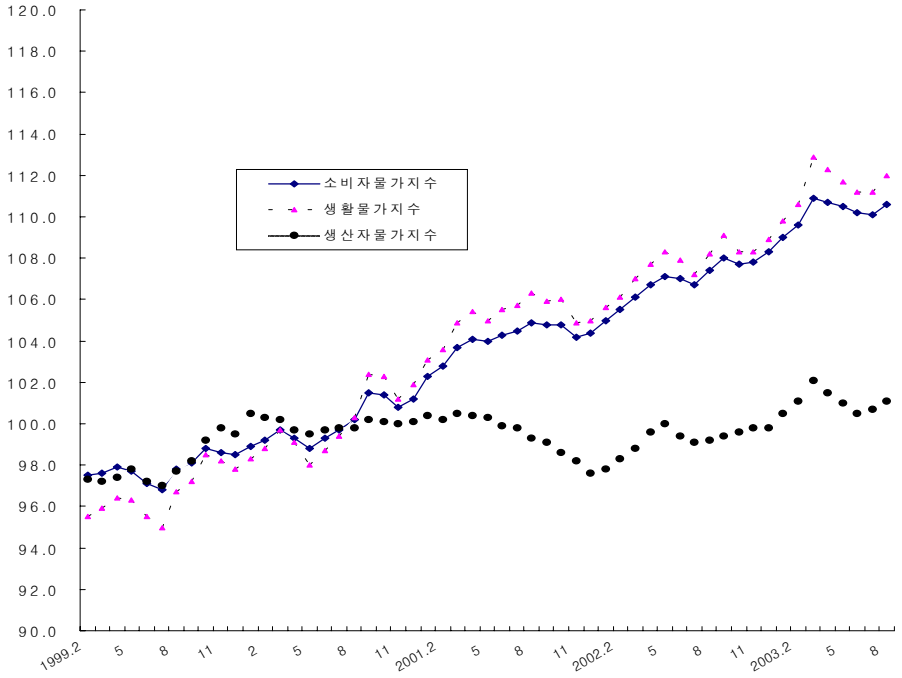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표 4> 대외거래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원/달러)

	2002			2003				
							3/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p	6월p	7월p	8월p
경 상 수 지	1,600.1	929.4	1,970.6	-1,721.3	2,524.4	1,709.9	425.9	-
수 출 액 [1]	40,252 (4.9)	41,255 (15.9)	45,308 (24.6)	43,054 (20.7)	46,088 (14.5)	15,678 (21.6)	15,467 (15.5)	15,483 (10.9)
수 입 액 [1]	37,192 (7.8)	38,884 (13.8)	42,262 (23.1)	44,211 (30.8)	41,680 (12.1)	13,400 (12.3)	14,850 (14.0)	13,556 (5.4)
평 균 환 율	1,269.5	1,196.6	1,220.6	1,201.0	1,208.9	1,194.0	1,181.6	1,178.4

주 : 1) 통관기준.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자원부, 『2003년 8월 수출입 실적(잠정)평가』, 2003. 9.
한국은행, 『2003년 7월 중 국제수지동향(잠정)』, 2003. 8.
_____, 경제통계 DB.

노동동향

고용 동향

최효미*

◈ 고용사정 여전히 부진

○ 2003년 8월 중 실업자는 전년동월에 비해 65천명 증가한 756천명(실업률 3.3%)을 기록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4%(-97천명) 감소한 22,126천명을 기록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한 22,883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한 14,508천명
- 경제활동참가율은 61.2%로 전년동월 61.9%에 비해 0.7%포인트 하락

○ 전월대비 경제활동상태별 변화를 보면, 실업자는 25천명 감소하고, 취업자는 330천명 감소
- 8월 중 실업자수의 감소는 개학을 앞둔 재학생들의 구직활동 감소에 기인

◈ 실업자수 증가세 둔화

○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20대와 40대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2천명, 30천명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세는 둔화되는 경향
- 전월대비 실업자수는 개학을 앞둔 29세 이하와 60세 이상 계층에서만 약간 감소하고, 다른 연령층에서는 증가
- 40~49세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0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15천명 증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chm@kli.re.kr).

<표 1>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6월	7월	8월
경제활동인구	23,112 (2.0)	23,067 (1.8)	22,989 (1.4)	22,439 (0.4)	23,055 (-0.2)	23,138 (-0.1)	23,238 (0.2)	22,883 (-0.1)
참가율	62.6	62.3	62.0	60.3	61.8	62.0	62.2	61.2
취업자	22,423 (2.7)	22,416 (2.4)	22,326 (1.8)	21,633 (0.6)	22,303 (-0.5)	22,383 (-0.6)	22,456 (-0.3)	22,126 (-0.4)
실업자	689	652	663	806	751	755	781	756
실업률	3.0	2.8	2.9	3.6	3.3	3.3	3.4	3.3
비경제활동인구	13,807 (-0.5)	13,944 (-0.2)	14,107 (0.4)	14,755 (1.9)	14,243 (3.2)	14,192 (2.9)	14,128 (2.4)	14,508 (2.9)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2003년 8월 고용동향』, 2003. 9.

<표 2> 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6월	7월	8월
전체	689 (3.0)	652 (2.8)	663 (2.9)	806 (3.6)	751 (3.3)	755 (3.3)	781 (3.4)	756 (3.3)
15~19세	36 (10.6)	34 (9.6)	33 (11.2)	38 (11.6)	31 (11.2)	43 (14.9)	56 (14.7)	27 (8.1)
20~29세	291 (6.0)	271 (5.7)	291 (6.1)	387 (8.2)	331 (7.1)	323 (6.9)	329 (6.9)	317 (6.8)
30~39세	173 (2.7)	167 (2.6)	176 (2.8)	177 (2.8)	179 (2.8)	178 (2.8)	178 (2.8)	182 (2.9)
40~49세	110 (1.8)	107 (1.8)	99 (1.6)	118 (2.0)	126 (2.0)	127 (2.0)	132 (2.1)	147 (2.4)
50~59세	56 (1.8)	51 (1.6)	48 (1.5)	69 (2.2)	67 (2.0)	68 (2.1)	65 (2.0)	67 (2.1)
60세 이상	23 (1.0)	21 (0.9)	17 (0.8)	18 (0.9)	18 (0.8)	16 (0.7)	21 (0.9)	17 (0.8)

주 :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03년 8월 고용동향』, 2003. 9.

「그림 1」 연령계층별 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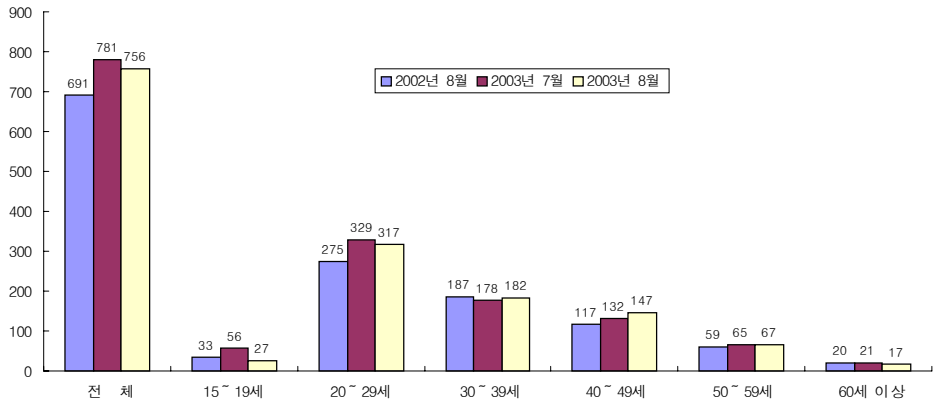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3년 8월 고용동향』, 2003. 9.

○ 2003년 8월 중 대졸(초대졸 포함) 이상 실업자는 2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천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학력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 학력자와 고졸자의 실업률이 각각 0.1%포인트, 0.5%포인트 상승
- 대졸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7천명 증가, 전월대비로도 12천명 증가
- 반면 고졸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4천명 증가하였으나, 전월에 비해 43천명 감소하여 증가세가 완화됨.
-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0.3%포인트 증가

<표 3>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2002			2003				
							3/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7월	8월
전 체	689 (3.0)	652 (2.8)	663 (2.9)	806 (3.6)	751 (3.3)	755 (3.3)	781 (3.4)	756 (3.3)
중졸 이하	135 (2.0)	129 (1.9)	123 (1.9)	116 (2.0)	110 (1.8)	113 (1.8)	129 (2.1)	136 (2.3)
고 졸	343 (3.4)	328 (3.2)	325 (3.2)	426 (4.3)	385 (3.9)	399 (4.0)	426 (4.2)	383 (3.9)
대졸 이상	211 (3.4)	194 (3.1)	216 (3.4)	264 (3.9)	256 (3.7)	243 (3.5)	226 (3.2)	238 (3.4)

주 :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03년 8월 고용동향』, 2003. 9.

◈ 취업자수 감소세 지속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취업자는 97천명(-0.4%) 감소한 22,126천명

–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농림어업에서는 각각 206천명, 159천명 감소하였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는 281천명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40대에서 144천명 증가한 반면, 20대에서는 131천명이 감소

– 2003년 8월 중 임금근로자수는 14,149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119천명(0.8%)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85천명(5.6%) 증가한 7,236천명

○ 전월대비 전체 취업자는 330천명(-1.5%) 감소

– 전월대비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11천명, -1.9%), 제조업에서 (-105천명, -2.5%) 감소하는 등 모든 산업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함.

<표 4>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6월	7월	8월
전 산 업	22,423 (2.7)	22,416 (2.4)	22,326 (1.8)	21,633 (0.6)	22,303 (-0.5)	22,383 (-0.6)	22,456 (-0.3)	22,126 (-0.4)
농림어업	2,251 (-5.1)	2,252 (-5.3)	2,046 (-4.0)	1,699 (-1.6)	2,127 (-5.5)	2,152 (-6.0)	2,102 (-6.5)	2,078 (-7.1)
광업	18 (5.9)	16 (-15.8)	17 (-10.5)	17 (-15.0)	17 (-5.6)	18 (5.9)	18 (12.5)	16 (6.7)
제조업	4,258 (-0.5)	4,214 (-0.3)	4,251 (-1.2)	4,168 (-1.7)	4,238 (-0.5)	4,225 (-0.4)	4,220 (0.2)	4,115 (-1.8)
건설업	1,791 (11.7)	1,781 (8.5)	1,812 (7.9)	1,734 (8.3)	1,854 (3.5)	1,864 (2.9)	1,843 (1.4)	1,799 (4.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004 (2.9)	6,017 (1.8)	5,977 (0.1)	5,919 (-1.2)	5,834 (-2.8)	5,839 (-2.9)	5,883 (-3.2)	5,772 (-3.4)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5,957 (6.7)	5,977 (7.1)	6,047 (6.9)	5,927 (2.6)	6,055 (1.6)	6,110 (1.9)	6,233 (4.1)	6,214 (4.7)
전기·운수· 창고 및 금융업	2,145 (0.0)	2,159 (0.9)	2,175 (0.6)	2,168 (0.8)	2,178 (1.5)	2,174 (1.3)	2,158 (-0.6)	2,131 (-1.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03년 8월 고용동향』, 2003. 9.

◈ 신규실업자 비율은 감소, 전년대비로는 크게 증가

○ 2003년 8월 중 신규실업자는 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14천명) 증가
- 8월 중 전직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1천명(7.8%) 증가한 715천명
- 비중에 있어서는 신규실업자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전직실업자의 비율은 증가세

○ 2003년 8월 중 전직실업자의 구직기간을 살펴보면,
- 3개월 미만인 경우가 61.0%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동기에 비해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전직실업자의 구직기간은 다소 짧아지는 경향
- 구직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전직실업자의 비중은 전년동월에 비해 크게 줄어듦.

<표 5> 구직기간별 실업자

(단위 : 천명,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6월	7월	8월
신규실업자	43 [6.2]	30 [4.6]	37 [5.6]	106 [13.2]	60 [8.0]	55 [7.3]	59 [7.6]	42 [5.5]
전직실업자	646 [93.8]	622 [95.4]	626 [94.4]	700 [86.8]	692 [92.1]	700 [92.7]	722 [92.4]	715 [94.5]
3개월 미만	385 [59.6]	360 [57.9]	334 [53.4]	459 [65.6]	443 [64.0]	432 [61.7]	463 [64.1]	436 [61.0]
3~5개월	178 [27.6]	175 [28.1]	191 [30.5]	189 [27.0]	186 [26.9]	199 [28.4]	194 [26.9]	192 [26.9]
6~11개월	66 [10.2]	67 [10.8]	84 [13.4]	51 [7.3]	60 [8.7]	67 [9.6]	64 [8.9]	83 [11.6]
12개월 이상	16 [2.5]	20 [3.2]	17 [2.7]	2 [0.3]	2 [0.3]	2 [0.3]	2 [0.3]	3 [0.4]

주 :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근로시간 크게 감소

○ 2003년 8월 중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43.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4시간, 전월에 비해서도 2.2시간 줄어듦.
- 2003년 8월 중 전체 취업자의 근로시간도 전년동월 46.4시간에서 1.2시간 감소
- 이는 여름휴가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와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 증가에 기인

– 전년동월대비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시간이 단축됨.
– 전월대비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을 살펴보아도 모든 지위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특히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함.

<표 6>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주당근로시간

(단위 : 시간/주)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6월	7월	8월
전 체	50.8	48.4	50.2	49.2	50.0	50.6	47.4	45.2
임금근로자	49.8	47.3	49.7	48.8	49.3	49.2	45.8	43.1
상용직	51.0	47.4	50.8	49.1	50.6	50.6	46.1	42.0
임시직	51.5	49.5	51.1	50.6	50.4	50.1	48.0	46.1
일용직	43.3	42.4	44.0	42.0	42.4	42.5	39.8	39.6
비임금근로자	52.5	50.4	51.0	50.0	52.6	53.0	50.2	48.9
고용주	56.8	54.7	56.1	56.7	56.9	57.0	54.6	52.5
자영자	51.7	49.5	49.8	48.2	51.7	52.2	49.1	47.6
무급가족종사자	50.6	49.1	49.6	48.2	51.0	51.6	49.1	48.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동동향

임금 동향

강승복*

◈ 전년보다 낮은 임금상승률 지속

○ 2003년 6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168천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1% 상승

- 이는 전년동월의 임금총액 상승률 9.9%보다 1.8%포인트 하락한 수치임.
- 1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2,274천원으로 5인 이상 사업체와 동일한 8.1%의 상승률 기록
- 1~6월(상반기) 임금총액은 2,05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상승
- 4~6월(2/4분기) 임금총액은 2,014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3% 상승
- 2003년 6월 임금변화의 특징은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 및 정액급여 상승률의 둔화세 지속, 서비스업 임금상승률의 둔화, 규모간 임금격차 소폭 확대 등임.

○ 실질임금 상승률도 전년보다 2.2%포인트 하락

- 2003년 6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동월에 비해 4.9% 상승
- 이는 전년동월의 실질임금 상승률 7.1%보다 2.2%포인트 낮은 것
- 올 들어 전년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임금 상승률은 명목임금 상승률보다 3.2%포인트 낮게 나타남.
- 1~6월(상반기) 실질임금은 전년동기대비 6.7% 상승하였으며 4~6월(2/4분기)로는 4.7% 상승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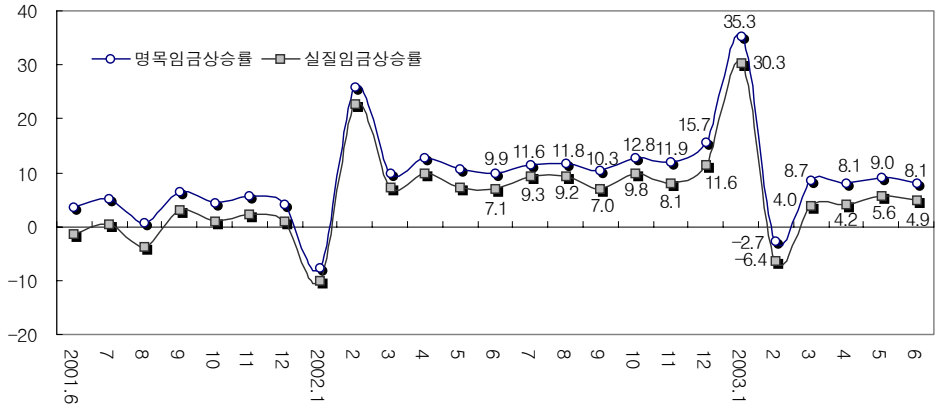

<표 1>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원,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임 금 총 액	1,860 (11.0)	1,994 (11.2)	2,076 (13.8)	2,102 (12.9)	2,014 (8.3)	1,866 (9.0)	2,168 (8.1)
정 액 급 여	1,396 (12.0)	1,415 (11.6)	1,453 (12.7)	1,494 (9.0)	1,513 (8.4)	1,519 (8.5)	1,520 (8.4)
초 과 급 여	127 (-2.8)	127 (-3.3)	133 (-1.4)	128 (9.3)	135 (6.5)	138 (8.0)	137 (7.7)
특 별 급 여	338 (12.9)	452 (14.7)	490 (22.2)	481 (28.5)	366 (8.4)	209 (13.5)	511 (7.3)
실 질 임 금	1,740 (8.1)	1,856 (8.4)	1,924 (10.2)	1,915 (8.5)	1,822 (4.7)	1,689 (5.6)	1,967 (4.9)
소비자 물가	106.9 (2.7)	107.4 (2.6)	107.9 (3.3)	109.8 (4.1)	110.5 (3.4)	110.5 (3.2)	110.2 (3.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1월 이후 정액급여 상승률 둔화 지속

○ 정액급여 및 특별급여 상승률은 둔화한 반면, 초과급여 상승률은 오름세

- 2003년 6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는 1,520천원으로 전년동월(1,403천원)에 비해 8.4%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의 상승률 12.0%보다 낮은 상승률 기록
- 최근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정액급여 상승률은 2003년 1월 이후 전년보다 낮은 수치 지속
- 반면 초과급여 상승률은 7.7%로 전년의 -4.7%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특별급여는 511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3%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의 상승률 8.4%보다는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 1~6월(상반기) 상승률은 정액급여 8.7%, 초과급여 7.9%, 특별급여 19.0%로 나타났으며 4~6월(2/4분기)로는 각각 8.4%, 6.5%, 8.4%를 기록

[그림 2] 정액급여 상승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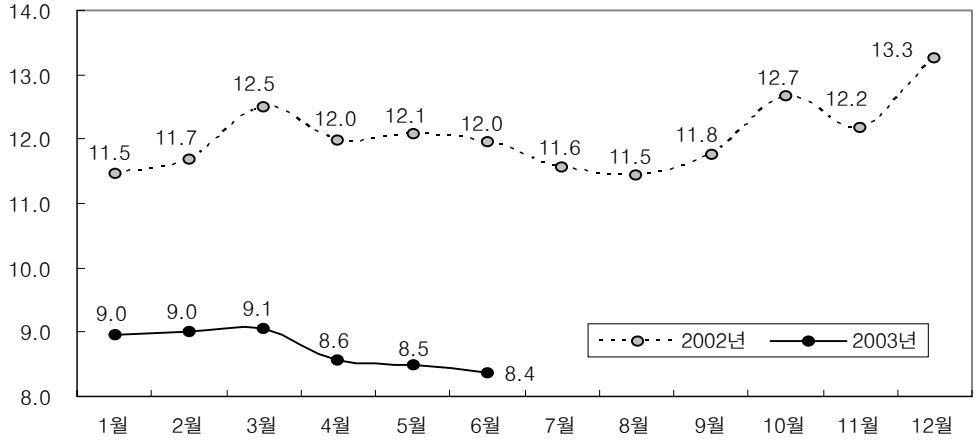

○ 정액급여가 임금상승률을 주도
– 2003년 6월 임금총액 상승률 8.1%를 100이라 놓을때 정액급여의 기여율은 72.4%로 전체 임금상승률의 대부분을 차지[1)]
– 초과급여의 기여율은 6.0%, 특별급여의 기여율은 21.5%를 기록

◈ 시간당 임금은 6.7% 상승

○ 2003년 6월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10,576원, 9,296원을 기록
–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6.7%, 5.9% 상승한 수치임.
–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6월 들어 총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한데 영향을 받아 임금총액 상승률(8.1%)보다 낮은 상승률 기록

1) 임금상승률에 대한 내역별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

$$\frac{\triangle TWG}{TWG} = \frac{\triangle RWG}{RWG}\frac{RWG}{TWG} + \frac{\triangle OWG}{OWG}\frac{OWG}{TWG} + \frac{\triangle SWG}{SWG}\frac{SWG}{TWG}$$

– 1~6월(상반기) 시간당 임금은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이 각각 9,980원, 8,786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9%, 10.2% 상승

– 4~6월(2/4분기)로는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이 각각 9,699원, 8,451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8%, 5.9% 상승

<표 2> 시간당 임금상승률 동향

(단위 : 천원, 원,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산업	임금총액(천원)	1,860(11.0)	1,994(11.2)	2,076(13.8)	2,102(12.9)	2,014(8.3)	1,866(9.0)	2,168(8.1)
	시간당임금(원)	8,994(14.8)	9,648(15.3)	9,681(13.1)	10,272(11.6)	9,699(7.8)	9,012(15.4)	10,576(6.7)
제조업	임금총액(천원)	1,747(10.7)	1,909(11.9)	2,028(17.3)	1,984(13.7)	1,873(7.2)	1,713(6.9)	2,033(7.2)
	시간당임금(원)	7,979(14.4)	8,784(15.0)	8,896(15.2)	9,134(11.4)	8,451(5.9)	7,744(12.3)	9,296(5.9)

주 : 1)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3)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정상근로시간+1.5×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그림 3] 명목임금 및 시간당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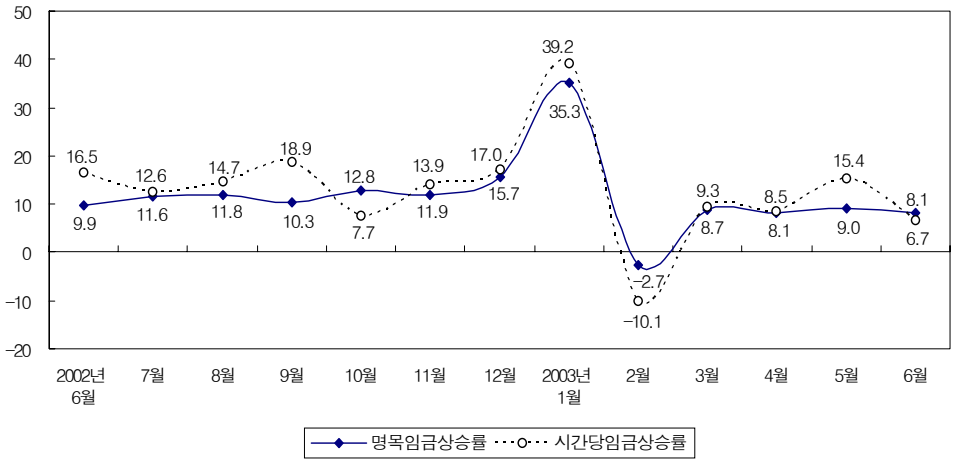

◈ 서비스업의 임금상승률 둔화세

○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낮은 상승률 기록

– 2003년 6월 건설업과 금융·보험업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11.3%, 11.8%로 전산업 평균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의 임금상승률은 6%대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승률을 기록

<표 3> 산업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 천원/월,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산 업	1,860(11.0)	1,994(11.2)	2,076(13.8)	2,102(12.9)	2,014(8.3)	1,866(9.0)	2,168(8.1)
제조업	1,747(10.7)	1,909(11.9)	2,028(17.3)	1,984(13.7)	1,873(7.2)	1,713(6.9)	2,033(7.2)
건설업	1,772(8.6)	1,932(9.0)	1,937(12.9)	2,058(14.7)	1,937(9.3)	1,826(9.0)	2,061(11.3)
도매 및 소매업	1,819(10.6)	1,925(9.9)	1,983(6.4)	2,064(13.0)	1,985(9.1)	1,816(9.0)	2,140(7.4)
숙박 및 음식점업	1,337(16.4)	1,385(14.3)	1,436(19.7)	1,409(8.5)	1,415(5.8)	1,312(6.1)	1,502(6.6)
운수창고통신업	1,930(8.3)	1,959(9.2)	2,051(10.8)	2,040(15.6)	2,115(9.6)	1,816(9.8)	2,302(8.2)
금융 및 보험업	2,720(16.4)	2,936(10.8)	3,080(14.5)	3,520(16.3)	3,050(12.1)	2,959(20.1)	3,257(11.8)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727(15.5)	1,764(12.5)	1,823(13.5)	1,817(6.9)	1,811(4.9)	1,728(4.7)	1,915(6.1)
사회개인서비스업	1,969(11.2)	2,123(13.8)	2,119(14.4)	2,165(10.6)	2,131(8.2)	2,062(10.1)	2,231(6.6)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규모간 임금격차 소폭 확대

○ 5~9인 사업체의 임금, 500인 이상 사업체의 49.6% 수준
–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00인 이상 규모가 전년동월에 비해 9.4%로 가장 높고 10~29인이 3.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하지만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9.4%는 전년동월의 15.7%에 비하여 6.3%포인트나 감소한 수치

○ 규모간 임금격차 소폭 확대
– 5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규모간 격차는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모든 규모에 소폭 확대
– 전년동월과 비교한 500인 이상 규모와의 임금격차는 300~499인 사업체에서 3.6포인트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

<표 4>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지수 : 500인 이상=100)

(단위 : 천원,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규 모	1,860 (11.0)	1,994 (11.2)	2,076 (13.8)	2,102 (12.9)	2,014 (8.3)	1,866 (9.0)	2,168 (8.1)
5 ~ 9인	1,421 (9.8)	1,519 (9.2)	1,503 (9.7)	1,509 (5.0)	1,479 (4.1)	1,441 (5.6)	1,547 (5.4)
10 ~29인	1,654 (9.5)	1,745 (4.7)	1,767 (7.2)	1,787 (6.5)	1,728 (4.5)	1,687 (9.6)	1,800 (3.4)
30 ~99인	1,789 (11.5)	1,919 (10.5)	1,925 (9.6)	1,965 (9.5)	1,910 (6.8)	1,827 (9.5)	2,037 (7.8)
100~299인	1,958 (12.5)	2,119 (17.7)	2,233 (18.0)	2,150 (12.7)	2,160 (10.4)	1,966 (7.2)	2,322 (7.6)
300~499인	2,233 (8.0)	2,384 (10.2)	2,577 (14.9)	2,394 (9.1)	2,380 (6.6)	2,111 (4.5)	2,589 (4.9)
500인 이상	2,534 (14.9)	2,739 (17.9)	3,065 (26.5)	3,123 (23.0)	2,763 (9.1)	2,366 (8.3)	3,119 (9.4)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특별급여가 규모별 임금격차 확대를 주도

– 2003년 6월의 규모별 특별급여 상승률을 보면, 5~9인 및 10~29인 사업체는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300~499인 및 500인 이상 사업체는 전년동월보다 높게 나타나 특별급여가 규모별 임금격차 확대를 주도

[그림 4] 규모별 특별급여 상승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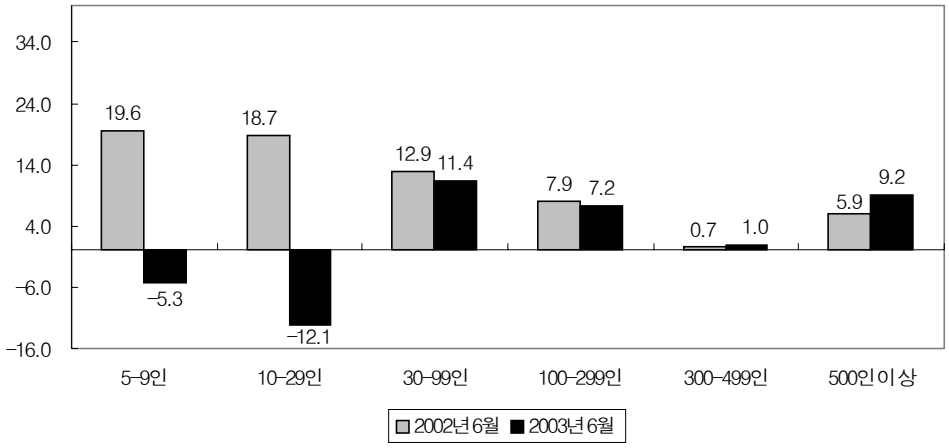

◈ 성별 임금격차 소폭 확대 경향 지속

○ 남성의 임금상승률이 여성에 비해 높아 성별 임금격차가 소폭 확대

- 2003년 6월 남성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8.6%를 기록하여 여성의 6.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남성의 임금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여성의 임금수준은 62.6로 전년동월(63.9)과 비교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
- 2002년 10월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전년동월에 비해 확대되는 추세를 유지

<표 5> 성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지수 : 남성=100)

(단위 : 천원,%)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체	1,860 (11.0)	1,994 (11.2)	2,076 (13.8)	2,102 (12.9)	2,014 (8.3)	1,866 (9.0)	2,168 (8.1)
남 성	2,090 (10.6)	2,242 (11.3)	2,352 (14.2)	2,376 (13.8)	2,274 (8.8)	2,100 (9.3)	2,450 (8.6)
여 성	1,340 (11.7)	1,435 (10.2)	1,455 (11.9)	1,487 (10.6)	1,430 (6.7)	1,342 (8.5)	1,534 (6.5)

주 : 1)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전년보다 더딘 임금교섭, 낮은 협약임금 상승률 지속

○ 2003년 8월 31일 현재 협약임금 상승률(임금총액 기준)은 6.6%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6.9%보다 0.3%포인트 하락

- 임금교섭 타결업체 중 임금인상업체의 비율은 85.1%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89.4%보다 감소
- 반면 동결업체 비중은 14.7%로 전년 같은 기간의 10.4%보다 증가하였으며, 하향조정업체의 비중은 0.2%로 동일
-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상승률은 6.6%로 전년동기의 7.1%보다 하락하였으나 공공부문은 5.8%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4.6%에 비해 높은 상승률 기록

○ 임금교섭은 전년동기에 비해 더디게 진행 중

- 2003년 8월 31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5,751개소 중 3,372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58.6%의 진도율을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의 65.1%에 비해 더디게 진행 중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59.4%로 5,575개소 중 3,311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공공부문은 176개소 중 61개소가 타결되어 34.7%의 진도율을 기록

<표 6>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3년 8월 31일 현재)

(단위 : 개소, %)

	지도대상업체(A)	타결업체(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상승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5,751 (5,401)	3,372 (3,517)	58.6 (65.1)	6.6 (6.9)
민간부문	5,575 (5,236)	3,311 (3,453)	59.4 (65.9)	6.6 (7.1)
공공부문	176 (165)	61 (64)	34.7 (38.8)	5.8 (4.6)

주 :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5]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 추이(2002,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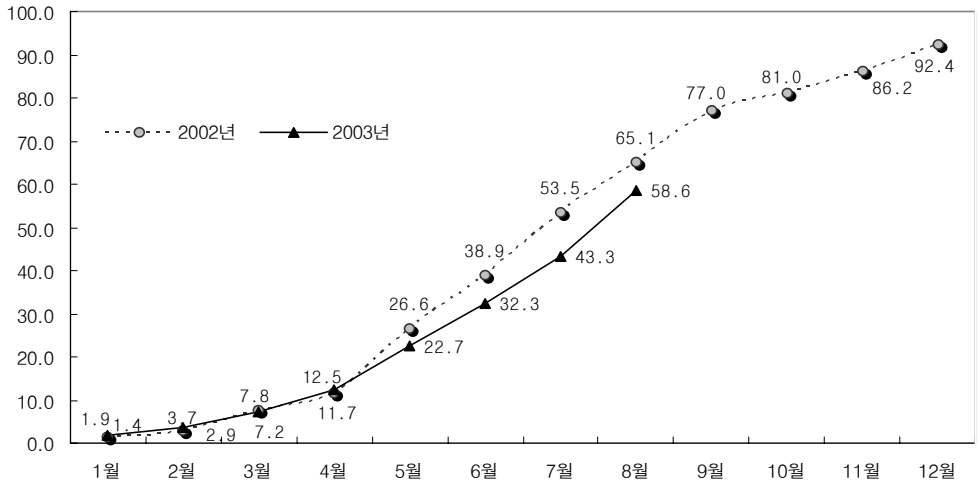

노동동향

노사관계 동향

김 정 우*

Ⅰ. 노사분규 동향

◈ 근로손실일수 감소, 발생건수·분규참가자수 증가

○ 2003년 9월 18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건수와 분규참가자수는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감소(표 1 참조)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86건으로 전년동기 260건에 비해 다소 증가
- 분규참가자수는 126천명으로 전년동기 85천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1,119천일로 전년동기의 1,362천일에 비해 감소
- 이와 같은 결과는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부분파업의 영향으로 판단됨.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 건, 명, 천일)

	2001. 9. 18	2002. 9. 18	2003. 9. 18
노사분규발생건수	185	260	286
분규참가자수(명)	65,166	84,929	126,470
근로손실일수(천일)	685	1,362	1,119

자료 : 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jw@kli.re.kr).

[그림 1] 노사분규건수 월별 추이(2002,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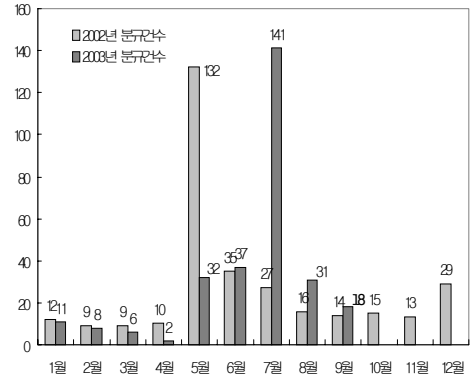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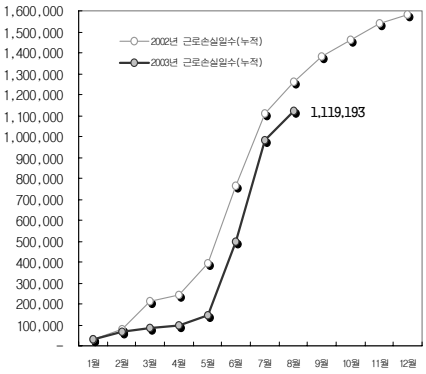

Ⅱ. 노동정책 동향

◈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 발표

○ 2003. 9. 4. 노동부장관은 노·사·정·공익대표가 함께 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발표함.

– 노동부는 "국제경쟁의 심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등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기

위한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나 우리 경제는 독과점 경영과 힘있는 노조간의 과도한 노사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고, 그 와중에 취약근로자의 삶은 더욱 열악해지는 '격차의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사관계 개혁의 비전과 방향을 마련, 발표하고 노사정위 논의 등을 통해 구체화한 후 법제화 등을 추진할 예정임.

○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주요 내용[1)]

– 노사관계 개혁의 3대 목표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임.

– 우선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위적 규제보다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합리적 노동운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강화

· 국제적 기준에 입각하여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보장함과 동시에 노사가 참여와 협력 속에 '고성과·고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뢰증진과 투명경영의 기반을 확충

· 구체적으로 노동기본권 중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과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교섭창구는 단일화)하고 손배·가압류의 범위를 제한하며,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을 권리분쟁까지 확대하면서 조정전치주의를 폐지

· 사용자 대항권과 관련해서는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법령이 정한 기준 내 급여지원은 예외)하고 단협 유효기간 상한선(현행 2년)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형사처벌규정을 폐지하며, 쟁의행위 합·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를 허용하고 공익사업에 한해 파업기간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긴급조정제도를 60일로 확대(현행 30일)

· 이와 함께 직접 선출 등을 통해 노사협의회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전 정보공유 및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여 기업단위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업종·산업·지역단위 노사(정) 협의기능을 강구함.

– 다음으로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유연성을 제고하되 전체 노동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병행

· 이를 위해 정리해고 협의기간의 상한선을 60일로 하되 해고규모·비율별로 차등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해고유연성을 확대하고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해

1) 문무기,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매월노동동향』, 2003. 10. 참조

서는 정리해고 규정의 적용배제나 완화방안을 강구하며, 기업양도시 기존의 취업규칙과 단협의 효력을 1년간만 인정함(현재 명문규정 부재).

·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확대 등 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을 강구하고 임금유연성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주의 임금체계, 합리적 임금피크제 등의 확산방안을 강구함.

–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를 위해 임금·복지 등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적응에 실패하거나 애로를 겪는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내실화함.

· 이를 위해 청년층,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수급 인프라 및 고용안정 인프라를 확충

○ "노사관계 개혁방향" 관련 향후 계획

– "노사관계 개혁방향"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중 공무원노조 허용, 비정규직 남용 규제, 퇴직연금제 도입 등 이미 노사정위원회를 거친 사안은 노동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중 입법을 추진할 예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증진에관한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 노동시장 안정대책, 사회안전망 확충 등 법개정과 무관한 정책사항은 일관되게 집행함.

◈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지난 8. 19.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

○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2)]

–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 포인트씩 2030년에 15.90% 수준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55% 적용)하되 기존 가입자 및 수급자의

2) 김호경,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와 향후 정책과제」, 『매월노동동향』, 2003. 10. 참조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득대체율 적용

– 이와 함께 감액노령연금의 지급액 상향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하한선 인상 등 제도합리화 도모

–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운용현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감시업무 수행

Ⅲ.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노사관계 개혁방향" 관련 노사간 대조적 입장표명

○ 노동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노총 반대 천명

- 한국노총은 9. 4. "노사관계 개선방안은 전반적으로 사용자측 주장이 대거 반영되어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실망감을 표명
- "노조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은 일부에 해당하는 사항인 반면,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중단 등 재계에 유리한 부분은 전사업장 내지는 전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사용자측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이 내용을 현장에 도입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노사갈등과 분규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노동기본권 확대를 주장
- 민주노총 역시 "노사관계 선진화 이정표가 실제 노사관계를 개혁할 핵심과제가 빠진 채 사용자 대항권만 대폭 강화하고 있어 노사관계를 후진화하고 노사대결을 부축이게 된다"며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거부와 '노동3권 보장투쟁' 전개를 천명
- 다만 양대노총 모두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과 직권중재 폐지, 손배 가압류 완화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

○ 재계 대체로 환영 속에 엄정한 법집행 강조

- 경총은 "노사관계 개혁이 전임자 급여지급과 같은 비합리적 관행과 불법행위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주고받고식 법개정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라고 주장
- 전경련은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라는 측면에서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다행스럽게 평가하며 향후 산업평화 정착에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함.

○ 노동부의 "노사관계 개혁방향"에 대한 양대노총의 반대가 강해 하반기 노사정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임.

◈ 노사단체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

○ 양대노총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

– 양대노총은 "정부측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연금재정을 가입자의 보험료로만 채우기 위해 무리한 보험료율 인상을 꾀하고 있다"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를 천명

– 양대노총은 정부안의 즉각 철회, 저소득계층 보험료의 국고지원, 국방비 등 예산 절감과 직접세 강화를 통한 국민연금 재정마련 등을 주장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자 하는 정부계획 역시 연금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가입자들의 통제권을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반대 천명

○ 경총도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

– 경총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9%로 상향조정하는 국민연금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면서 과도한 사회보장비용이 기업의 경쟁력 악화와 투자위축을 불러와 고용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

– 경총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대로 하향조정하고 보험료를 현행 9%대로 유지하면서 퇴직금제도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전체 60%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하는 방안을 주장

○ 특히 양대노총은 참여연대, 전농, 여성단체연합 등과 함께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국회통과 저지를 천명한 바 있어 이 문제가 하반기 노정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임.

정책과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문무기*

Ⅰ. 경과 및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우리나라 노사관계법과 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의 현실여건에 부합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 5. 10. 출범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임종률 교수(성균관대 법대)를 위원장으로 하여 대학교수, 본 원 연구위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됨.

- 동 위원회는 5. 24. "노사관계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채택하고, 이에 기초하여 분과별 연구와 전체회의에서의 조율을 통해 「노사관계법 ·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잠정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9. 1. 노동부에 중간 보고하였음.
- 동 위원회는 향후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하여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10월 말 제시할 예정임.

○ 동 위원회가 인식한 노사관계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우리 노사관계법 · 제도는 지난 15년간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사단체는 물론 ILO ·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고,
- 지식정보화 · 세계화 등 외부 환경의 급변과 산별체제 진전 · 고용형태 다양화 등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변화하는 제반 환경에 대응하고 보편적 노동기준(Global Standards)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규범으로서의 노사관계법 · 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mgmoon@kli.re.kr).

○ 동 위원회가 제시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지식정보화・세계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② 노사관계에서 '자율성'과 '책임성', 고용에서 '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사관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rule)을 정립

③ 법・제도에 대한 진단・분석 및 제도개선안 마련에 있어 중립적・공익적 입장을 견지하며, 기존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여건을 충분히 고려

Ⅱ. 집단적 노사관계 부문

1. 단결권

가. 조합원의 인정범위(근로자의 개념) :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기업단위 노조에서는 노조가입을 금지토록 함.

- 기업단위 노조에까지 실업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업 중심으로 노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노사관계에 비추어 기업별 노사관계의 불안정이 심화・확대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한 것임.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장에 '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해당기업의 종업원 지위를 갖는 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마련키로 함(이 경우 산별노조, 상급 노동단체 등의 조합원・임원자격은 자율화됨).

나. 노조 전임자 : 급여지원 관행 개선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노조 규모별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최소한도의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기준 초과시 제재).

- 소수의견으로 노조전임자 관련 현행규정은 유지하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비상임, 무보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제시됨.
-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되 기업별 노조가 대다수인 현실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최소한도의 편의제공이 필요한 점도 감안하여 제도를 보완키로 한 것임.

다. 유니언 숍 규정의 정비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시점에 맞추어 유니언 숍 제도를 정비키로 함.
- 제1안으로 유니언 숍 규정을 유지하되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따로 노조를 조직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보완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유니언 숍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됨.
- 그 동안 유니언 숍 협정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소극적 단결권)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특정노조에 가입을 강제하는 현행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임.

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선

○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개별규정에서 노조의 행위준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 동시에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현행 직접 형사처벌규정은 정비키로 함(구체적 방안 추후 검토).
-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는 화해절차의 실효성 제고, 긴급이행명령제도의 확대 등임.

2. 단체교섭

가.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 단체교섭 사항의 기준 명시

○ 의무적인 교섭사항에 관한 ‘기준’을 명시키로 함.
- 현행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 이외에 집단적 노사관계(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권리분쟁 사항은 제외하되, 구체적인 입법방식은 추후 검토키로 함.
-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는 조합비 일괄공제,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보장,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교섭 및 쟁의절차 관련사항 등임.

나.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 하나의 사업 내에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단일화할 경우 사용자는

교섭의무를 부담토록 함.

- 일정기한까지 노조자율로 단일화하되 단일화가 안될 경우에 대해 제1안으로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그러한 노조가 없을 경우 투표에 의해 과반수를 득표한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을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됨.
- 어떤 경우이든 교섭대표 노조는 전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부담하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투표관리 등)토록 함.
- 사업내 복수노조가 있더라도 조직대상을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 교섭할 수 있도록 함.

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 완화

○ 협약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상한선 폐지), 3년을 초과하는 협약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한 후 일방이 6개월 전에 통지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한 소수의견으로 단체협약의 최장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됨.
- 빈번한 교섭으로 과다한 교섭비용 및 노사관계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최근 산별노조의 증가에 따라 장기간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도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임.

라. 제3자 지원신고제 폐지

○ 제3자 지원신고 및 처벌제도를 폐지키로 함.

- 그 동안 노동계·국제기구는 신고제도 남용에 따른 노조활동의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며 폐지를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시설관리권 등을 침해하는 과다한 지원행위를 우려하며 엄격한 운영을 요구함(노조측의 대규모 신고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없었음).
- 사업주의 동의 없는 사업장 무단출입, 점거농성 행위 등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지원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해 제재토록 함(형법상의 건조물 침입죄, 퇴거 불응죄, 업무방해죄 등).

3. 쟁의행위

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 공정성 · 투명성의 제고

○ 파업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마련키로 함.
- 구체적 방안으로 투표시기 · 투표의 유효기간 설정, 투표결과의 공개 · 보존, 열람 및 노동위원회의 행정지원, 투표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 통지 등임.
- 반면 의결 정족수는 현행(재적 과반수 찬성)을 유지키로 하고, 영국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우편투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함.
- 현재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는 쟁의행위의 찬반투표에 조합원의 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논란이 있었음.

나. 직장폐쇄 : 요건의 명확화

○ 쟁의행위의 불법 · 합법여부와 관계없이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함.
- 현재 행정해석 등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합법 파업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 · 운용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직장폐쇄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오히려 직장폐쇄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함.
-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사간 무기대등성 차원에서 파업의 불법 ·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직장폐쇄 인정하는 것이 일반화됨.

다. 대체근로 제한의 완화

○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대체근로를 제한하지 아니하되(대체근로가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추후 검토), 신규채용 · 하도급은 허용하고 근로자파견은 현행대로 금지키로 함.
- 소수의견으로는 대체근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사업장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됨.
- 외국은 일반적으로 대체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미 · 일 · 독 · 프랑스), 단기계약 ·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프랑스)하여 파업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거나 경제파업에 한해 영구대체도 허용(복직우선권만 부여, 미국)하고 있음.

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범위 제한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법률(신원보증법,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통해 ① 신원보증인의 불측(不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제한의 설정, ② 조합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또는 최저생계비)을 임금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 ③ 노동조합의 존속보호를 위해 조합비 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키로 함.

- 2000년 이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증가하여, 일부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 평조합원에 이어 신원보증인(가족)에게까지 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노동기본권 제한 및 조합원(가족)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마. 쟁의행위 보호와 규제의 합리화

○ 먼저 쟁의행위의 최후수단 원칙을 명시하고, ①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는 현행대로 금지하되 중지명령제는 폐지하며, ②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행위준칙으로 명시하고 벌칙조항은 일반형사법 규율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③ 쟁의행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문구수정, 중복규정 정리 및 편제 조정을 추진키로 함.

-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사관계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일반 형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음.

4. 분쟁조정절차

가. 조정대상 : 교섭·쟁의행위 대상에서 분리, 확대

○ 조정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하여 권리분쟁 등 모든 분쟁사항으로 확대하되 노사간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조정대상(노동쟁의)을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권리분쟁, 조합활동 관련사항 등을 포함)'로 설정함.
- 교섭이 미진한 분쟁의 경우에도 조정의 대상으로 하되 조정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쟁의행위가 목적·수단에 관계없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함.

나. 조정기능의 활성화

○ "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 "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원칙하에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조정신청 유무, 쟁의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을 실시토록 함.

- 이를 위해 쟁의행위 개시전 당사자 신청을 받아 조정을 진행토록 한 현행 조정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 중단의무도 삭제하되 조정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충분한 조정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쟁의행위는 성실교섭 이후 최후수단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정방법과 절차를 새롭게 설계하여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지케 하여 적기에 조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 조정방법으로 간이조정(알선)을 신설하고 '공익사업 등'에 대한 특별조정을 강화토록 함.
- 간이조정(알선)은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회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위원회 내부인력 외에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 조정 등 유연하게 활동하며, 주요 분쟁에 역량을 집중토록 함.
- (일반)조정은 현행과 같으며, 당사자 신청으로 개시하고 노동위원회의 노·사·공익 3자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안을 제시토록 함.
- 특별조정은 '공익사업 등'에 대해 당사자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실시되며,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 공표절차 등을 강화(여론을 통한 합리적 해결 유도)키로 함.
- '공익사업 등'이라 함은 현행법상 공익사업 외에 사회보험 업무 등 공공서비스(법령으로 정함),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노동부장관 신청)도 추가키로 함.
- 공익사업의 경우 7일 이상의 파업예고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위원회는 파업 예고 내용을 공중에 알려 공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다. 필수공익사업 개념·직권중재제도 폐지, 공익사업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신설

○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 분야에서의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해 최소업무 유지를 의무화하도록 함.

- 공익사업의 범위는 추후 검토키로 하고, 파업시 유지되어야 할 최소업무는 그 업무 중단시 공중의 생명·안전·보건 및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하고 그 내용을 법령에 열거키로 함.

- 예를 들자면 병원의 수술·응급치료 등 환자의 생명보호에 관련된 업무, 운송사업의 관제 등 운송망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 전기·가스·수도 등의 중앙통제 및 소비자에 대한 공급에 필요한 불가결한 업무, 은행의 주전산실 등 전산망의 정상적 운영에 불가결한 업무 등임.
- 최소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간 협정으로 정하되,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중재토록 함.

○ 최소업무 수행자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긴급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직권중재제도 폐지로 파업에 따른 공익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함.

- ① 신속한 간이조정으로 분쟁의 사전예방, ② 당사자 신청 없이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특별조정 개시, ③ 사실조사 및 조정과정 공표(여론을 통한 합리적 조정 유도), ④ 파업개시 7일전 파업예고의무 부과, 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⑥ 파업후 긴급조정 요건에 해당할 때 이의 적극적인 활용 등임.
- 외국의 경우를 보면 공익보호를 위해 필수업무 유지의무, 파업예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파업이 금지된 공공부문에 대해 그 대상조치로서 중재를 실시하는 사례 외에 중재결과를 강제하는 제도는 일반적이지 않음.

라. 긴급조정제도 개선

○ 긴급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현행(30일)보다 연장한 60일로 설정하여 충분한 조정기간을 확보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한편 강제중재보다 조정으로 해결을 유도토록 함.

- 조정절차에서는 사실조사 및 공표절차를 강화(여론 반영)하고, 중재절차에서는 강제중재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비상적인 분쟁상황에 대한 최후의 해결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함.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되 50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강제중재 없음), 미국은 주간의 산업·무역부문의 쟁의행위로 국민의 건강·안전이 위태로울 경우 80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강제중재 없음).

5. 노동위원회의 기능 개편·확대

○ 집단적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사적 조정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키로 함.

-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조정과 부당노동행위 · 부당해고 심판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 조정 · 중재대상과 기간의 한정으로 분쟁해결 기능이 취약한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앞에서 언급된 노사관계 제도개선 방안으로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확충(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관리, 부당노동행위 · 부당해고 구제기능 강화, 파업찬반투표 관리, 간이조정 등 적극적 조정실시 등)됨에 따라 조직 확대개편 및 운영체제 혁신이 긴요하게 됨.

6. 노사협의회제도

가.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및 노사협의회의 기능 확대 · 조정

○ 근로자 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폐지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토록 함.
- 노동조합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근로자로부터 추천받은 자에게 입후보 자격을 부여키로 함.
- 현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그 외는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토록 하고 있으나, 과반수노조 존재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한 것임.

○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파견, 사내하청 근로자 등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하고,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토록 함.
- 이에 대한 소수의견으로 과반수노조를 불문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하는 방안이 제시됨.
-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으로는 정리해고 협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유급휴가의 대체 합의 등임.

나. 협의사항 조정 및 합의 · 의결된 사항의 효력 명문화

○ 협의사항을 조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의 이용과 그 방법, 사업의 합병 · 양도 · 인수 · 생산조직의 변경 등 사업변경 등을 추가하고, 노동쟁의의 예방은 제외키로 함.

○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에 대해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미이행시 벌칙규정은 삭제)하되 노사협의회의 위원 동수구성 문제, 의결정족수 문제 등 개선 방안은 추후 검토키로 함.

- 현재 노사협의회 임무로서 '협의·의결·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결된 사항의 효력규정이 없어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의결할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과의 효력순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임.

다. 근로자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

○ 근로시간 면제범위를 현행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서 협의회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확대키로 함.

- 아울러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현행 "장소사용 등"에서 "근로자위원 선출·활동에 관련한 사항"으로 확대키로 함.
- 독일은 전임위원(200인 이상부터) 수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월 20시간의 유급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있음.

라. 사전 정보제공 및 비밀유지의무 강화

○ 협의·의결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근로자위원이 관련자료를 요청한 때에는 일정기일 이내에 이를 제공토록 하되 비밀 누설시 처벌토록 함.

- 아울러 회의개최 통지기간을 현행 '7일전'에서 '10일전'으로 연장함.
- 현재 노사협의회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의제 등을 통지토록 하고 있으나 사전 정보제공 미흡으로 내실있는 논의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한 것임.
- 외국의 경우 필요한 정보의 적시제공(독일), 회사의 기본적 정보를 포함한 정기적 정보제공(프랑스)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마. 정기회의 개최의무 완화

○ 정기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토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되, 미개최시 벌칙규정은 삭제키로 함.

- 현재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 운영으로 경영계는 정기회의 개최횟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음.
- 벌칙으로 협의회 회의개최를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당사자 자치에도 반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Ⅲ. 개별적 근로관계 부문

1. 해고보호제도

가. 부당해고 구제방식의 다양화

○ 화해에 의한 우선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화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 아울러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전보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그 구체적 방안은 추후 검토키로 함.

○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신속한 처리,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제재 등을 추진키로 함.
  – 이와 함께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계약시 기본 근로조건의 내용(임금, 근로시간 등)을 서면화하며, 해고시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하도록 함.
  – 현행과 같은 해고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국제적으로 입법례를 찾을 수 없고, 복직명령은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원직복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실효성이 없음을 감안한 것임.
  – 부당해고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으며, 사용자단체나 외투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ILO협약(제158호) 및 각국의 입법례는 원직복직과 금전보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나. 정리해고제도의 합리성 제고

○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기간은 60일을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을 감안하여 법령으로 차등 설정키로 함.
  – 이에 대한 소수의견으로 사전통보기간을 현행 6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됨.

- 정리해고시 재고용 노력규정은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1안)과 이를 의무화하자는 입장(2안)이 맞섬.
- 현행법상 정리해고 요건은 종전 판례입장을 법제화한 것으로 국제기준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지는 않으나, OECD 등은 노조와의 획일적이고 오랜 협의기간(2개월 이상)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해 근기법상 정리해고 규정의 적용배제 또는 완화방안을 강구키로 함.
-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의 경우 그 갱생을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한 것임.

2.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가.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 이전된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됨을 명문화하기로 하고, 법률에 의한 사업이전의 경우에도 승계되지만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함.
-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용승계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인정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함.
- EU의 경우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원칙에 관한 지침을 제정(2001)하여 각국에서 이를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있음.

○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승계 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함.
-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의 원칙과 근로자의 보호, 회사 정리절차와 화의절차의 경우에는 회사의 갱생과 근로자의 보호라는 두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감안한 것임.

나.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 채권보호 강화

○ 근로관계가 이전되기 전에 성립하고 이전 후 1년 이내에 이행기가 도달하는 근로관계상 채무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함.
- 다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함.

-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양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승계, 근로관계상 채무 책임 문제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노사간의 다툼이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코자 한 것임.

다. 사업양도 · 양수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 명문화

○ 양도인 사업장에 적용되던 취업규칙의 양수인에 대한 효력을 일정기간(1년) 인정하되 양수인의 취업규칙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

- 동시에 양도인 사업장에 적용되던 단체협약은 양수인에 대하여 계속 유효하나, 양도일로부터 6월 경과 후 6월의 해지통보기간으로 일방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소수의견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해석에 맡기는 방안이 제시됨.
- 기업변동과 관련하여 양도 · 양수 사업장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을 신속히 통합 ·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반영한 것임.

3. 임금체불에 대한 합리적 개선

○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적 제재로서 지연이자제를 도입(부가금제도까지 도입할지 여부는 추후 검토)하고, 기업도산시 임금채권보장에 한정되고 있는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적극 개선키로 함.

- 이와 함께 현행 처벌조항은 유지하되 친고죄(또는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하여 종래의 폐단(전과자 양산)을 개선키로 함.
- 소수의견으로 형사처벌조항을 폐지하고 형법상 사기죄, 부당이득죄에 의해 규율하는 방안이 제시됨.
- 생계의 원천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예가 드문 형사처벌 위주의 현행 제도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Ⅳ. 추가 검토사항

○ 이상 논의・정리된 사항 외에도 ① 상급단체・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방안, ② 단위노조의 지부・분회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문제, ③ 사적 조정 활성화 방안, ④ 변경해지제도의 도입여부, ⑤ 임금체계의 합리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키로 함.

- ‘변경해지제도’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독일・프랑스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정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제도임.
-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등 도입,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문제 등이 포함될 것임.

<"노사관계 개혁방향" 관련 노·사·정(공익) 쟁점사항>

	현 행	노·사 요구	개선방안
<단결권>			
①실업자 조합원 자격	·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 제한	· 노 : 허용 · 사 : 현행 유지	· 초기업단위 노조에 한해 조합원 자격 인정 · 기업단위 노조는 제한 (해당기업 종업원으로 제한)
②전임자급여	· 전임자급여 지원 금지 사용자처벌 (2006년까지 유예)	· 노 : 노사자율 · 사 : 현행 유지	·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급여지원은 예외(기준 초과시 제재)
③유니언숍	· 근로자 2/3 대표하는 노조에 허용 · 입사시 노조가입, 탈퇴시 해고 (제명시 예외)	· 노 : 현행 유지 · 사 : 금지	· 1안 : 현행 유지하되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 보장(다른 노조 조직·가입 가능) · 2안 : 유니언숍 금지
④부당노동행위	· 사용자 형사처벌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 노 : 형사처벌 강화 · 사 : 노조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않고, 개별규정에서 행위준칙 명시 ·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및 직접 형사처벌제도 정비
<단체교섭>			
①교섭·쟁의 대상	·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이익분쟁)	· 노 : 조합활동·경영사항, 권리분쟁, 정치파업 허용 · 사 : 현행 유지	·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기준」명시 -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포함, 권리분쟁 제외
②기업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	· 2006년까지 금지 ·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2007년 허용	· 노 : 즉시 허용 (자율결정) · 사 : 유예기간 준수 (단일화)	·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 (1안) 자율적 단일화→과반수노조→과반수 득표노조 - (2안) 자율적 단일화→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 구성 · 교섭대표는 공정대표 의무 ·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
③단협 유효기간	· 최장 2년	· 노 : 자율 · 사 : 장기간 허용	· 협약기간 자율로 하되, 3년 초과 협약의 경우 3년 경과후 일방이 6개월전에 통보하여 해지가능
④제3자지원	· 신고 및 처벌	· 노 : 폐지 · 사 : 엄격 제한	· 폐지
<쟁의행위>			
①쟁의행위 찬반투표	·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재적과반수 찬성	· 노 : 자율화 · 사 : 요건강화, 우편투표제 도입	· 의결요건 현행 유지 · 투표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투표시기, 유효기간, 노동위 통지 등)
②직장폐쇄	· 사후적, 방어적 사용	· 노 : 엄격 제한 · 사 : 불법파업시에도 허용	· 쟁의행위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 허용

	현 행	노·사 요구	개선방안
③대체근로	· 사업내 인력만 대체가능 · 신규채용·하도급 · 파견 금지	· 노: 엄격 제한 · 사: 제한폐지, 전면 허용	· 공익사업에만 대체근로 허용 * 단, 신규채용·하도급은 허용하되 파견은 금지
④손배·가압류	· 신원보증인도 연대책임 · 급여채권의 1/2 압류금지	· 노: 가압류 금지, 손배책임 주체·범위 축소 · 사: 현행법 엄격 적용	· 신원보증법 및 민사집행법 개선 - 신원보증인 책임제한, 가압류시 노조존립 및 근로자 생계보장 고려
⑤쟁의행위 규제합리화	· 시설 점거 등 금지행위 명시, 벌칙규정	· 노: 삭제 · 사: 현행 유지	· 쟁의행위 최후수단 원칙 명시 · 제한규정을 행위준칙으로 명시하되, 벌칙규정 재검토
<분쟁조정>			
①조정대상	·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익분쟁)	· 노: 조정대상 확대 · 사: 현행 유지	· 조정대상을 교섭·쟁의대상과 분리하여 노사분쟁의 원인이 된 모든 사항으로 확대 ※ 조정절차만 거치면 쟁의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
②조정절차	· 조정거친 후에만 쟁의 가능(조정전치주의) - 파업개시전 - 당사자 신청 - 조정기간 (일반 10일, 공익 15일)	· 노:폐지 · 사:현행 유지	· 조정신청 유무, 쟁의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토록 조정방법과 절차를 재설계 - 노사교섭개시 통보로 노동위 조정 가능 - 노동위 재량으로 간이조정 실시(알선), 공익사업 특별조정 강화(사실조사·공표) - 공익사업은 7일 이상 파업예고 의무화
③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 병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석유, 한국은행 등 · 직권중재 (쟁의행위 제한 15일)	· 노: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폐지 · 사: 혈액, 항공, 폐수 처리 등 추가 및 직권중재 유지	·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 폐지 · 공익사업은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부과 (공익사업 범위 재검토) - 최소업무는 법령에 열거,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정으로 정함 - 파업참여시 업무복귀명령
④긴급조정제도	· 30일간 쟁의행위 중지 · 조정실패시 강제중재	· 노: 강제중재 폐지 · 사: 의견없음	· 긴급조정기간 연장 (30→60일) · 강제중재는 현행 유지
<노동위원회>			
①노동위원회	· 사후적 조정에 국한 · 기능이 협의의 조정, 심판에 국한 -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 기능 미흡 · 전문인력 부족	· 위상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적극적·다양한 조정서비스 제공 통해 효과적 분쟁해결 도모 ·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의 기능강화 · 상근전문인력·예산확충 및 사적조정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현 행	노·사 요구	개선방안
<노사협의회>			
①근로자위원 선출방식	· 과반수노조에 근로자위원 위촉권 부여 ※ 과반수노조 없는 경우 직접 선출	· 노 : 노조에 위촉권 부여 (과반수 불문) · 사 : 과반수노조의 위촉권제도 개선	·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로 대표성 강화 ※ 노조 또는 일정비율의 근로자의 추천 · 파견·사내하청 근로자 등의 노사협의회 참여 (의견개진)기회 부여
②사전 정보제공	· 회의개최 7일전 사전통지 ※ 일시·장소·의제 등 · 보고사항 관련 사후 자료제출 요구권 명시	· 노 :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 사 : 현행 유지	· 사전통지기간 연장 (7→10일전) · 협의·의결사항 관련 사전 자료요청권 부여 (사생활 침해, 기업 기밀사항은 제외)
③비밀 유지의무	· 협의회위원 비밀 유지의무 규정 ※ 벌칙규정 없음	· 노 : 벌칙신설 반대 · 사 : 처벌조항 신설	· 비밀유지의무 강화 (위반시 처벌)
④근로자위원 편의제공	·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근로의무 면제 · '장소사용 등' 편의제공	· 노 : 근로의무 면제범위 확대 등 전임 인정 · 사 : 현행 유지	· 협의회 활동시간도 근로의무 면제 · 근로자위원 선출·활동시 편의제공 확대
⑤협의회 임무	· 협의, 의결, 보고사항 명시	· 노 : 의결사항 확대 · 사 : 협의·의결사항 일부 삭제	· 협의사항 추가 - 근로자 작업감시 설비, 사업 합병·양도 등 사업변경 관련 사항
⑥의결된 사항 효력	· 효력규정 없음 ※ 성실이행의무와 미이행시 벌칙 규정	· 노 : 취업규칙에 대한 우선적 효력	·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 명문화 · 미이행시 벌칙 삭제
⑦정기회의 개최	· 3개월마다 개최 ※ 미개최시 벌칙	· 노 : 정기회의 축소 반대 · 사 : 정기회의 축소 및 벌칙 삭제	· 6개월에 1회 이상 협의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 정기회의 미개최시 벌칙규정 삭제
<개별근로관계법 부분>			
①부당해고	·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 노 : 처벌강화,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 사 : 처벌폐지, 금전보상방안 도입	· 화해제도 등 구제방식 다양화 - 원직복직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제 도입 ·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직접 형사처벌규정 삭제
②경영상 해고	· 근로자대표에 60일전 통보	· 노 : 경영상 해고제한 강화 · 사 : 경영상 해고제한 완화	· 정리해고 협의기간 60일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별로 차등 설정 ·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또는 적용배제

	현 행	노·사 요구	개선방안
③기업 변동시 근로관계	· 명문규정이 없어 노사간 다툼 빈발	· 노: 고용, 단협, 취업규칙 승계 명문화 · 사: 일률적인 승계 명문화 반대	· 판례가 인정하는 수준에서 고용승계원칙 명문화 - 단, 도산절차 진행중인 때는 제외 ·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 채권보호 강화 ·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을 명문화 -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되 통합절차 간소화
④임금지급 보장제도	· 형사처벌 위주 임금체불 구제 제도	· 노: 형사처벌규정 존치, 근로감독관 증원 · 사: 형사처벌규정 폐지	· 경제적 제재 강화(지연이자제 도입) ·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 현행 처벌규정은 유지하되 친고죄로 전환

정책과제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와 향후 정책과제

김호경*

◈ 국민연금제도개선 논의의 배경

○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하여 지금까지 운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고령화 현상과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인 연금제도 문제로 인한 장래 재정전망의 불투명 및 차세대 부담 증가, 국민연금 미적용 인구 증가, 현재 100조 이상의 기금규모에 대한 운용 효율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음.

○ 즉, 먼저 경제인구환경적인 요소로서 그동안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연금제도 유지를 위한 차세대 부담이 잠재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였음.

- 1960년대 이후 가족계획사업과 그동안의 교육 및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 등에 기인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 1명당 평균출산비율(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명 이하로 낮아졌으며, 2000년에는 1.47명, 2002년에는 1.17명으로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이에 비해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은 2000년도에 10.8%이며, 향후 2030년에는 37.3%, 2050년에는 65.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경제활동인구 대비 14세 이하 인구의 비율은 2000년도에 38.3%에서 2050년에는 24.5%로 급속한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통계청 연도별『장래인구추계』참조.).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hkkim@kli.re.kr).

○ 국민연금은 현재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적인 재정 수급구조에 기인하여 재정악화를 경험하고 있음.

- 참고로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에 대한 수급액의 비율(수익비)을 보면, 소득상승유형의 경우 1988년 26세 가입기준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2.6배이며 고소득층은 1.6배이고 중소득층은 2.0배이며, 특히 초기 고령가입자의 경우에는 약 4.0배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소득정체유형의 경우 1988년 26세 가입자의 수익비가 저소득층은 3.6배, 중소득층은 2.5배, 고소득층은 1.9배의 수준으로 나타났음.

○ 비정규 노동자 및 임의가입자 등 적용제외인구의 비중이 높으며, 농어업인구와 비농어업 자영업자 등 적용대상 및 보험료 징수율이 낮은 계층의 존재로 말미암아 향후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러한 고령자 사회보장에 대한 장래비용이 높을 수 있으며, 이뿐 아니라 최근 청년층 실업의 증대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노후비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국민연금 미적용 인구를 점차 줄여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

○ 1988년 이후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1.02%이며, 이는 동일기간 동안의 경상 경제성장률에 0.82% 미달하는 수준임.

-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보다 장기적이고도 전문적인 운용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그 규모의 방대함으로 말미암아 국내 자금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높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운용전략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일 경우 국내 자금시장을 왜곡시키거나 그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

○ 현행 제도와 같이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경우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음(자료원: 국민연금발전위원회).

- 이에 따르면, 적립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 최고 적립금 1,715조원(2000년 불변가격으로 603조원)에 도달하게 되며, 2036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한 이후 기금잠식이 급속히 진행되어 2047년에 기금이 소진하게 됨.

○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납입금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연금수준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급격한 수지구조 악화로 후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음.

– 즉, 인구고령화로 인한 부양비의 증가와 제도의 성숙으로 2030년 이후 수지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2047년에 보험료 수입은 총지출의 29.4%에 불과함.
– 이에 따라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고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2050년에는 30.0%, 2070년에는 39.1%로 급증하게 됨.

<표 1> 재정전망

(단위 : 십억원)

	적립기금	수 입			지 출		수지차	적립률	보험료율 (%)	적립기금 (200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02	92,798	19,513	13,446	6,067	2,210	2,106	17,303	34.2	9.00	86,547
2010	328,694	50,080	27,739	22,341	11,094	10,921	38,986	26.1	9.00	241,995
2020	908,028	109,073	50,174	58,899	35,010	34,701	74,064	23.8	9.00	497,441
2030	1,581,638	170,648	80,235	90,413	111,103	110,576	59,544	13.7	9.00	644,728
2035	1,715,359	186,032	94,311	91,721	181,177	180,504	4,855	9.4	9.00	603,168
2036	1,702,972	189,069	97,543	91,525	201,456	200,749	-12,387	8.5	9.00	581,372
2040	1,447,808	191,224	111,041	80,184	289,188	288,329	-97,964	5.3	9.00	439,146
2047	-96,159	139,326	139,326	0	473,542	472,333	-334,216	0.5	9.00	-23,715
2050	–	154,610	154,610	0	561,966	560,567	-407,356	–	9.00	–
2060	–	201,822	201,822	0	895,032	892,859	-693,210	–	9.00	–
2070	–	271,210	271,210	0	1,286,469	1,283,095	-1,015,259	–	9.00	–

○ 국민연금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검토과제를 중심으로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안을 마련한 바 있음.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화 방안
– 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제도내실화 방안
– 급여구조 개선 등 급여합리화 방안

◈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도출시 중점 고려사항

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 재정안정화 방안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심적으로 고려(「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 방안」,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6)

1) 연금재정의 안정성

– 2070년 말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2배의 적립률(당년도 지출대비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것을 재정안정 목표로 설정

· 노인부양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2070년까지를 추계기간으로 설정

· 후세대에 전가할 부담규모, 필요보험료 인상폭, 기금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적립률 2배를 재정안정 목표로 설정

2) 급여수준의 적정성

– 평균 가입기간(21.7년)을 충족한 평균소득자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하는 수준을 급여의 적정성으로 제시

· 평균 가입기간이 21.7년에 불과한 이유는 납부예외기간, 보험료 미납기간 등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을 산출하였기 때문임.

·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에게 50% 이상의 소득대체율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

3) 부담수준의 적정성

– 국민부담률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부담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을 18%로 설정

· 현재 OECD 회원국의 평균 사회보험부담률 및 평균 국민부담률 수준에 비추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상한선 도출

나. 국민연금의 제도내실화 방안

○ 납부예외자 축소 및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한 연금 사각지대 최소화

– 출산, 병역, 학업 등 추후 납부가능 사유가 객관적인 경우로 제한하여 납부예외제도 남용 억제

– 보호소 수감, 주소불명 등 납부예외자로 관리해도 실익이 없거나 관리가 곤란한 자는 적용제외

– 지사간 경쟁체제 확대, 불신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등을 통한 징수관리의 효율화 도모

○ 근로자간 또는 근로자와 자영자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해 수용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가입자로 점진적 전환
– 추정소득 활용을 통해 불성실 소득신고자 관리를 강화하고,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재설치 및 국세청과 사회보험기관간 협력체계 강화로 소득파악률 지속 제고
– 표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및 등급체계 폐지
· 소득하한선은 독신가구 최저생계비로 하여 최저생계비 보장 확보
· 소득상한선은 전가입자 3년 평균소득(A값)의 3～3⅓배 수준으로 하여 고소득자의 세대간 소득이전을 제한하고, 근로자와 자영자간 부담 형평성 도모

다.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방안

○ 급여간 형평성 및 급여산정의 합리성 제고
– 10～20년 미만 가입자에 대한 2.5% 추가감액하는 감액노령연금을 폐지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 설정 취지에 부합한 급여 설정 및 특례노령연금, 20년 이상 노령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 고령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재가입으로 가입기간 증가 후 연금 재지급시 지급률의 상향조정과 60세 이후 재직자 노령연금 적용으로 근로인센티브 제공

○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강화
– 재혼시에도 분할연금을 지급하여 여성 수급권 보호
– 미완치 장애 및 질병 발생시 장애등급 결정 유보기간을 2년에서 1년 6월로 단축함으로써 조기 소득보장 확보

○ 성실가입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 유족연금의 최소가입기간 1년 설정
–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의 하향조정을 통해 반환일시금 수급에 대한 반유인요소 강화로 연금가입 유도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 주요 골자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기금 및 재정추계에 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를 5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고, 가입자단체 추천위원의 수를 각각 1인씩 축소함(안 제5조).

② 교도소 및 보호・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이거나 행방불명으로 납부예외자로 관리할 실익이 없는 자를 당연적용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여 납부예외자를 축소함(안 제10조・제77조의 2).

③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혜택을 사업장 가입자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사용자에 대한 혜택을 제한함(안 제17조 제2항).

④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범위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이 40년인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되,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55%를 적용하고,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득권을 보장하며,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조정하여 2030년에 15.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제47조 제1항, 안 제75조 제2항・제3항, 부칙 제3조・제4조・제9조).

⑥ 미지급 급여 수급요건 중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 인정요건을 삭제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함(안 제51조 제1항).

⑦ 감액노령연금의 2.5%포인트 추가 감액부분을 폐지하여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입기간이 비교적 짧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상향조정함(안 제57조 제2항).

⑧ 현행 조기노령연금의 조기 수급 1년당 감액률 5%를 6%로 상향하여 급여액을 낮춤으로써 노령연금의 조기 수급을 억제하되,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대신 재직자노령연금을 적용하여 급여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60세 미만인 자가 소득활동 종사로 연금지급 정지기간이 있는 경우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령근로를 유도하고 다른 노령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안 제57조 제3항 및 제4항, 제57조의 4).

⑨ 재혼시 분할연금 지급정지 조항을 삭제하고, 분할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수급권

간에는 병급을 허용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안 제57조의 2 제3항 삭제, 안 제57조의 3 제2항 삭제, 안 제57조의 3 제5항 신설).

⑩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여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기여자에게만 연금급여 혜택을 부여함(안 제58조 제1항, 제62조).

⑪ 미완치 상병의 경우 의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던 것을 1년 6월로 6개월 단축하여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함(안 제58조 제2항).

⑫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악화로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60세 도달 전으로 한정하여 자연노화로 인한 장애연금액 변경을 제한함(안 제61조).

⑬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가입기간과 가입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함(안 제67조 제2항).

⑭ 사망일시금 수급대상 중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권을 인정하여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18세 도래가 임박한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18세 미만인 자의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수급간 형평성을 확보함(안 제69조의 2 제1항, 안 제69조의 3 신설).

⑮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판단시기를 현행 지급사유 발생당시에서 장애연금은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로,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로 변경하여 급여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료 성실납부를 유도함(안 제72조의 2).

⑯ 반납금의 납부 및 추후 납부의 신청은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여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안 제68조 제1항, 제77조의 3 제2항 신설).

⑰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하고,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운용현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감시업무를 수행하게 함(안 제84조 및 제84조의 2).

⑱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21인에서 9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차관,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함(안 제84조의 3・제84조의 4 신설, 부칙 제2조).

⑲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

여 연임할 수 있음(안 제84조의 6 신설)

⑳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공무원의 직, 기타 보수를 받는 직에 겸직할 수 없게 하여 직무상 독립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직무상 독립을 보장함(안 제84조의 8 내지 제84조의 10 신설).

㉑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산배분, 성과보상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여 실질적 업무수행을 하도록 함(안 제84조의 11 · 제84조의 12 신설).

㉒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장기 국민연금기금 재정전망, 여유자금 및 급여준비금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기금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5조 제1항).

㉓ 기금운용 계획 중 여유자금부문은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 조정 및 국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함(안 제87조).

㉔ 제3자에 의해 장애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연금지급 정지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여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보호함(안 제94조).

◈ 시사점 및 향후 정책과제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유지해 오면서 연금제도 초기에 후한 연금보상을 해 왔음.

- 현재 국민연금 급여수준에 상응하는 수지균형보험료는 24% 정도임.
- 하지만 국민연금 도입초기의 연금보험료는 3%이었으며 5년 후에 6%로 상승하였고, 그 다음 5년 후인 1998년부터 현재까지 9%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따른 기금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부족분은 후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날 것임.
- 후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
- 현재 2047년에 가서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음. 이는 정치적인 목적의 보상수준의 인상으로 인하여 세대간 형평성의 왜곡을 낳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부분적립방식에 의한 것이므로 초기의 후한 연금보상은 그동안 기금의 고갈을 앞당겨 왔다고 할 수 있음.
  – 여러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현상이 발생하여 이미 재정방식을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전환함으로써 현 근로세대가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보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증가문제를 어느 정도 겪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노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고령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14.4%이며 2030년에 가서는 22.6%에 이를 전망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에 7.1%이고 2030년에는 19.3%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임.

○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저부담·고급여에 의한 구조적인 연금기금의 고갈전망에 더하여 향후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보상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즉, 향후 생산가능 노동력의 비율은 감소함에 비해 근로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확대된다는 것이 문제임.

○ 이에 따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먼저 이러한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인구의 비율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여성 및 고령인력의 경제활동참여가 국민연금 재정 및 노후소득보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 하지만 무조건적인 인구성장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인구의 성장은 이에 따른 육아, 교육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의 성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책이 없이 단순히 노령인구의 부양을 위한 인구성장정책을 논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일하는 여성의 육아환경을 보다 선진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자연출산율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는 있을 것임.

○ 이뿐 아니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정계산을 더욱 정밀하게 함으로써 국민연금 보험요율 및 보상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재정의 개선·보완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국민연금의 현재 기금규모로 볼 때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현재와 같이 국내 자금시장에 대해 수동적인 관점에서 운용원칙 및 전략을 유지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이며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운용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임.
- 이는 국민연금의 경우 그 기금규모의 방대함으로 말미암아 국내 자금시장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동 기금의 장기적인 운용정책에 대한 보다 거시적이며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보다 완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기업연금 도입문제와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에 대한 제도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그 외에도 제도의 사각지대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제도적용문제와 기타 직역연금제도에 대한 형평성 있는 개혁 등의 과제를 남겨 두고 있음.

이슈분석

노사관계의 한국형 발전모델*

최영기 · 배규식**

◈ 한국의 노사관계는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 참여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과도한 기대와 재계의 과도한 우려 그리고 정부 스스로의 지나친 자신감이 노사문제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린 측면이 있음.
  – 이 과정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폭넓게 형성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러한 공론의 형성과정이 매우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이어서 노동개혁에 대한 정론(正論)의 형성이 어렵게 됨.

○ 이러한 정권초기의 정치적 공방으로 부풀려진 노사문제의 거품을 제거하더라도 현재 한국 노사관계의 품질은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관련 주체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노사관계가 한국경제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 기업별 노조의 파업권 행사에 적절한 견제장치가 부족하여 파업권이 남용되는 측면이 있음.
  ※ 외국의 경우에는 산별노조가 파업권 행사에 매우 신중하고 파업기금의 규모에 의해서도 파업이 제한되고 있음.
  ※ 한국은 '90년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근로자 천명당 100일을 상회하나 독일 · 일본은 10일을 넘지 않고 미국 · 영국은 50일을 넘지 않음.
  – 파업중의 불법행위가 지난 15년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며 노사관계에서의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 이 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요약한 것임.

** 최영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ykchoi@kli.re.kr),
배규식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baekiusik@kli.re.kr).

※ 이는 단순히 법이 엄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원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표 1> 연도별 구속노동자 추이

(단위 : 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2~8.13
87	188	165	149	43	219	129	97	241	205	78

자료 : 민주노총.

- 평균교섭기간이 52일(2002년 기준)에 이르고 노사간의 임금인상 제시율이 큰 차이가 나는 등 단체교섭의 효율성이 낮으며, 노조전임자 임금이나 파업기간중의 임금 등에서 나타났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노동개혁의 일차적 요구는 물론 이와 같이 최소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 노사관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한국의 노사관계가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80년대 이후 급변하고 있는 경제환경 요인임.

- 개방경제로 진전될수록 그리고 경제의 지식정보화가 확산될수록 전통적인 노사관계의 경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전되어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사회통합이 약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80년대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노동시스템의 유연화를 추구하면서도 공동체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시스템을 개혁하고 있고,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 있음.

◈ 노사관계 모델론

○ 국제비교 노사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유행하는” 노사관계 모델이 시대별로 달라지고 있음.

- ′60년대에는 대부분의 산업사회는 하나의 노사관계 유형으로 수렴해 간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70년대 들어서면서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 등의 사회적 조합주의 모델이 부각되었음.
- ′80년대에는 독일과 일본 모델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일본 모델은 일본 제조업의 강한 경쟁력이 일본 노사관계시스템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져 미국・영국에서조차 이를 모방하려는 노력이 보였음.

- ′90년대 들어 독일・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상대적으로 미국・영국 경제실적이 호전되면서 노사관계 국제비교에서도 신자유주의 모델이 부각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이 하나의 국제적인 표준으로 인식되게 되었음.

※ 그러나 독일・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아직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영국의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은 제조업 공동화와 탈산업화 과정과 함께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함.

○ 한국에서 노사관계 모델론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90년대 초반까지 재계는 일본 모델을 노동계는 스웨덴・독일형의 유럽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왔음.

- 일본 노사관계는 우리와 매우 유사한 특성(기업별 체제・잘 발달된 기업별 노동시장・유사한 노동법 체계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모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한국의 노사관계는 분명 일본과 다른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음.

※ 그 원인은 첫째, 일본의 기업지배구조가 매우 독특하고 민주적이어서 기업 내에서 노사간의 신뢰와 타협이 쉽게 제도화될 수 있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며, 둘째, 한국의 노동운동은 매우 강한 전투성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스웨덴이나 독일의 노사관계와 같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타협을 통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에는 노동조합의 조직기반이 너무 취약하고 리더십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노동계의 기대와는 달리 유럽형으로의 발전도 진전되지 못함.

※ 다만 한국노총만을 파트너로 한 여러 형태의 사회적 합의 실험이 '90년대 초・중반에 시도되었고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 이르러 민주노총을 포함한 사회적 타협이 시도됨.

◈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 한국 사회는 아직 노동운동을 인정하고 정치경제시스템 운영의 한 파트너로 품어 안아 통합시켜 나가는 체계적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됨.

- 정치적인 통합은 몇몇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부의 장・차관이나 전국구 비례대표로 1~2명 진출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왔음.

※ 직능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선거제도로 인하여 노동자 대표로서 국회에 진출하는 사례가 없었고, 노동자들의 정치적・정책적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정책협의

기구도 노사정위원회가 처음이나 이것의 운영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또한 한 사회의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와 포용은 기초교육과 일반교육 그리고 여러 형태의 문화적 수용으로 길러질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노동에 대한 교육·문화적 수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미국의 Harvard대학, Cornell대학 그리고 Michigan, Wisconsin, California 등 주요 산업지역의 거점대학에서 1940년대 이래 꾸준하게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영국의 Ruskin College는 100년전 노동교육기관으로 출발하여 노조간부에 대한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고 공영방송인 BBC는 정례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의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반면, 관치의 요소는 매우 강하여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 개입의 소지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개별분쟁이 전국차원의 분쟁으로 더 나아가 노정갈등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음.

- 노사관계의 정부 주도성은 한국 경제가 정부 주도로 성장해 왔던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집단적 노사관계 관리를 상당부분 정부가 법적 규제와 관료적 통제로 떠맡아 왔던 오랜 타성에 기인함.
- 또한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나 노동정책기구(산하단체 등)의 자율경영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사관계의 정부 주도성과 무관하지 않음.

○ 한국의 기업별 노사관계는 기형적으로 과대 성장하여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을 지나치게 경직시키고, 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정규/비정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음.

- 기업별 노동조합체계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임금인상과 복지확대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노조의 작업장 통제로 기업의 인력운영이 유연하지 못하고 경영혁신이 어렵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함.

<표 2> 노동조합의 조직적 영세성과 분산성(2001년 말 기준)

	49인 이하	50~99인 이하	100~499인 이하	500인 이상	전 체
노동조합수	2,923 (47.5%)	1,098 (17.9%)	1,710 (27.8%)	419 (6.8%)	6,150 (100.0%)
조합원수	49,888 (3.2%)	69,865 (4.5%)	295,310 (18.8%)	1,153,660 (73.5%)	1,568,723 (100.0%)

자료 : 노동부.

– 이에 비해 상급 노동조합의 재정과 정치·정책활동은 비정상적으로 위축되어 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정치적 상징성을 점차 잃어가고 조직노동자만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한국형 사회적 협의 모델의 길

가. 노동개혁의 방향

○ '90년대 중반 이후 재계와 경제정책그룹(경제부처와 경제정책 연구자들)은 영·미형의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을 요구하고 있음.

– 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고용조정을 보다 자유롭게하고 대체근로를 대폭 허용하며 노동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특히 이들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비정규직과 특수형태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어 오히려 고용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

※ 또한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고용의 경직성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노사관계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임.

※ 설사 이들의 요구대로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경영에서 이러한 유연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예컨대 '98년 고용조정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었지만 명예퇴직이 한국형 정리해고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함.

– 더구나 이미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화되고 조기퇴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용유연화 개혁은 노동조합의 심각한 저항을 유발하여 노사관계를 크게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

※ 노동시장 유연화의 주요 타깃이 조직노동자들이지만 이들은 강한 교섭력과 단체협약으로 고용보장을 지키려 할 것이기 때문에 법개정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임.

– 따라서 이러한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법개정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법치의 확립은 바람직한 노동개혁의 방향이라고 할 수 없음.

○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수출전략산업이기도 한 자동차·조선·일반기계·철강·전자 등의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취할 수 있는 보다 현실성 있는 노동개혁 방안은 사회적 타협 방식임.

– 즉 사회적 타협을 통하여 노사간의 신뢰를 제도화하면 협상을 통한 유연화(negotiated flexibility)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임.

※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노사간에 신뢰와 타협이 제도화되어 있다면 고용의 유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노사자율로 강구될 수 있을 것임.

※ 예컨대 기업내부 인력운용에서의 유연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비용 안정화가 동시에 추구될 수도 있음. 또한 고용조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전직알선과 훈련, 무급휴직과 재채용 등)에 대한 노사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노사)타협에 의한 유연화 방식은 기업차원에서도 가능하고 네덜란드·아일랜드·이탈리아와 같이 국가차원에서도 가능함.

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타협

○ 문제는 사회적 타협 모델의 유용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노사정이 타협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일 것이나 주어진 조건만을 놓고 평가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음.

– 정부는 당초 노·사·정간의 대타협과 사회적 파트너십의 확립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지만, 2003년 임·단협을 거치면서 의지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임.

※ 재계가 주도하는 개혁공론이 법과 원칙의 확립으로 모아지면서 정부의 개혁리더십은 혼선을 겪었으며 노동개혁의 로드맵은 노동법 개정을 중심으로 짜여졌고 대타협은 노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법개정 패키지에 대한 타협으로 변질되어 감.

– 법개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타협시도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시도로서 이미 '96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경험과 '98년의 사회협약 사례가 있음.

※ 그러나 이 두번의 시도 모두 만족할 만한 완전한 타협에는 실패했으며 지금의 법개정 패키지는 노사를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일 정도의 강한 매력이 있지도 않고 타협의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보임. 따라서 참여정부의 노동개혁이 지금 구상

대로 법개정을 위한 사회적 타협에 한정될 때 그 예상진로는 두 가지임.

※ 하나는 법개정에 아무런 진전도 없이 노·사·정간의 대화조차 파행으로 흐르는 길이고 이는 DJ정부가 '99년 이후 걸어 왔던 길이며 결과적으로는 개혁회피전략이 될 것임.

※ 두번째 진로는 일정기간을 경과한 후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제출된 공익안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길인데, 이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는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노동배제전략을 결과하게 될 것임.

※ 왜냐하면 지금의 국회 의석분포로 보면 신자유주의적 개혁성향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노동법 개정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공익안에 충실한 법안을 국회에 송부하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노사는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일 것임.

※ 이 과정에서 국회는 정부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사회통합의 비전보다 법과 원칙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의 가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음.

– 오히려 노·사·정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경제사회의 발전방향과도 부합되는 길은 아마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타협일 것임.

※ 세계는 지금 일자리 창출 경쟁에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님. 과거에 비해 선진적인 시장경제의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데다가 성장의 고용흡수력이 크게 떨어지고, 최근에는 콜센터와 스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서비스 및 전문직종의 일자리조차 값싼 노동력을 찾아 옮겨다니고 있는 실정임.

※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GDP 1억원당 취업자수가 2000년에는 3.7명이지만 2010년에는 2.4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미 좋은 일자리가 빠르게 파괴되어 가고 있음.

※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 집단·공기업·금융산업의 일자리는 1,573천개('97년 10월)에서 1,247천개(2000년 10월)로 326천개 감소함. 또한 500인 이상 대기업의 취업자 비중이 '93년 17.2%에서 '97년 13.4%로 그리고 2001년에는 9.9%로 급격히 감소함.

※ 이러한 통계가 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년실업과 핵심노동력 중 조기퇴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 이미 1980년대 말 인건비 상승과 노사불안으로 인하여 부산의 신발, 군산의 합판, 대구의 섬유산업 등은 해외로 생산기지가 완전히 옮겨간 실정임.

※ 지금 한국의 수출전략산업이자 좋은 일자리의 보고인 울산·창원·포항·광양·구미 등지의 중화학·기계·전자산업이 지금과 같은 성장동력을 유지해 간

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미래성장산업을 개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타협은 반드시 노사정위원회 틀 내에서만 추진될 필요는 없음. 타협은 노·사·정의 최고지도자들과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하여 추진할 성격의 것이지 노사정위원회의 복잡한 협의구조를 거쳐야 할 사항은 아님.

※ 사회적 타협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타협의 첫 출발은 노·사·정 최고지도자들의 대화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약속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재계의 투자계획과 투자인센티브(법인세 감면 등) 그리고 직업훈련 강화 방안 등의 윤곽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임.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타협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수출 전략업종 차원에서도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음.

※ 지역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과 훈련사업 등에 노·사·정이 협력할 수 있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 지역별 노·사·정 파트너십에 기초한 자립적인 산업운용시스템(local industrial governance)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산업운용시스템은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중앙정부에 의존함이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일자리 지키기 혹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공동의 이해가 걸린 과제, 예를 들면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 프로젝트, 산업 공동화 방지대책, 숙련개발 프로젝트, 산업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등을 지역산업발전 의제로 설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사회적 파트너십은 중앙 수준의 사회적 타협과 동시에 혹은 중앙의 사회적 타협이 어려울 때도 대안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지역 수준의 노사정 파트너십이 형성되면 지역내 대기업 노사관계의 경직성도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임.

– 이것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도 추진될 수 있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역경제의 주력업종이 경쟁력을 잃어갈 때 지역경제 전체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사·정의 협력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 또한 국가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주요 업종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교육·훈련

에 대한 사회적 타협은 가능할 것임. 다만 국가차원의 사회적 타협이 선행되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왜냐하면 지역·업종차원의 타협기조를 정해 주고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의 윤곽을 제시해 주어야 하기 때문임.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타협과 그 이행과정에서 노·사·정간에 작은 신뢰와 타협이 축적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신뢰와 타협의 반복은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을 사회적 협의모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초가 될 것임.

노동판례

주요노동판례

윤문희*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주) 평화택시 사례(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

사건개요

원고회사 (주) 평화택시는 청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2001. 7. 27.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 평화택시분회가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2000. 8. 16. 회사 내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려 하자, 같은 달 15일 저녁부터 위 분회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택시배차를 중지하고 다음 날인 16일 청주시장에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부분적 직장폐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은 2000. 9. 16. 원고가 평화택시분회 소속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배차를 중지하고 이를 대상으로 직장폐쇄신고를 한 것은 위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청주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월1일 평화택시분회 소속근로자들이 2000. 8. 17.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배차요청을 함으로써 근무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직장폐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승무정지처분의 철회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1. 3.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mhyi97@kli.re.kr).

원고회사는 2001. 4. 25. 서울행정법원[1]에, 2001. 12. 20. 서울고등법원[2]에 각각 이 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원고회사가 패하고 2심에서는 항소기각판결을 하자 2003. 2. 3. 상소하였다.

판결요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한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3]

그러나 원고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청주지역택시노동조합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파업출정식을 하기도 전인 2000. 8. 15. 회사 정문을 폐쇄하는 한편, 참가인이 같은 날 수회에 걸친 배차요구하면서 다음날 파업출정식을 거행하는 1~2시간을 제외하고는 승무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차를 거부하고 8. 16. 청주시에 조합원들이 운행하는 소수의 차량에 한하여 부분직장폐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주시는 참가인의 쟁의행위 전의 직장폐쇄신청으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후에도 원고회사는 참가인과의 교섭장소에 불참하는 등 교섭에 거의 응하지 않고, 청주시로부터 허가 없이 사업을 일부 휴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차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받았다. 또한 원고회사의 선제적 직장폐쇄는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한 휴업기간에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데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우선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참가인의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행해졌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징계전력만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기준으로 볼 수 없다 - 사례(서울고법 2003. 7. 3. 선고, 2002누11860 판결)

1) 서울행법 2001. 11. 15. 선고, 2001구15411 판결.
2) 서울고법 2002. 12. 26. 선고, 2001누19706 판결.
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등 참조.

사건개요

농어촌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주) 보성교통은 총 67개의 노선 중 66개 노선을 보성군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수의 감소로 인하여 이용객이 감소하는 반면 유류비의 인상, 인건비의 상승 등의 운송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여 회사영업이익은 적자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2000. 12. 4. 보성군수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통량 감소 및 운송비용의 상승으로 운송수입이 저하되고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일부 운행노선에 대한 감회로써 경영적자를 최소화하려 하였으나 보성군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았다. 참가인 회사는 2001. 1. 3.에 11개 노선 감회(감회횟수 17회, 감회거리 1,093.6km), 1개 노선 통합 및 보성-귀산리 노선 1회 증회를 주내용으로 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보성군수는 2001. 1. 8. 보완서류 내용대로 위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였다. 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운행버스가 45대에서 42대로 3대가 줄어들게 되어 기사 5명이 그 감원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촉탁직 기사인 위 이○○과 윤○○를 우선 선정하고, 징계전력이 다수인 12명 중 징계 우선순위자 3명(원고들)을 같은 해 3. 24.자로 해고하기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고, 참가인 회사는 그에 따라 2001. 2. 19.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위 5명을 같은 해 3. 24.자로 정리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성실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사안에서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행함에 있어, 임금체불의 상태에 이르는 경영상의 악화와 사업범위의 축소 등에 대하여 보성군수의 인가를 받은 점으로부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정리해고 후에 생긴 사정은 정리해고 당시부터 예상되던 일로서 그로 말미암아 가까운 장래에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이미 실시한 정리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후의 증설이 이 정리해고의 합리성을 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참가인 회사는 희망퇴직자를 모집공고만 하였을 뿐 특별한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정리해고에 앞선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직률이 높은 운수사업체로서 그 특징을 감안하지 않는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자)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지 못한 점, 그리고 합의 당시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볼 때 노사협의회와의 합의는 상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원선정에 있어서 참가인 회사가 감원이 필요하게 된 운전기사 5인을 선정하기로 한 점과 그 중 2인은 촉탁직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한 부분은 일단 합리적으로 보이나, 나머지 3인의 경우에는 연령, 근속기간, 재산, 부양의무의 유무, 건강상태, 표창전력 등 다른 사항을 아예 고려치 않고 오로지 징계전력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근로자대표들과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정리해고를 마치 징계해고처럼 운영할 위험성이 있고, 절차나 내용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징계의 전력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 해고대상자를 선별한다면 이를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해고회피의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할 것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는 위헌이 아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등 위헌확인사건(헌재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결정)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망 윤○○은 청구 외 윤○○ 경영의 H주택이 청구 외 P계전공업(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던 광주시 장지동 소재 위 회사 2층 공장건물에 3층으로 기숙사 193.5㎡를 증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다가 2001. 3. 23. 18:10경 2층 지붕 판넬이 무너지면서 지층 7m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4. 9. 23:20경 사망하였다.

청구인의 2001. 6.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데 대하여 위 공사의 사업주인 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고, 위 공사는 연면적 193.5㎡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이어서 산업재해보상

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당연적용사업이 아닌 임의적용사업에 해당하며, 위 윤○○이 위 공사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보험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건설공사 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에 관한 공사'를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에서 제외한 부분은 위헌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위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01. 9. 24.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1구38186호로써 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소송의 계속 중 위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4]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위 본안청구에 관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면서 위 신청 중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2. 5. 27.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 등 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해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집단의 생활보장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그 공공적 성격에서 볼 때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산재보험을 시행하는 편이 사회보장적 견지에서는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그 재정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는 가입강제에 따라 적지 않은 보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뿐 아니라 보험 운영과 관련하여 법이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일정한 위반사유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업종이나 사업규모에 따라 산재발생의 위험성이 극히 낮아 굳이 보험의 활용이 불필요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비용부담능력이 미약한 영세사업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강제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근로자보호 등의 이익 못지않게 영세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초래하여 오히려 규범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의 관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일정한 적용제외사업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4) 서울행법 2002. 4. 25. 선고, 2001아1782 판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과 보험기술적 측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산재보험에 의한 근로자 보호가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는 탄력적 대처가 필요하지만, 전문적·기술적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입법자에게 이러한 광범위한 실태 파악과 유연한 대처를 기대하여 적용제외사업의 내용을 일일이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갖춘 수권법률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의미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의 의미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5] 산재보험은 비록 그것이 근로자 보호에 정책목표를 두는 제도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산재보상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는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각각의 사업은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재해발생률과 그로 인한 비용부담의 정도 및 비용부담이 주는 영향을 달리할 수밖에 없으며,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국가의 행정적 관리능력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는 가입강제에 따라 선택의 여지도 없이 보험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등 위 법이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안정된 수익구조를 갖지 못한 소규모 영세사업의 사업주 또는 업종이나 사업규모로 인하여 산재발생의 위험이 거의 없는 사업의 사업주에게까지 강제적 보험관계에 따른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일정 범위의 사업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근로자 보호의 면에서 다소간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점진적 제도개선으로 해결하여야 할 부득이한 부분으로,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포섭하는 이념적 지표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여 제정하는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4조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소지는 없다 할 것이다.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써 정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률이 최저한의 제한을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산재보험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 헌재 1996. 8. 29. 선고, 95헌바36 결정; 헌재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결정 참조.

모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기술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어떠한 범위의 사업을 강제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범위의 사업을 적용제외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기준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노동일지

주요노동일지

(2003. 8. 16～2003. 9. 15)

년·월·일	노 동 정 책	노 사 단 체	기업 및 노동조합
2003. 8. 18		· 양대노총: '주5일 근무제' 관련 공동 기자회견	· 아시아나항공노조: 2003년 임협 합의타결
8. 19		· 양대노총: '주5일 근무제' 관련 시한부 총파업	· LG정유노조: 200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 종근당노조: 파업 자진철회, 정상조업 복귀
8. 21	·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 1차 경영포럼 개최	· 경총: 근골격계 질환관련 법령 개정 설명회 개최	· 대우차노조: 2003년 임금인상 타결지연, 쟁의행위 결의 · 금속노조 대림자동차공업지회: 2003년 임단협 잠정합의
8. 22			· 화물연대: 업태별 중앙교섭 지연, 운송거부 지속 · 기아차노조: 임금협상 관련 전면·부분파업 계속 (7. 23～)
8. 23		·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결의대회' 개최	
8. 25		· 민주노총 화물연대: '컨테이너 업계와 운송연합회 측과의 재협상 무산' 기자회견	· 전국금융산업노조: 2003년 임·단협 합의타결
8. 26			· 기아차노조: 임금인상 쟁점사항 잠정합의 · 금속노조 경한지회: 임금인상 타결지연 등 재파업 돌입
8. 27	·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 워크숍 개최	·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개최 '제조업 공동화와 대책방안'	· 금속노조 효성지회(창원공장): 임금인상 잠정합의, 정상조업 복귀

년·월·일	노 동 정 책	노 사 단 체	기업 및 노동조합
8. 28		· 양대노총: '주5일 근기법 개악저지 3차 결의대회' 개최	· 기아차노조: 2003년 임금인상 등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8. 29	· 국회: 주5일근무제 법안 본회의 통과	· 한국노총: 금속-화학 통합 워크숍	·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임·단협 타결지연, 부분파업 돌입
9. 1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 선진화 기획단 발족	· 민주노총: 화물연대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 · 경제 5단체장 및 부회장 회의	· 대우차노조: 2003년 임금인상 등 잠정합의
9. 2			· 여천NCC노조: 임금인상 타결지연, 쟁의행위 결의
9. 3	·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위 회의	· 한국노총: '삼성프라자, 노조설립 방해' 항의성명 발표 · 민주노총: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결의대회 및 한마당' 개최	
9. 4	· 노사정위원회: 본회의 개최 ·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 발표		
9. 5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모델의 함의' 심포지움 개회	·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중단, 선업무복귀 결정	· 여천NCC노조: 임금인상 쟁점사항 잠정합의
9. 8			· 흥국생명노조: 임금인상 등 쟁점합의안 가결, 임금협약 체결
9. 9			· 여천NCC노조: 임금인상 쟁점사항 합의타결 · 삼양중기노조: 임·단협 쟁점사항 합의타결
9. 15			· 금속노조 통일중공업지회: 2003년 임금인상 등 쟁점사항 잠정합의 찬반투표 · 금속노조한진중공업지회: 임·단협 타결지연, 전면·부분파업 계속(7. 22~)

주 요 통 계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 십억원, 전년동기대비 %)

		국내 총생산 (GDP)	국민 총소득 (GNI)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최종 소비지출	총고정 자본형성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서비스업[1]		
실질금액	1997	423,006.7	402,655.4	126,117.2	46,137.4	9,809.0	175,956.0	268,722.6	145,294.6
	1998	394,710.4	366,026.0	116,734.8	42,161.3	9,868.0	163,287.2	241,688.0	114,563.5
	1999	437,709.4	400,521.2	141,295.1	38,305.8	10,897.0	182,771.9	264,480.4	118,772.9
	2000	478,532.9	415,098.8	163,733.1	37,125.3	12,425.3	200,170.6	282,313.2	132,337.3
	2001	493,380.3	420,774.3	167,172.3	39,207.0	13,064.4	208,031.3	292,260.7	129,926.6
	2002	524,689.4	441,463.1	177,737.3	40,449.1	14,782.4	226,421.0	312,644.3	136,219.6
	1999. 1/4	96,925.2	89,785.1	31,110.8	7,283.8	2,758.5	43,758.8	62,768.3	24,486.4
	2/4	107,613.4	98,305.5	35,109.7	9,916.4	2,591.2	45,065.7	64,474.1	30,364.8
	3/4	110,085.2	100,234.5	35,672.7	10,143.7	2,680.8	45,364.3	67,192.6	30,382.0
	4/4	123,085.7	112,196.2	39,401.9	10,961.9	2,866.5	48,583.0	70,045.3	33,539.7
	2000. 1/4	109,670.5	96,000.5	38,226.6	6,774.3	3,289.4	49,201.4	69,189.3	30,064.6
	2/4	118,563.0	102,552.8	41,112.4	9,545.3	2,984.0	49,873.2	69,817.7	34,383.2
	3/4	121,061.2	105,343.2	42,265.4	9,967.3	3,035.3	49,565.1	70,884.8	33,690.2
	4/4	129,238.1	111,476.2	42,128.7	10,838.4	3,116.8	51,531.0	72,421.5	34,199.3
	2001. 1/4	113,830.6	96,123.6	39,983.5	6,901.6	3,619.0	50,995.6	70,382.4	28,591.1
	2/4	122,125.5	103,950.2	42,128.9	9,679.9	3,068.8	51,805.4	72,580.0	32,599.4
	3/4	123,645.2	105,951.8	41,922.0	10,730.7	3,118.5	51,523.1	74,320.1	32,848.7
	4/4	133,778.9	114,748.6	43,138.0	11,894.8	3,258.1	53,707.4	76,978.1	35,887.4
	2002. 1/4	120,860.9	103,532.6	41,654.4	7,498.3	4,115.3	55,121.0	76,307.2	30,482.1
	2/4	130,226.6	109,729.0	44,915.1	9,977.9	3,471.4	56,566.8	77,971.3	34,370.8
	3/4	130,758.2	108,767.5	44,230.7	10,324.2	3,482.1	56,397.8	78,443.1	33,026.5
	4/4	142,843.7	119,434.0	46,937.1	12,648.6	3,713.6	58,335.3	79,922.7	38,340.2
	2003. 1/4	125,320.4	101,634.7	43,810.6	8,156.9	4,430.5	56,217.4	77,189.1	31,937.3
	2/4	132,669.5	109,917.0	45,916.5	10,772.6	3,677.3	56,935.9	76,874.6	35,575.0
성장률	1997	5.0	2.1	6.6	1.4	11.5	5.4	3.2	-2.2
	1998	-6.7	-9.1	-7.4	-8.6	0.6	-7.2	-10.1	-21.2
	1999	10.9	9.4	21.0	-9.1	10.4	11.9	9.4	3.7
	2000	9.3	3.6	15.9	-3.1	14.0	9.5	6.7	11.4
	2001	3.1	1.4	2.1	5.6	5.1	3.9	4.2	-1.8
	2002	6.3	4.9	6.3	3.2	13.2	8.8	6.2	4.8
	1999. 1/4	5.8	7.0	10.0	-13.6	6.1	8.0	6.8	-4.6
	2/4	11.2	9.6	20.9	-6.9	8.6	12.0	9.5	4.2
	3/4	13.0	10.6	26.2	-8.4	10.0	13.4	10.5	6.7
	4/4	13.0	10.2	26.4	-8.7	17.2	14.2	10.8	7.2
	2000. 1/4	13.1	6.5	22.9	-7.0	19.2	12.4	10.2	22.8
	2/4	10.2	4.3	17.1	-3.7	15.2	10.7	8.3	13.2
	3/4	10.0	5.2	18.5	-1.7	13.2	9.3	5.5	10.9
	4/4	5.0	-0.6	6.9	-1.1	8.7	6.1	3.4	2.0
	2001. 1/4	3.8	0.6	4.6	1.9	10.0	3.6	1.7	-4.9
	2/4	3.0	1.4	2.5	1.4	2.8	3.9	4.0	-5.2
	3/4	2.1	0.6	-0.8	7.7	2.7	4.0	4.8	-2.5
	4/4	3.5	2.9	2.4	9.7	4.5	4.2	6.3	4.9
	2002. 1/4	6.2	7.7	4.2	8.6	13.7	8.1	8.4	6.6
	2/4	6.6	5.6	6.6	3.1	13.1	9.2	7.4	5.4
	3/4	5.8	2.7	5.5	-3.8	11.7	9.5	5.5	0.5
	4/4	6.8	4.1	8.8	6.3	14.0	8.6	3.8	6.8
	2003. 1/4	3.7	-1.8	5.2	8.8	7.7	2.0	1.2	4.8
	2/4	1.9	0.2	2.2	8.0	5.9	0.7	-1.4	3.5

주 : 1995년 불변가격.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 단, 금융귀속서비스는 공제.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표 2> 각 기관의 2003년 거시경제 전망

2003년 전망 (이 전)	발표시기	자 료	경제 성장률 (%)	소비자 물가 (%)	경상 수지 (억달러)	실업률 (%)
한국경제연구원	2002. 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5.8	3.0	-7.4	-
LG 경제연구원	2002. 9	2003년 국내외 경제전망	5.6	3.1	-6.0	2.9
삼성경제연구소	2002. 10	최근 경제동향과 2003년 전망	5.8	3.6	19.1	3.0
현대경제연구원	2002. 9	최근 경제동향 및 2003년도 경제전망	5.7	3.5	0~9.0	2.9
산 업 연 구 원	2002. 11	2003년 국내경제 전망	5.6	3.0	-	-
한국노동연구원	2003. 1	매월노동동향 1월호	-	-	-	2.9

2003년 전망 (이 전)	발표시기	자 료	경제 성장률 (%)	소비자 물가 (%)	경상 수지 (억달러)	실업률 (%)
한국개발연구원	2003. 4	2003년 1/4분기 KDI 경제전망	4.2	3.8	15.0	3.4
한국경제연구원	2003. 4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3.5	4.0	13.0	-
LG 경제연구원	2003. 4	2003년 국내외 경제전망	3.8	3.8	-12.0	3.6
현대경제연구원	2003. 4	현 경기국면평가와 국내외 경제전망	4.0내외	3.9	-10.0	3.5
한 국 은 행	2003. 4	향후 경제전망	4.1	3.9	-10.0	-
한국노동연구원	2003. 6	매월노동동향 6월호	-	-	-	3.3

2003년 전망 (최 근)	발표시기	자 료	경제 성장률 (%)	소비자 물가 (%)	경상 수지 (억달러)	실업률 (%)
한국개발연구원	2003. 7	2003년 2/4분기 KDI 경제전망	3.1	3.4	18.0	3.5
LG 경제연구원	2003. 6	2003년 하반기 경제전망	3.3	3.2	-12.0	3.6
현대경제연구원	2003. 6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과 대응전략	4.0내외	3.7	-10.0	3.5
한 국 은 행	2003. 7	2003년 하반기 경제전망	3.1	3.5	20.0	-
한국노동연구원	2003. 9	매월노동동향 9월호	-	-	-	3.4

<표 3> 대외거래

(단위 : 십억원, 백만달러)

	국민소득계정[1]				국제수지			
	수 출	상품수출	수 입	상품수입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 출	수 입
1997	153,930.9	129,413.1	140,905.2	116,973.5	-8,166.7	-3,179.1	138,619.1	141,798.2
1998	175,640.5	149,968.1	109,798.1	88,004.2	40,364.9	41,626.8	132,121.6	90,494.8
1999	203,443.5	178,074.5	141,443.0	116,848.9	24,476.7	28,370.9	145,136.6	116,792.7
2000	245,132.6	218,952.5	169,715.7	141,443.4	12,241.2	16,871.6	175,947.7	159,076.1
2001	246,733.3	219,608.5	164,594.4	134,989.9	8,238.9	13,491.9	151,261.6	137,769.7
2002	283,418.0	257,114.2	191,512.9	157,844.9	6,092.1	14,179.8	162,553.7	148,373.9
1999. 1/4	45,394.0	39,219.6	31,991.9	26,153.6	6,058.1	6,770.2	31,467.8	24,697.6
2/4	50,978.1	44,925.3	35,095.9	28,993.5	6,145.4	7,901.9	35,619.2	27,717.3
3/4	51,070.4	44,711.9	34,729.3	28,860.3	6,596.6	6,922.6	36,429.2	29,506.6
4/4	56,001.0	49,217.7	39,625.9	32,841.5	5,676.6	6,776.2	41,647.4	34,871.2
2000. 1/4	57,606.3	51,449.7	42,099.3	35,417.6	1,617.9	2,551.1	41,575.5	39,024.2
2/4	61,274.3	54,552.3	42,306.3	35,319.6	2,925.8	4,593.0	44,065.8	39,472.8
3/4	62,252.8	55,678.8	42,499.8	35,167.1	4,222.9	5,443.4	45,411.8	39,968.4
4/4	62,999.2	57,271.7	42,810.3	35,539.1	3,474.6	4,284.1	44,894.6	40,610.5
2001. 1/4	62,795.8	55,922.7	42,224.0	35,382.2	2,683.4	3,221.7	40,622.8	37,401.1
2/4	61,652.6	54,518.4	39,145.6	32,037.8	3,781.6	5,085.3	38,634.7	33,549.4
3/4	59,504.0	52,660.7	40,028.4	32,345.6	1,240.5	2,979.7	36,227.1	33,247.4
4/4	62,780.9	56,506.7	43,196.4	35,224.3	533.4	2,205.2	35,777.0	33,571.8
2002. 1/4	64,334.0	58,044.2	44,961.2	36,908.7	1,592.0	3,119.0	36,029.1	32,910.1
2/4	69,542.9	62,867.0	46,489.2	38,413.0	1,600.1	4,369.5	40,573.5	36,204.0
3/4	71,573.4	64,701.1	48,247.4	39,614.8	929.4	2,826.0	40,913.0	38,087.0
4/4	77,967.7	71,501.9	51,815.1	42,908.4	1,970.6	3,865.3	45,038.1	41,172.8
2003. 1/4	75,384.3	69,536.1	53,010.8	43,942.6	-1,721.3	1,226.1	44,501.3	43,275.2
2/4	76,694.0	70,427.7	49,965.6	41,673.7	2,570.5p	5,724.9p	46,510.3p	40,767.4p
2001. 6					1062.7	1,711.5	13,120.1	11,408.6
7					501.4	807.9	11,616.5	10,808.6
8					-230.3	581.3	11,742.1	11,160.8
9					969.4	1,590.5	12,868.5	11,278.0
10					190.1	709.5	11,846.1	11,136.6
11					511.6	877.2	12,177.5	11,300.3
12					-168.3	618.5	11,753.4	11,134.9
2002. 1					260.2	661.8	11,669.7	11,007.9
2					362.7	608.2	10,843.1	10,234.9
3					969.1	1,849.0	13,516.3	11,667.3
4					-89.9	1,121.7	13,365.7	12,244.0
5					961.5	1,503.4	13,886.1	12,382.7
6					728.5	1,744.4	13,321.7	11,577.3
7					79.2	709.2	13,435.1	12,725.9
8					324.7	1,031.7	13,572.7	12,541.0
9					525.5	1,085.1	13,905.2	12,820.1
10					1,493.9	2,115.2	15,566.0	13,450.8
11					1,122.7	1,362.8	14,995.6	13,632.8
12					-646.0	387.3	14,476.5	14,089.2
2003. 1					-417.2	789.2	14,926.8	14,137.6
2					-110.6	500.3	14,021.3	13,521.0
3					-1,193.5	-63.4	15,553.2	15,616.6
4					-366.8	1,266.8	15,805.5	14,538.7
5					1,181.3	1,683.3	14,877.8	13,194.5
6					1,756.0p	2,792.8p	15,827.0p	13,034.2p

주 : p는 잠정치.
1) 1995년 불변가격.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표 4> 기업 및 산업활동

(단위 : 개소, 2000=100, %)

	어음부도율			산업활동(원계열)				
	부도업체	신설법인[1]	어음부도율	생 산	출 하	재 고[2]	가동률[3]	평균가동률
1996	11,589	19,264	0.14	70.4	70.6	105.2	103.0	80.8
1997	17,168	21,057	0.40	73.7	75.1	110.1	101.0	79.4
1998	22,828	20,095	0.38	68.9	68.6	91.3	86.8	68.0
1999	6,718	30,701	0.33	85.6	85.8	93.2	97.7	76.5
2000	6,693	41,460	0.26	100.0	100.0	104.9	100.0	78.6
2001	5,278	39,599	0.23	100.7	101.3	105.3	95.9	75.3
2002	4,244	38,972	0.06	108.8	109.3	104.9	99.7	78.3
2000. 4/4	1,936	8,726	0.37	104.0	103.0	104.9	101.7	77.6
2001. 1/4	1,525	9,703	0.32	97.1	97.7	111.8	94.1	76.4
2/4	1,335	10,143	0.23	101.8	102.6	109.3	99.2	75.8
3/4	1,147	10,339	0.20	99.3	99.9	105.6	94.7	75.0
4/4	1,271	9,414	0.17	104.4	105.0	105.3	95.7	74.0
2002. 1/4	980	10,983	0.08	103.7	104.9	101.9	96.0	78.0
2/4	977	10,063	0.06	109.1	109.6	102.8	102.5	78.2
3/4	1,077	8,722	0.06	106.2	106.2	102.1	97.5	78.4
4/4	1,190	9,204	0.06	116.4	116.5	104.9	102.9	78.8
2003. 1/4	1,191	9,349	0.09	110.0	109.9	112.2	97.1	78.6
2/4	1,348	8,449	0.09	112.4	112.7	113.0	100.7	77.1
2001. 8	396	3,361	0.25	97.9	98.8	106.8	92.5	74.6
9	373	3,441	0.11	103.1	104.1	105.6	98.1	75.9
10	414	2,917	0.23	102.8	103.1	105.7	96.4	75.2
11	409	3,233	0.13	106.8	108.0	105.1	98.6	75.1
12	447	3,264	0.15	103.7	103.8	105.3	92.1	71.8
2002. 1	384	4,013	0.06	105.9	105.3	108.0	97.9	77.6
2	285	3,213	0.09	94.1	96.4	104.4	86.0	77.3
3	331	3,757	0.11	111.1	113.0	101.9	104.2	79.1
4	311	3,623	0.08	111.4	112.1	102.8	105.5	80.0
5	317	3,647	0.04	112.3	113.3	101.5	105.9	78.5
6	349	2,793	0.04	103.5	103.3	102.8	96.2	76.0
7	369	3,118	0.06	107.2	105.5	104.2	98.9	78.6
8	357	2,889	0.05	106.5	106.0	105.1	97.9	78.9
9	351	2,715	0.05	105.0	107.0	102.1	95.8	77.7
10	400	3,461	0.05	117.0	117.3	103.3	106.0	79.0
11	372	2,928	0.04	116.6	117.2	103.3	103.1	78.8
12	418	2,815	0.07	115.5	115.1	104.9	99.5	78.6
2003. 1	411	3,381	0.04	110.0	109.5	109.5	96.8	78.8
2	384	2,968	0.08	103.5	103.7	111.3	91.8	79.1
3	396	3,000	0.14	116.4	116.6	112.2	102.8	77.9
4	507	3,030	0.08	113.6	113.7	113.7	102.9	77.9
5	428	2,684	0.08	111.3	112.1	113.5	99.7	75.8
6	413	2,735	0.10	112.2	112.4	113.0	99.4	77.6
7	508	2,914	0.07	108.0	107.0	113.7	93.9	73.8
8	471	2,403	0.09	-	-	-	-	-

주 :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 8대 도시 기준임. 단, 1997년 이전은 울산을 제외한 7대 도시 기준.
2) 재고의 연평균 지수는 연말 기준.
3) 제조업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어음부도율 동향』.
통계청, 산업활동 DB.

<표 5> 경기종합지수(원계열)

(단위 : 2000＝100)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2000. 11	97.8	101.4	103.6	100.7
12	96.5	101.2	103.8	100.1
2001. 1	96.2	101.4	104.3	99.8
2	96.9	101.8	104.0	99.8
3	97.4	102.3	104.3	99.8
4	97.4	102.3	104.3	99.4
5	97.8	102.6	105.0	99.2
6	98.3	102.8	105.6	98.9
7	98.3	102.8	106.0	98.5
8	98.2	103.2	106.3	98.4
9	98.4	104.1	106.7	98.9
10	99.3	105.3	106.9	99.6
11	100.5	105.8	107.0	99.6
12	101.5	105.8	107.7	99.1
2002. 1	103.3	106.6	108.3	99.4
2	105.2	107.6	108.9	100.0
3	107.5	109.0	108.8	100.8
4	108.7	109.8	109.4	101.1
5	108.8	110.1	110.1	100.9
6	107.9	110.1	110.7	100.5
7	107.3	110.5	111.4	100.4
8	106.8	111.1	112.2	100.5
9	107.3	112.0	112.7	100.8
10	107.4	112.5	112.7	100.8
11	107.9	113.1	112.7	100.9
12	108.2	114.1	113.0	101.4
2003. 1	108.1	114.9	114.3	101.6
2	107.4	115.0	114.8	101.3
3	106.3	114.9	115.6	100.7
4	105.6	114.5	115.5	99.9
5	105.4	114.4	116.3	99.4
6	106.6	114.6	117.0	98.1
7p	107.0	114.7	117.9	98.7

주 : 1) p는 잠정치.

2) 선행종합지수 - 입이직자 비율, 재고순환지표, 기업경기실사지수, 설비투자추계지수, 자본재수입액, 건축허가면적, 종합주가지수, 총유동성, 순상품교역조건 포함.

3) 동행종합지수 -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제조업 가동률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수출액, 수입액 포함.

4) 후행종합지수 - 이직자수, 상용근로자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 가계소비지출, 소비재수입액, 회사채 유통수익률 포함.

자료 : 통계청, KOSIS.

<표 6> 주요 가격지표

(단위 : %, 1995=100, 2000=100, 원/달러)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물가지수			대미환율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기준환율	평균환율
1997	3.2	89.2	90.2	84.8	1,415.2	951.1
1998	5.0	100.1	97.0	94.3	1,207.8	1,398.9
1999	-2.0	98.0	97.8	96.5	1,145.4	1,189.5
2000	-1.1	100.0	100.0	100.0	1,259.7	1,130.6
2001	2.5	99.5	104.1	105.1	1,326.1	1,290.8
2002	1.7	99.2	106.9	107.7	1,200.4	1,251.2
1999. 1/4	-5.6	97.3	97.4	95.4	1,224.7	1,197.6
2/4	-3.5	97.5	97.6	96.1	1,155.9	1,191.9
3/4	-0.4	97.6	97.6	96.3	1,218.7	1,194.3
4/4	1.2	99.5	98.6	98.1	1,145.4	1,174.0
2000. 1/4	-0.1	100.3	99.3	98.9	1,108.3	1,125.7
2/4	-0.6	99.6	99.1	98.6	1,114.8	1,116.2
3/4	-2.3	99.9	100.5	100.7	1,115.0	1,115.3
4/4	-1.4	100.1	101.1	101.8	1,259.7	1,164.3
2001. 1/4	2.3	100.4	102.9	103.9	1,328.0	1,271.2
2/4	4.3	100.2	104.1	105.3	1,300.7	1,305.9
3/4	2.5	99.4	104.7	106.0	1,309.1	1,293.9
4/4	1.0	98.1	104.5	105.3	1,326.1	1,292.1
2002. 1/4	1.1	98.3	105.5	106.2	1,326.4	1,319.6
2/4	1.4	99.7	106.9	108.0	1,201.8	1,269.5
3/4	0.9	99.2	107.4	108.2	1,225.5	1,196.6
4/4	3.1	99.7	107.9	108.5	1,200.4	1,220.6
2003. 1/4	2.2	101.2	109.8	111.1	1,252.9	1,201.0
2/4	1.8	101.0	110.5	111.7	1,193.1	1,208.9
2001. 9		99.1	104.8	105.9	1,309.1	1,293.7
10		98.6	104.8	106.0	1,296.1	1,302.6
11		98.2	104.2	104.9	1,274.0	1,284.0
12		97.6	104.4	105.0	1,326.1	1,289.7
2002. 1		97.8	105.0	105.6	1,314.8	1,317.6
2		98.3	105.5	106.1	1,327.7	1,318.7
3		98.8	106.1	107.0	1,326.4	1,322.5
4		99.6	106.7	107.7	1,292.2	1,318.9
5		100.0	107.1	108.3	1,233.3	1,266.1
6		99.4	107.0	107.9	1,201.8	1,223.5
7		99.1	106.7	107.2	1,197.0	1,185.1
8		99.2	107.4	108.2	1,200.5	1,196.3
9		99.4	108.0	109.1	1,225.5	1,208.5
10		99.6	107.7	108.3	1,233.4	1,241.1
11		99.8	107.8	108.3	1,208.0	1,211.9
12		99.8	108.3	108.9	1,200.4	1,208.9
2003. 1		100.5	109.0	109.8	1,170.5	1,179.3
2		101.1	109.6	110.6	1,186.8	1,191.2
3		102.1	110.9	112.9	1,252.9	1,232.4
4		101.5	110.7	112.3	1,213.1	1,232.8
5		101.0	110.5	111.7	1,206.6	1,199.8
6		100.5	110.2	111.2	1,193.1	1,194.0
7		100.7	110.1	111.2	1,180.0	1,181.6
8		101.1	110.6	112.0	1,179.9	1,178.4

주 : 1)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2000=100.
2) 2003. 7월부터 생산자물가지수의 기준이 2000=100으로 변경.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경제통계 DB.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표 7>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단위 : 2000＝100, 1995=100)

	수 출			수 입			순상품 교역 조건	소득교 역조건	교역조건 (국민소득 계정)
	금액 지수	물량 지수	단가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단가 지수			
1998	124.5	74.0	102.0	105.7	65.1	87.4	116.7	86.4	89.0
1999	101.0	82.9	99.6	92.9	84.0	87.3	114.1	94.6	85.7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3.0
2001	96.2	100.7	86.9	103.5	97.7	91.0	95.5	96.2	74.3
2002	89.5	114.1	83.1	97.1	109.7	87.5	95.0	108.4	70.5
2000.1/4	100.9	90.8	100.7	98.9	97.5	99.5	101.2	91.9	75.9
2/4	98.8	101.0	99.9	98.3	101.9	97.4	102.6	103.6	74.9
3/4	101.6	102.3	101.4	99.8	100.2	100.1	101.3	103.6	74.7
4/4	98.7	106.6	97.5	102.9	100.2	103.2	94.5	100.7	71.8
2001.1/4	101.6	97.8	93.3	106.6	99.9	95.6	97.6	95.5	71.7
2/4	99.6	100.4	88.9	107.9	94.0	92.8	95.8	96.2	70.3
3/4	93.8	104.4	84.3	103.4	95.0	90.8	92.8	93.2	69.7
4/4	89.8	105.0	80.9	96.3	102.5	84.6	95.6	100.4	69.8
2002.1/4	92.8	100.6	82.9	97.5	105.6	81.1	102.2	102.8	73.1
2/4	91.0	111.8	83.9	98.8	107.6	87.4	96.0	107.3	72.3
3/4	86.4	117.0	82.7	95.1	108.2	90.4	91.5	107.1	69.1
4/4	87.8	127.8	82.6	97.1	117.5	91.1	90.7	115.9	-
2003.1/4	89.1	117.1	84.6	100.9	114.1	97.5	86.8	101.6	-
2/4	86.9	127.0	83.7	97.2	112.0	93.6	89.4	113.5	-
2001. 6	96.8	104.1	86.9	106.7	96.2	92.7	93.7	97.5	
7	94.8	96.0	84.6	104.3	91.2	92.2	91.8	88.1	
8	93.0	99.3	83.9	103.2	94.2	90.3	92.9	92.2	
9	93.5	106.1	84.3	102.6	99.3	90.1	93.6	99.3	
10	92.0	102.5	82.1	99.6	97.7	89.2	92.0	94.3	
11	89.0	109.7	80.3	94.9	103.6	84.5	95.0	104.2	
12	88.4	102.8	80.4	94.4	105.0	81.4	98.8	101.6	
2002. 1	90.9	98.8	82.1	95.6	107.0	80.5	102.0	100.8	
2	92.3	92.8	82.1	96.4	98.8	80.3	102.2	94.8	
3	95.1	109.9	84.8	100.4	110.8	82.6	102.7	112.9	
4	95.2	110.4	85.1	102.1	110.7	85.9	99.1	109.4	
5	91.0	115.2	84.9	98.9	109.8	87.7	96.8	111.5	
6	87.0	109.7	81.4	95.4	102.3	88.6	91.9	100.8	
7	85.3	115.1	83.3	93.6	109.4	89.4	93.2	107.2	
8	86.3	118.4	82.2	94.8	107.3	90.4	90.9	107.6	
9	87.5	117.4	82.5	97.0	107.9	91.4	90.3	106.0	
10	89.2	132.4	82.1	99.2	114.7	91.2	90.0	119.2	
11	86.8	129.0	82.0	95.0	116.8	90.9	90.2	116.4	
12	87.4	122.0	83.6	97.1	121.0	91.2	91.7	111.9	
2003. 1	86.9	115.4	84.7	98.0	115.8	94.7	89.4	103.2	
2	89.0	109.7	84.8	101.4	107.1	98.4	86.2	94.6	
3	91.4	126.1	84.4	103.2	119.5	99.3	85.0	107.2	
4	88.4	129.1	83.9	98.5	116.5	96.2	87.2	112.6	
5	86.3	124.0	83.4	96.4	110.4	92.4	90.3	112.0	
6	86.2	127.8	83.7	96.6	109.2	92.2	90.8	116.0	
7	85.8	-	-	96.6	-	-	-	-	
8	86.2	-	-	97.2	-	-	-	-	

주 : 교역조건은 1995=100, 나머지는 2000=1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한국은행.『국민소득동향』.

<표 8> 장래추계인구

(단위 : 천명, %)

장래추계 인 구	전 체	남 자	여 자	인구증가율	연령별			65세이상 인구비중	노령화 지 수
					0~14세	15~64 세	65세 이상		
1963	27,262	13,708	13,554	2.65	11,850	14,595	816	2.99	6.89
1970	32,241	16,309	15,932	1.99	13,709	17,540	991	3.07	7.23
1975	35,281	17,766	17,515	1.61	13,614	20,449	1,217	3.45	8.94
1980	38,124	19,236	18,888	1.57	12,951	23,717	1,456	3.82	11.24
1981	38,723	19,536	19,188	1.56	12,925	24,300	1,498	3.87	11.59
1982	39,326	19,837	19,489	1.49	12,887	24,880	1,559	3.96	12.10
1983	39,910	20,129	19,781	1.24	12,801	25,495	1,615	4.05	12.61
1984	40,406	20,375	20,031	0.99	12,592	26,141	1,674	4.14	13.29
1985	40,806	20,576	20,230	1.00	12,305	26,759	1,742	4.27	14.16
1986	41,214	20,772	20,442	0.99	12,030	27,383	1,801	4.37	14.97
1987	41,622	20,960	20,662	0.98	11,746	27,999	1,876	4.51	15.97
1988	42,031	21,155	20,876	0.99	11,487	28,582	1,962	4.67	17.08
1989	42,449	21,357	21,092	0.99	11,261	29,135	2,053	4.84	18.23
1990	42,869	21,568	21,301	0.99	10,974	29,701	2,195	5.12	20.00
1991	43,296	21,784	21,512	1.04	10,859	30,171	2,266	5.23	20.87
1992	43,748	22,014	21,734	1.02	10,791	30,611	2,346	5.36	21.74
1993	44,195	22,243	21,952	1.01	10,735	31,023	2,437	5.51	22.70
1994	44,642	22,472	22,169	1.01	10,653	31,446	2,542	5.69	23.87
1995	45,093	22,705	22,388	0.96	10,537	31,900	2,657	5.89	25.21
1996	45,525	22,925	22,600	0.94	10,403	32,327	2,795	6.14	26.87
1997	45,953	23,148	22,805	0.72	10,233	32,791	2,929	6.37	28.63
1998	46,287	23,296	22,991	0.71	10,092	33,126	3,069	6.63	30.41
1999	46,617	23,458	23,159	0.84	9,973	33,420	3,224	6.92	32.32
2000	47,008	23,667	23,341	0.71	9,911	33,702	3,395	7.22	34.25
2001	47,343	23,835	23,508	0.63	9,860	33,904	3,579	7.56	36.30
2002	47,640	23,984	23,656	0.06	9,793	34,075	3,772	7.92	38.50
2010	49,594	24,932	24,662	0.38	8,552	35,741	5,302	10.69	62.00
2020	50,650	25,377	25,273	0.04	7,034	35,948	7,667	15.14	109.00
2050	44,337	21,752	22,585	-1.04	4,650	24,417	15,271	34.44	328.43

주 : 노령화지수(Aged-child ratio)=(65세 이상 인구/ 0~14세 인구)×100.

자료 : 통계청, KOSIS.

<표 9> 주요 노동시장지표

(단위 : 천명, 천원, 시간, %)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임금 총액	근로시간 (전체)	근로시간 (초과)	노동 생산성
1997	21,782	62.5	21,214	568	2.6	1,463	203.0	23.4	128.5
1998	21,428	60.6	19,938	1,490	7.0	1,427	199.2	20.0	146.0
1999	21,666	60.6	20,291	1,374	6.3	1,544	206.6	22.6	91.6
2000	22,069	61.0	21,156	913	4.1	1,668	204.8	23.4	100.0
2001	22,417	61.3	21,572	845	3.8	1,752	202.4	20.4	99.3
2002	22,877	61.9	22,169	708	3.1	1,948	199.6	18.0	107.5
1999. 1/4	20,894	58.7	19,118	1,776	8.5	1,467	197.6	21.2	87.0
2/4	21,807	61.1	20,351	1,457	6.7	1,479	208.7	23.0	89.1
3/4	21,941	61.3	20,706	1,235	5.6	1,583	206.0	22.7	91.3
4/4	22,020	61.3	20,991	1,029	4.7	1,644	214.0	23.5	98.1
2000. 1/4	21,494	59.7	20,380	1,114	5.2	1,594	205.1	23.1	98.0
2/4	22,197	61.4	21,337	861	3.9	1,610	203.9	24.1	100.7
3/4	22,319	61.6	21,486	833	3.7	1,721	201.7	23.2	101.3
4/4	22,265	61.2	21,420	845	3.8	1,744	208.4	23.3	99.9
2001. 1/4	21,687	59.5	20,627	1,060	4.9	1,718	198.8	21.4	96.5
2/4	22,653	62.0	21,839	814	3.6	1,675	203.7	20.4	99.1
3/4	22,655	61.8	21,900	755	3.3	1,793	204.2	20.0	98.7
4/4	22,674	61.7	21,923	751	3.3	1,825	203.2	19.8	102.8
2002. 1/4	22,339	60.7	21,511	829	3.7	1,862	193.6	17.3	105.7
2/4	23,112	62.6	22,423	689	3.0	1,860	202.2	18.3	107.0
3/4	23,067	62.3	22,416	652	2.8	1,994	197.6	18.1	106.9
4/4	22,989	62.0	22,326	663	2.9	2,076	205.0	18.5	110.2
2003. 1/4	22,439	60.3	21,633	806	3.6	2,102	196.0	17.3	108.9
2/4	23,055	61.8	22,303	751	3.3	2,014	198.7	17.8	-
2001. 8	22,515	61.5	21,738	777	3.5	1,700	204.5	19.8	
9	22,698	61.9	21,991	707	3.1	1,942	203.6	19.8	
10	22,807	62.2	22,082	725	3.2	1,670	197.1	20.1	
11	22,800	62.1	22,059	740	3.2	1,590	210.2	19.8	
12	22,416	61.0	21,628	788	3.5	2,215	202.4	19.3	
2002. 1	22,189	60.3	21,342	847	3.8	1,763	206.3	17.4	
2	22,256	60.4	21,420	836	3.8	2,017	172.6	16.0	
3	22,573	61.2	21,770	803	3.6	1,805	201.7	18.5	
4	23,035	62.4	22,301	734	3.2	1,862	203.2	18.5	
5	23,144	62.7	22,455	689	3.0	1,712	210.1	18.3	
6	23,157	62.7	22,515	643	2.8	2,006	193.3	18.1	
7	23,193	62.7	22,534	659	2.8	1,939	203.4	18.4	
8	22,914	61.9	22,223	691	3.0	1,901	199.9	18.2	
9	23,095	62.4	22,490	605	2.6	2,141	189.4	17.6	
10	23,177	62.5	22,538	639	2.8	1,884	207.7	18.9	
11	23,037	62.1	22,389	648	2.8	1,778	207.0	18.2	
12	22,754	61.3	22,052	702	3.1	2,563	200.4	18.5	
2003. 1	22,352	60.1	21,562	789	3.5	2,384	200.0	17.6	
2	22,320	60.0	21,498	822	3.7	1,962	187.2	16.4	
3	22,644	60.8	21,837	807	3.6	1,962	200.8	17.9	
4	22,912	61.5	22,156	756	3.3	2,012	202.7	17.5	
5	23,114	62.0	22,370	744	3.2	1,866	197.9	18.3	
6	23,138	62.0	22,383	755	3.3	2,168	196.1	17.7	
7	23,238	62.2	22,456	781	3.4	-	-	-	
8	22,883	61.2	22,126	756	3.3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각호.

<표 10> 생산가능인구(성별 · 연령대별)

(단위 : 천명)

	전 체	남 자				여 자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997	34,851	5,638	8,424	1,730	1,095	6,086	8,111	1,934	1,834
1998	35,346	5,604	8,588	1,776	1,155	6,046	8,292	1,970	1,915
1999	35,757	5,504	8,773	1,806	1,224	5,957	8,507	1,986	2,001
2000	36,186	5,409	8,980	1,832	1,300	5,833	8,744	1,991	2,096
2001	36,579	5,270	9,199	1,866	1,386	5,682	8,973	2,005	2,199
2002	36,963	5,128	9,403	1,913	1,478	5,523	9,173	2,040	2,305
1999. 1/4	35,597	5,544	8,693	1,796	1,197	5,996	8,422	1,982	1,967
2/4	35,697	5,512	8,744	1,803	1,214	5,972	8,476	1,985	1,989
3/4	35,814	5,494	8,799	1,810	1,232	5,946	8,534	1,988	2,012
4/4	35,918	5,464	8,856	1,816	1,251	5,915	8,594	1,988	2,035
2000. 1/4	36,011	5,440	8,893	1,822	1,270	5,884	8,654	1,989	2,059
2/4	36,125	5,414	8,952	1,828	1,290	5,853	8,716	1,989	2,083
3/4	36,252	5,403	9,011	1,835	1,310	5,818	8,775	1,991	2,108
4/4	36,358	5,379	9,066	1,844	1,331	5,779	8,832	1,994	2,133
2001. 1/4	36,434	5,325	9,118	1,852	1,352	5,741	8,890	1,997	2,159
2/4	36,527	5,282	9,173	1,860	1,374	5,703	8,949	2,000	2,185
3/4	36,633	5,217	9,227	1,870	1,397	5,663	9,003	2,006	2,212
4/4	36,723	5,255	9,278	1,882	1,419	5,622	9,051	2,016	2,238
2002. 1/4	36,824	5,187	9,329	1,894	1,442	5,582	9,102	2,025	2,264
2/4	36,919	5,146	9,380	1,906	1,466	5,542	9,152	2,034	2,291
3/4	37,012	5,109	9,429	1,919	1,489	5,504	9,199	2,045	2,318
4/4	37,097	5,070	9,473	1,933	1,513	5,466	9,241	2,056	2,345
2003. 1/4	37,193	5,037	9,518	1,947	1,538	5,430	9,285	2,067	2,372
2/4	37,297	5,009	9,565	1,961	1,562	5,394	9,329	2,078	2,399
2001. 8	36,635	5,257	9,227	1,870	1,397	5,663	9,003	2,006	2,212
9	36,661	5,241	9,223	1,874	1,404	5,649	9,019	2,009	2,220
10	36,691	5,229	9,260	1,878	1,412	5,636	9,035	2,012	2,229
11	36,725	5,219	9,277	1,882	1,419	5,622	9,052	2,016	2,238
12	36,753	5,203	9,294	1,886	1,427	5,609	9,068	2,019	2,247
2002. 1	36,791	5,198	9,312	1,890	1,435	5,595	9,085	2,022	2,255
2	36,826	5,188	9,329	1,894	1,442	5,582	9,101	2,025	2,264
3	36,856	5,174	9,346	1,898	1,450	5,568	9,118	2,028	2,273
4	36,887	5,160	9,363	1,902	1,458	5,555	9,135	2,031	2,282
5	36,917	5,145	9,380	1,906	1,466	5,542	9,152	2,034	2,291
6	36,952	5,133	9,398	1,910	1,474	5,529	9,169	2,038	2,300
7	36,985	5,123	9,414	1,914	1,482	5,517	9,185	2,041	2,309
8	37,013	5,110	9,429	1,919	1,489	5,504	9,199	2,045	2,318
9	37,038	5,094	9,443	1,924	1,497	5,491	9,213	2,048	2,327
10	37,072	5,086	9,458	1,928	1,505	5,479	9,227	2,052	2,336
11	37,094	5,068	9,472	1,933	1,513	5,466	9,241	2,056	2,345
12	37,124	5,055	9,487	1,938	1,521	5,454	9,256	2,059	2,354
2003. 1	37,161	5,048	9,503	1,942	1,529	5,442	9,270	2,063	2,363
2	37,193	5,037	9,518	1,947	1,538	5,430	9,285	2,067	2,372
3	37,226	5,026	9,534	1,952	1,546	5,418	9,299	2,070	2,381
4	37,262	5,018	9,550	1,956	1,554	5,406	9,314	2,074	2,390
5	37,300	5,011	9,566	1,961	1,562	5,394	9,329	2,078	2,399
6	37,330	4,997	9,581	1,966	1,571	5,382	9,343	2,082	2,409
7	37,366	4,990	9,596	1,971	1,579	5,370	9,357	2,085	2,418
8	37,390	4,976	9,609	1,975	1,587	5,358	9,370	2,088	2,4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1> 경제활동인구(성별 · 연령대별)

(단위 : 천명)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997	12,843	2,948	8,054	1,381	460	8,938	2,723	4,826	981	408
1998	12,852	2,868	8,176	1,342	465	8,576	2,520	4,727	950	380
1999	12,881	2,778	8,270	1,335	497	8,786	2,487	4,892	977	429
2000	13,000	2,734	8,435	1,302	528	9,069	2,546	5,077	967	478
2001	13,142	2,637	8,595	1,339	571	9,275	2,566	5,240	966	504
2002	13,411	2,577	8,793	1,410	631	9,466	2,563	5,393	979	530
1999.1/4	12,589	2,782	8,111	1,277	421	8,305	2,477	4,667	852	309
2/4	12,918	2,770	8,270	1,362	515	8,893	2,453	4,959	1,025	456
3/4	13,000	2,801	8,311	1,361	527	8,941	2,489	4,931	1,038	484
4/4	13,016	2,760	8,388	1,341	527	9,004	2,528	5,013	994	469
2000.1/4	12,786	2,775	8,283	1,255	473	8,708	2,573	4,879	883	373
2/4	13,028	2,705	8,454	1,316	553	9,170	2,524	5,113	1,017	516
3/4	13,093	2,738	8,480	1,322	554	9,226	2,550	5,116	1,018	542
4/4	13,093	2,719	8,525	1,317	532	9,172	2,538	5,201	952	481
2001.1/4	12,821	2,666	8,414	1,251	490	8,866	2,582	5,052	847	385
2/4	13,224	2,649	8,619	1,367	589	9,429	2,561	5,317	1,009	542
3/4	13,261	2,642	8,639	1,372	608	9,394	2,555	5,261	1,017	562
4/4	13,264	2,592	8,707	1,368	598	9,410	2,565	5,331	989	526
2002.1/4	13,160	2,641	8,637	1,333	549	9,179	2,600	5,243	901	436
2/4	13,473	2,589	8,812	1,418	655	9,639	2,570	5,475	1,023	571
3/4	13,506	2,561	8,830	1,445	669	9,562	2,550	5,424	1,013	573
4/4	13,507	2,516	8,893	1,445	652	9,483	2,533	5,433	979	537
2003.1/4	13,339	2,514	8,893	1,366	567	9,100	2,550	5,262	859	428
2/4	13,549	2,451	9,019	1,442	636	9,506	2,499	5,469	992	546
2001. 8	13,218	2,632	8,619	1,363	603	9,297	2,530	5,199	1,012	556
9	13,240	2,570	8,670	1,379	622	9,458	2,524	5,320	1,037	576
10	13,295	2,577	8,708	1,386	623	9,512	2,505	5,373	1,053	582
11	13,307	2,594	8,726	1,377	610	9,493	2,581	5,361	1,004	547
12	13,191	2,604	8,686	1,339	561	9,226	2,608	5,258	911	448
2002. 1	13,112	2,681	8,604	1,304	523	9,077	2,630	5,173	864	410
2	13,131	2,663	8,620	1,314	534	9,125	2,601	5,212	890	422
3	13,238	2,579	8,688	1,382	590	9,335	2,569	5,342	948	475
4	13,448	2,611	8,788	1,403	646	9,586	2,580	5,451	1,007	549
5	13,473	2,586	8,816	1,414	658	9,671	2,589	5,476	1,028	578
6	13,497	2,569	8,831	1,435	663	9,660	2,542	5,497	1,036	586
7	13,587	2,641	8,831	1,442	673	9,606	2,604	5,416	1,010	576
8	13,444	2,551	8,798	1,432	662	9,470	2,541	5,375	997	557
9	13,486	2,492	8,861	1,463	670	9,610	2,506	5,480	1,032	592
10	13,537	2,492	8,894	1,473	678	9,640	2,509	5,504	1,032	595
11	13,527	2,515	8,899	1,450	663	9,510	2,528	5,438	996	548
12	13,456	2,543	8,886	1,412	616	9,298	2,562	5,356	911	469
2003. 1	13,302	2,539	8,863	1,347	552	9,050	2,571	5,225	834	420
2	13,311	2,528	8,874	1,352	558	9,009	2,569	5,203	829	407
3	13,403	2,474	8,941	1,398	590	9,241	2,511	5,358	914	458
4	13,500	2,462	8,988	1,432	617	9,413	2,485	5,433	978	517
5	13,571	2,453	9,030	1,445	643	9,542	2,489	5,494	1,003	556
6	13,575	2,439	9,039	1,447	649	9,563	2,523	5,478	996	567
7	13,649	2,547	9,011	1,446	644	9,589	2,601	5,434	990	563
8	13,487	2,442	8,971	1,429	644	9,396	2,524	5,336	978	55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2> 경제활동참가율(성별 · 연령대별)

(단위 : %)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997	76.1	52.3	95.6	79.8	42.0	49.8	44.7	59.5	50.7	22.2
1998	75.1	51.2	95.2	75.6	40.3	47.1	41.7	57.0	48.2	19.8
1999	74.4	50.5	94.3	73.9	40.6	47.6	41.7	50.5	49.2	21.4
2000	74.2	50.5	93.9	71.1	40.6	48.6	43.6	58.1	48.6	22.8
2001	74.2	50.0	93.4	71.8	41.2	49.2	45.2	58.4	48.2	22.9
2002	74.8	50.3	93.5	73.7	42.7	49.7	46.4	58.8	48.0	23.0
1999.1/4	73.1	50.2	93.3	75.5	35.2	45.2	41.3	55.4	43.0	15.7
2/4	74.8	50.3	94.6	70.8	42.4	48.3	41.1	58.5	52.3	22.9
3/4	75.0	51.0	94.5	75.2	42.8	48.4	41.9	57.8	52.2	24.1
4/4	74.9	50.5	94.7	73.8	42.1	48.6	42.7	58.3	50.0	23.0
2000.1/4	73.4	51.0	93.1	68.9	37.2	46.9	43.7	56.4	44.4	18.1
2/4	74.5	50.0	94.4	72.0	42.9	49.2	43.1	58.7	51.1	24.8
3/4	74.6	50.7	94.1	72.0	42.3	49.4	43.8	58.3	51.1	25.7
4/4	74.3	50.5	94.0	71.4	40.0	48.9	43.9	58.9	47.7	22.6
2001.1/4	72.6	50.1	92.3	67.5	36.2	47.2	45.0	56.8	42.4	17.8
2/4	74.8	50.2	94.0	73.5	42.9	50.1	44.9	59.4	50.5	24.8
3/4	74.7	50.3	93.6	73.3	43.5	49.7	45.1	58.4	50.7	25.4
4/4	74.5	49.7	93.9	72.7	42.1	49.7	45.6	58.9	49.1	23.5
2002.1/4	73.7	50.9	92.6	70.4	38.1	48.4	46.6	57.6	44.5	19.3
2/4	75.3	50.3	93.9	74.4	44.7	50.7	46.4	59.8	50.3	24.9
3/4	75.3	50.1	93.6	75.3	44.9	50.2	46.3	59.0	49.5	24.8
4/4	75.1	49.6	93.9	74.8	43.1	49.6	46.3	58.8	47.6	22.9
2003.1/4	73.9	49.9	93.4	70.2	36.9	47.5	47.0	56.7	41.6	18.0
2/4	74.9	48.9	94.3	73.5	40.7	49.5	46.3	58.6	47.7	22.8
2001. 8	74.5	50.1	93.4	72.9	43.2	49.2	44.7	57.7	50.4	25.1
9	74.3	49.0	93.8	73.6	44.3	50.0	44.7	69.0	51.6	25.9
10	74.8	49.3	94.0	73.8	44.1	50.3	44.4	59.5	52.3	26.1
11	74.8	49.7	94.1	73.2	43.0	50.2	45.9	59.2	49.8	24.4
12	74.1	50.0	93.5	71.0	39.3	48.7	46.5	58.0	45.1	19.9
2002. 1	73.5	51.6	92.4	69.0	36.4	47.9	47.0	56.9	42.7	18.2
2	73.6	51.3	92.4	69.4	37.0	48.1	46.6	57.3	44.0	18.6
3	74.1	49.8	93.0	72.8	40.7	49.2	46.1	58.6	46.7	20.9
4	75.2	50.6	93.9	73.8	44.3	50.4	46.4	59.7	49.6	24.1
5	75.3	50.3	94.0	74.2	44.9	50.8	46.7	59.8	50.5	25.2
6	75.3	50.0	94.0	75.1	45.0	50.7	46.0	60.0	50.8	25.5
7	75.8	51.6	93.8	75.3	45.4	50.4	47.2	59.0	49.5	24.9
8	74.9	49.9	93.3	74.6	44.5	49.7	46.2	58.4	48.8	24.0
9	75.1	48.9	93.8	76.0	44.8	50.4	45.6	59.5	50.4	25.4
10	75.3	49.0	94.0	76.4	45.0	50.5	45.8	59.7	50.3	25.5
11	75.2	49.6	94.0	75.0	43.8	49.8	46.2	58.8	48.4	23.4
12	74.8	50.3	93.7	72.9	40.5	48.6	47.0	57.9	44.2	19.9
2003. 1	73.8	50.3	93.3	69.4	36.1	47.3	47.2	56.4	40.4	17.8
2	73.8	50.2	93.2	69.4	36.3	47.0	47.3	56.0	40.1	17.2
3	74.2	49.2	93.8	71.6	38.2	48.2	46.3	57.6	44.2	19.2
4	74.7	49.1	94.1	73.2	39.7	49.1	46.0	58.3	47.2	21.6
5	75.0	49.0	94.4	73.7	41.2	49.7	46.1	58.9	48.3	23.2
6	74.9	48.8	94.3	73.6	41.3	49.8	46.9	58.6	47.8	23.5
7	75..3	51.0	93.9	73.4	40.8	49.9	48.4	58.1	47.5	23.3
8	74.3	49.1	93.4	72.4	40.6	48.8	47.1	56.9	46.8	23.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3> 경제활동참가율(성별 · 교육수준별)

(단위 : %)

	남 자				여 자			
	고졸미만	고 졸	(초)대졸미만[1]	(초)대졸이상	고졸미만	고 졸	(초)대졸미만[1]	(초)대졸이상
1997	60.6	91.7	39.8	92.7	44.7	55.4	31.7	63.9
1998	57.6	89.8	35.0	91.2	42.1	51.9	27.9	59.8
1999	57.4	88.8	39.7	89.5	42.9	51.8	31.1	59.6
2000	57.4	88.0	42.3	88.6	43.6	52.7	32.9	60.7
2001	57.0	87.8	42.6	89.0	43.4	53.9	34.0	61.4
2002	57.3	88.5	44.1	89.5	43.1	55.0	33.9	62.0
1999. 1/4	54.8	86.8	40.0	89.5	38.6	50.3	33.7	59.3
2/4	58.7	89.4	36.3	89.4	44.5	52.4	26.1	59.6
3/4	58.2	89.4	40.6	89.6	44.6	51.6	32.0	59.7
4/4	57.6	89.6	42.0	89.7	43.9	53.1	32.8	59.7
2000. 1/4	55.5	86.7	43.4	88.6	40.8	51.4	36.5	59.2
2/4	58.9	88.7	38.5	88.3	45.5	53.0	27.4	60.8
3/4	58.3	88.3	43.5	88.3	45.1	52.7	33.3	61.1
4/4	56.8	88.4	43.7	88.3	43.2	53.8	34.5	61.6
2001. 1/4	54.2	85.8	43.4	88.4	39.8	52.2	37.1	61.3
2/4	59.0	88.4	39.9	89.1	45.3	54.7	29.3	61.7
3/4	57.9	88.4	43.8	89.0	44.7	53.8	35.3	61.0
4/4	56.8	88.6	43.6	89.6	43.6	54.9	34.5	61.6
2002. 1/4	55.0	87.0	46.4	89.1	40.8	53.7	38.8	61.3
2/4	58.9	89.2	41.8	89.4	45.0	55.8	31.2	62.5
3/4	58.1	89.0	44.3	89.4	44.2	55.2	33.7	61.8
4/4	57.2	88.9	43.9	90.2	42.5	55.5	32.2	62.4
2003. 1/4	53.7	86.8	40.9	89.9	37.7	54.2	33.3	61.5
2/4	56.8	88.3	37.2	89.9	41.9	55.6	28.0	62.0
2001. 8	57.6	88.2	43.5	88.8	44.4	52.9	36.3	60.3
9	57.7	88.6	41.2	89.2	45.2	54.4	32.2	61.3
10	57.6	88.8	42.3	89.6	45.5	54.9	31.9	61.4
11	57.2	88.9	43.3	89.6	44.4	55.2	34.4	61.8
12	55.4	88.1	45.0	89.7	41.1	54.7	37.4	61.7
2002. 1	53.2	87.5	49.5	88.5	39.5	53.7	42.6	60.8
2	54.2	85.7	49.4	89.1	40.3	52.9	42.1	60.8
3	57.6	87.8	40.6	88.6	42.5	54.4	31.8	62.2
4	59.0	88.9	41.7	89.3	44.5	55.5	31.6	62.6
5	59.0	88.0	42.2	89.5	45.2	55.7	32.5	62.5
6	58.8	89.6	41.5	89.5	45.2	56.2	29.6	62.4
7	58.5	89.4	47.3	89.3	44.4	55.2	35.8	61.9
8	57.6	88.8	43.8	89.3	43.7	54.5	34.1	61.3
9	58.2	89.0	41.7	89.7	44.5	55.7	31.2	62.1
10	58.3	89.1	42.2	90.2	44.5	55.9	30.8	62.4
11	57.5	89.1	43.6	90.1	42.9	55.5	32.1	62.4
12	55.7	88.6	45.9	90.2	40.2	55.2	33.8	62.4
2003. 1	52.2	87.5	43.8	90.1	36.9	54.3	37.5	61.3
2	53.5	85.3	43.4	89.7	36.8	53.2	35.7	61.2
3	55.5	87.8	35.6	89.8	39.3	55.0	26.8	62.0
4	56.5	88.2	36.2	89.8	41.4	55.4	26.3	61.6
5	57.0	88.6	37.2	89.8	42.3	55.8	27.3	62.2
6	56.9	88.3	38.1	90.0	42.1	55.6	30.5	62.2
7	56.2	88.0	45.7	89.6	41.6	55.1	38.1	61.9
8	55.3	87.2	42.8	89.2	40.8	53.9	37.4	60.7

주 : 1) (초)대 재학 · 중퇴 · 휴학.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4>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0	2,243	17	4,293	64	1,580	3,833	1,919	1,068	192	752
2001	2,148	18	4,267	58	1,585	3,931	1,943	1,114	208	760
2002	2,069	18	4,241	52	1,746	3.991	2,007	1,140	231	734
2001. 1/4	1,709	17	4,259	61	1,416	3,849	1,922	1,090	202	765
2/4	2,373	18	4,279	62	1,603	3,900	1,937	1,102	209	772
3/4	2,379	19	4,228	56	1,642	3,958	1,955	1,124	207	752
4/4	2,131	18	4,302	55	1,679	4,017	1,958	1,141	215	750
2002. 1/4	1,727	20	4,242	53	1,601	3,996	1,996	1,126	220	751
2/4	2,251	19	4,258	56	1,791	3,980	2,024	1,134	230	725
3/4	2,252	16	4,214	50	1,781	4,000	2,018	1,140	238	731
4/4	2,046	17	4,251	50	1,812	3,988	1,989	1,159	238	729
2003. 1/4	1,699	16	4,168	74	1,734	3,972	1,947	1,085	255	754
2/4	2,127	17	4,238	77	1,854	3,890	1,944	1,081	252	768
2001. 8	2,372	18	4,164	55	1,618	3,940	1,952	1,115	208	749
9	2,389	18	4,276	56	1,671	3,969	1,928	1,136	207	746
10	2,418	18	4,285	55	1,672	3,996	1,936	1,136	210	750
11	2,193	18	4,326	55	1,699	4,033	1,951	1.145	219	750
12	1,784	19	4,296	53	1,665	4,201	1,986	1,142	216	751
2002. 1	1,627	20	4,248	53	1,550	4,010	1,995	1,132	214	751
2	1,639	19	4,233	52	1,579	4,019	1,996	1,133	223	753
3	1,915	20	4,246	54	1,674	3,958	1,998	1,112	224	748
4	2,181	20	4,293	56	1,766	3,973	2,043	1,129	223	733
5	2,282	19	4,269	58	1,796	3,966	2,016	1,130	230	729
6	2,289	17	4,241	55	1,811	4,001	2,012	1,144	236	713
7	2,249	16	4,213	52	1,817	4,043	2,036	1,148	244	726
8	2,237	15	4,190	52	1,718	3,962	2,015	1,133	232	735
9	2,270	16	4,239	46	1,807	3,994	2,002	1,139	237	732
10	2,276	16	4,254	47	1,810	3,985	1,977	1,155	240	729
11	2,094	18	4,257	51	1,822	3,980	1,988	1,159	236	724
12	1,769	17	4,240	53	1,805	4,000	2,001	1,164	237	733
2003. 1	1,596	15	4,144	74	1,704	4,034	1,993	1,084	260	751
2	1,646	15	4,152	73	1,698	3,973	1,947	1,091	254	754
3	1,855	18	4,209	75	1,801	3,908	1,902	1,082	253	755
4	2,076	17	4,238	74	1,844	3,910	1,907	1,084	249	771
5	2,154	16	4,252	78	1,852	3,889	1,956	1,078	253	774
6	2,152	18	4,225	80	1,864	3,870	1,969	1,080	255	759
7	2,102	18	4,220	78	1,843	3,858	2,024	1,075	255	750
8	2,078	16	4,115	78	1,799	3,768	2,004	1,073	240	741

주 : 2000년부터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단위 : 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351	1,010	758	1,191	428	365	886	186	19
381	1,149	701	1,236	484	393	975	206	16
413	1,251	702	1,335	551	418	1,038	215	18
362	1,086	694	1,203	461	384	938	194	17
375	1,150	736	1,249	483	394	977	203	15
387	1,179	684	1,243	486	398	984	204	15
399	1,180	691	1,250	505	396	999	222	15
405	1,205	697	1,299	510	413	1,015	220	16
405	1,256	713	1,315	551	425	1,056	218	18
416	1,275	689	1,341	564	423	1,038	212	19
425	1,266	709	1,383	578	412	1,043	211	21
401	1,201	738	1,471	538	415	960	180	24
420	1,261	764	1,489	521	409	973	196	21
388	1,178	677	1,239	482	397	977	193	15
389	1,179	688	1,241	491	389	985	216	15
399	1,174	684	1,242	495	392	990	216	15
400	1,186	692	1,255	507	394	999	222	15
397	1,179	698	1,254	514	402	1,008	228	15
407	1,189	692	1,296	506	409	1,009	219	15
405	1,198	699	1,294	504	419	1,018	221	15
402	1,229	699	1,307	519	412	1,016	221	17
396	1,247	725	1,312	539	424	1,036	219	17
408	1,249	704	1,317	553	430	1,060	222	18
410	1,273	711	1,318	562	420	1,072	213	18
416	1,284	693	1,334	561	426	1,042	214	18
413	1,261	687	1,320	570	423	1,034	206	19
419	1,281	687	1,368	560	420	1,039	215	20
430	1,271	705	1,377	573	417	1,044	213	21
424	1,268	713	1,386	579	412	1,046	212	21
421	1,260	708	1,387	581	408	1,040	206	21
401	1,191	727	1,453	547	418	970	177	23
393	1,171	734	1.489	548	411	951	172	26
408	1,240	752	1,470	518	417	959	191	24
407	1,238	756	1,479	531	404	954	192	24
420	1,267	769	1,491	512	407	982	199	21
433	1,276	767	1,498	520	418	984	196	20
436	1,302	768	1,523	538	444	998	205	21
420	1,370	757	1,486	541	438	986	196	20

<표 15> 산업별 취업자(여자)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2000	1,072	0	1,535	11	134	1,774	1,304	94	56	405
2001	1,016	1	1,519	14	136	1,847	1,321	98	58	417
2002	984	1	1,518	11	150	1,865	1,364	96	59	397
2001. 1/4	730	0	1,510	13	120	1,800	1,314	99	58	430
2/4	1,155	0	1,517	14	136	1,832	1,319	94	57	425
3/4	1,164	1	1,494	14	141	1,863	1,320	99	56	408
4/4	1,015	1	1,555	15	147	1,893	1,329	99	60	405
2002. 1/4	760	1	1,503	14	141	1,867	1,349	100	59	408
2/4	1,112	1	1,537	13	160	1,868	1,380	93	59	388
3/4	1,100	1	1,511	9	149	1,872	1,377	94	61	395
4/4	963	2	1,521	9	150	1,855	1,349	99	59	399
2003. 1/4	749	1	1,452	9	138	1,880	1,310	87	82	383
2/4	1,041	1	1,496	13	148	1,850	1,322	91	78	396
2001. 8	1,159	1	1,441	14	142	1,849	1,313	98	55	406
9	1,178	1	1,544	15	149	1,873	1,309	101	58	403
10	1,194	1	1,547	16	149	1,881	1,312	95	57	405
11	1,060	1	1,574	15	149	1,900	1,333	100	62	406
12	791	1	1,542	14	142	1,898	1,344	102	62	404
2002. 1	697	1	1,503	14	140	1,873	1,338	101	58	405
2	710	1	1,494	13	140	1,878	1,346	103	59	408
3	874	1	1,511	14	145	1,851	1,362	96	60	410
4	1,058	1	1,530	13	161	1,861	1,389	94	57	393
5	1,128	1	1,545	13	159	1,869	1,376	91	60	393
6	1,149	1	1,537	12	160	1,872	1,374	94	60	377
7	1,104	1	1,509	10	150	1,890	1,389	96	65	389
8	1,081	1	1,492	10	146	1,839	1,377	91	58	396
9	1,115	2	1,534	7	152	1,887	1,365	93	59	399
10	1,117	2	1,545	8	146	1,852	1,347	95	62	402
11	955	3	1,519	9	149	1,852	1,347	103	57	396
12	778	2	1,499	9	155	1,860	1,353	99	58	399
2003. 1	687	1	1,437	8	136	1,905	1,336	86	80	380
2	715	0	1,429	9	133	1,873	1,306	86	86	382
3	846	1	1,490	9	143	1,864	1,288	90	79	386
4	1,001	1	1,494	10	147	1,855	1,298	94	76	395
5	1,055	0	1,498	14	147	1,848	1,328	89	79	403
6	1,067	1	1,495	14	150	1,848	1,341	91	79	391
7	1,020	1	1,475	13	157	1,828	1,370	86	81	386
8	1,000	1	1,414	14	153	1,775	1,370	81	75	379

주 :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단위 : 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8	321	223	730	304	135	389	183	1
111	365	205	768	349	146	419	200	2
127	402	199	844	394	158	438	212	3
106	338	195	750	328	142	401	188	2
107	360	237	779	346	151	425	197	2
115	375	196	768	351	149	421	197	2
116	389	192	776	370	141	428	217	2
120	398	191	809	366	152	424	217	2
121	406	207	830	397	164	452	215	3
131	399	194	846	401	159	435	208	3
137	405	206	892	413	157	442	208	4
121	371	176	927	384	150	393	176	7
130	388	190	957	380	151	396	191	7
116	369	195	762	347	147	416	188	2
115	378	196	770	357	145	417	208	2
118	386	193	773	361	139	426	211	2
117	394	191	780	372	141	429	217	2
114	386	193	775	378	143	430	224	2
120	393	186	802	363	148	418	215	2
120	404	193	801	361	153	426	218	2
121	398	193	824	372	153	429	217	2
119	410	216	824	388	164	437	216	2
120	404	200	830	398	168	449	219	3
123	403	206	835	405	161	470	211	3
129	406	197	842	398	159	436	210	3
131	390	195	824	408	160	436	202	3
132	401	188	873	395	159	434	212	3
142	407	206	884	407	160	440	210	3
137	405	209	896	414	158	442	210	3
133	402	202	896	417	155	444	203	4
117	373	175	907	387	155	396	173	7
118	356	175	933	389	148	392	169	7
129	386	178	942	375	147	392	186	7
126	385	183	948	388	147	386	186	7
132	389	195	958	374	148	404	196	7
131	389	191	964	378	158	397	192	5
130	398	200	988	385	164	402	201	6
130	412	196	968	382	163	408	193	6

<표 16> 직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1997		514	1,092	2,206	2,643	4,904		2,177	3,206	2,229	2,334
1998		494	1,099	2,155	2,481	4,712		2,284	2,539	2,104	2,069
1999		462	1,063	2,60	2,296	4,811		2,214	2,605	2,117	2,403
2000		465	1,403	2,074	2,512	2,675	2,826	2,115	2,688	2,292	2,107
2001		524	1,498	2,079	2,671	2,723	2,933	2,035	2,638	2,332	2,138
2002		572	1,577	2,115	2,822	2,843	2,952	1,964	2,697	2,373	2,255
1999.	1/4	466	1,065	2,286	2,259	4,730		1,704	2,397	2,044	2,167
	2/4	453	1,068	2,319	2,282	4,754		2,378	2,577	2,078	2,441
	3/4	463	1,060	2,381	2,307	4,812		2,416	2,659	2,144	2,464
	4/4	467	1,060	2,454	2,336	4,949		2,196	2,787	2,200	2,541
2000.	1/4	455	1,379	2,052	2,458	2,619	2,801	1,746	2,563	2,279	2,028
	2/4	458	1,372	2,090	2,509	2,640	2,836	2,299	2,730	2,273	2,129
	3/4	470	1,414	2,076	2,519	2,699	2,814	2,360	2,725	2,290	2,119
	4/4	478	1,446	2,079	2,561	2,740	2,852	2,053	2,733	2,326	2,152
2001.	1/4	484	1,465	2,072	2,565	2,673	2,867	1,633	2,556	2,313	1,998
	2/4	525	1,520	2,065	2,702	2,726	2,936	2,247	2,658	2,322	2,138
	3/4	526	1,504	2,096	2,704	2,728	2,950	2,256	2,639	2,321	2,176
	4/4	562	1,506	2,082	2,714	2,764	2,980	2,004	2,700	2,372	2,240
2002.	1/4	573	1,519	2,112	2,764	2,803	2,963	1,644	2,629	2,334	2,170
	2/4	581	1,579	2,107	2,807	2,864	2,943	2,126	2,749	2,381	2,286
	3/4	571	1,598	2,131	2,815	2,859	2,964	2,151	2,709	2,377	2,239
	4/4	555	1,612	2,111	2,902	2,847	2,938	1,937	2,699	2,401	2.324
2003.	1/4	604	1,702	2,029	3,184	2,639	2,918	1,603	2,346	2,380	2,228
	2/4	585	1,707	2,109	3,212	2,696	2,834	2,001	2,437	2,379	2,343
2001.	8	524	1,496	2,090	2,685	2,707	2,937	2,259	2,609	2,308	2,124
	9	522	1,520	2,091	2,701	2,714	2,947	2,245	2,680	2,335	2,236
	10	548	1,503	2,078	2,690	2,736	2,955	2,267	2,711	2,366	2,229
	11	569	1,509	2,087	2,708	2,758	3,008	2,067	2,715	2,371	2,268
	12	570	1,505	2,082	2,744	2,797	2,976	1,679	2,674	2,379	2,223
2002.	1	567	1,505	2,111	2,761	2,783	2,970	1,551	2,580	2,336	2,178
	2	570	1,515	2,101	2,773	2,814	2,976	1,561	2,603	2,338	2,168
	3	580	1,538	2,123	2,760	2,811	2,942	1,820	2,704	2,329	2,164
	4	589	1,565	2,102	2,810	2,873	2,932	2,077	2,744	2,360	2,248
	5	583	1,588	2,105	2,805	2,868	2,928	2,146	2,751	2,389	2,291
	6	572	1,583	2,113	2,806	2,852	2,969	2,154	2,753	2,393	2,318
	7	581	1,584	2,147	2,811	2,893	2,998	2,150	2,728	2,369	2,272
	8	567	1,593	2,128	2,802	2,843	2,939	2,141	2,676	2,367	2,166
	9	566	1,618	2,118	2,831	2,841	2,956	2,162	2,724	2,395	2,278
	10	554	1,613	2,111	2,861	2,849	2,943	2,154	2,719	2,399	2,335
	11	554	1,618	2,106	2,898	2,852	2,921	1,988	2,715	2,403	2,335
	12	555	1,605	2,115	2,949	2,841	2,951	1,668	2,665	2,400	2,302
2003.	1	611	1,707	1,968	3,205	2,654	2,996	1,508	2,332	2,372	2,209
	2	600	1,715	2,037	3,168	2,640	2,924	1,558	2,308	2,383	2,165
	3	601	1,683	2,081	3,179	2,624	2,835	1,742	2,399	2,384	2,309
	4	580	1,702	2,090	3,183	2,641	2,837	1,965	2,436	2,384	2,339
	5	583	1,710	2,105	3,234	2,721	2,839	2,027	2,452	2,375	2,324
	6	591	1,709	2,133	3,220	2,726	2,825	2,010	2,425	2,379	2,365
	7	594	1,726	2,179	3,220	2,802	2,822	1,981	2,397	2,377	2,359
	8	605	1.704	2.184	3.132	2.756	2.772	1.973	2.362	2.354	2.285

주 :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임(이전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7> 직업별 취업자(여자)

(단위 : 천명)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1997	25	342	697	1,413	2,988		1,044	721	299	1,202
1998	26	362	691	1,183	2,806		1,083	594	277	1,068
1999	22	359	732	1,169	2,906		1,000	640	280	1,231
2000	23	615	587	1,285	1,815	1,549	984	623	305	983
2001	31	632	627	1,382	1,873	1,618	935	590	308	994
2002	32	669	670	1,476	1,965	1,613	907	540	302	1,051
1999. 1/4	23	355	700	1,124	2,849		696	601	275	1,095
2/4	21	359	720	1,157	2,881		1,120	634	274	1,255
3/4	21	359	748	1,180	2,902		1,161	642	280	1,249
4/4	21	362	760	1,215	2,991		1,021	684	290	1,323
2000. 1/4	19	595	565	1,253	1,776	1,514	729	628	296	954
2/4	20	600	591	1,284	1,796	1,555	1,105	624	303	1,011
3/4	25	628	587	1,286	1,838	1,549	1,147	617	302	978
4/4	30	638	604	1,315	1,851	1,577	955	624	319	988
2001. 1/4	31	631	620	1,328	1,824	1,588	676	591	308	929
2/4	30	635	626	1,384	1,887	1,622	1,061	597	312	996
3/4	30	624	633	1,390	1,872	1,628	1,078	576	308	997
4/4	33	638	631	1,425	1,910	1,634	924	597	306	1,054
2002. 1/4	35	644	654	1,440	1,922	1,620	698	558	295	1,016
2/4	35	667	667	1,476	1,987	1,613	1,019	555	298	1,089
3/4	30	668	679	1,475	1,982	1,621	1,027	527	306	1,030
4/4	27	695	682	1,512	1,967	1,598	885	519	312	1,070
2003. 1/4	35	785	707	1,474	1,763	1,567	674	429	303	1,060
2/4	32	790	721	1,500	1,819	1,543	934	446	301	1,138
2001. 8	31	616	631	1,373	1,851	1,620	1,082	558	302	957
9	33	635	632	1,399	1,867	1,626	1,073	592	310	1,054
10	33	640	619	1,410	1,884	1,621	1,090	600	308	1,064
11	32	640	640	1,421	1,911	1,646	971	604	307	1,071
12	33	636	635	1,444	1,934	1,636	712	588	303	1,028
2002. 1	32	630	656	1,437	1,902	1,623	639	562	299	998
2	35	642	642	1,434	1,928	1,627	652	555	295	1,021
3	38	660	663	1,448	1,935	1,610	803	558	291	1,030
4	39	670	658	1,471	1,985	1,610	982	564	293	1,063
5	34	665	671	1,479	1,994	1,613	1,029	554	301	1,090
6	32	666	672	1,477	1,983	1,616	1,046	547	299	1,114
7	31	658	681	1,479	2,004	1,633	1,031	526	300	1,040
8	30	665	680	1,466	1,969	1,595	1,013	522	306	993
9	29	681	677	1,479	1,974	1,635	1,037	531	311	1,057
10	27	693	684	1,493	1,973	1,601	1,028	531	315	1,090
11	27	701	679	1,510	1,966	1,591	919	526	313	1,069
12	27	692	683	1,534	1,961	1,600	709	500	307	1,051
2003. 1	39	784	690	1,481	1,768	1,601	624	421	307	1,033
2	32	791	709	1,463	1,760	1,562	648	423	297	1,018
3	35	780	722	1,478	1,761	1,536	750	444	304	1,128
4	32	790	720	1,469	1,783	1,546	904	451	301	1,132
5	31	793	712	1,512	1,834	1,547	952	448	300	1,135
6	33	786	730	1,520	1,840	1,537	947	439	302	1,148
7	35	790	742	1,540	1,885	1,525	925	429	300	1,122
8	37	770	738	1,504	1,873	1,492	917	417	292	1,078

주 :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임(이전자료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전 체						여성의 비중					
	고용주	자영자	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1997	1,639	4,262	1,908	7,282	4,236	1,886	19.5	33.8	89.8	27.7	55.9	46.1
1998	1,392	4,225	2,025	6,534	4,043	1,720	17.5	30.9	88.8	25.3	55.8	48.8
1999	1,351	4,351	1,925	6,135	4,255	2,274	18.4	31.9	87.1	25.5	53.8	51.6
2000	1,458	4,407	1,931	6,395	4,608	2,357	18.0	32.2	87.4	26.3	54.2	51.8
2001	1,554	4,497	1,863	6,714	4,726	2,218	19.0	32.4	87.4	27.7	54.8	52.3
2002	1,617	4,574	1,797	6,862	4,886	2,433	18.8	32.4	88.0	28.7	54.9	49.6
1999.1/4	1,331	4,108	1,682	6,115	4,039	1,844	18.4	31.7	87.2	25.1	54.5	52.3
2/4	1,326	4,372	2,025	6,702	4,189	2,371	18.6	31.5	87.0	25.3	51.4	51.9
3/4	1,349	4,476	2,039	6,127	4,301	2,413	18.1	32.1	87.2	25.7	53.2	50.7
4/4	1,399	4,450	1,956	6,227	4,490	2,468	18.5	32.0	87.0	25.6	53.5	51.7
2000.1/4	1,401	4,191	1,731	6,235	4,562	2,261	17.7	32.0	86.6	25.6	53.6	52.9
2/4	1,435	4,457	2,307	6,365	4,601	2,441	17.6	32.3	87.5	26.0	54.1	52.0
3/4	1,487	4,547	2,053	6,429	4,615	2,356	18.2	32.5	87.7	26.4	54.6	51.0
4/4	1,507	4,432	1,903	6,551	4,655	2,372	18.5	32.2	87.8	26.9	54.5	51.4
2001.1/4	1,504	4,248	1,678	6,593	4,588	2,017	19.1	32.0	87.3	27.3	55.0	53.9
2/4	1,558	4,544	1,967	6,762	4,760	2,247	19.1	32.2	87.9	27.6	55.2	52.0
3/4	1,558	4,642	1,967	6,739	4,722	2,273	18.9	32.7	87.3	27.6	54.5	51.2
4/4	1,596	4,552	1,840	6,764	4,835	2,237	18.9	32.6	87.3	28.2	54.5	52.1
2002.1/4	1,613	4,387	1,646	6,759	4,821	2,283	18.8	32.7	87.2	28.3	54.4	51.4
2/4	1,631	4,662	1,876	6,855	4,908	2,492	19.2	32.6	88.6	28.9	54.9	49.6
3/4	1,630	4,669	1,892	6,878	4,889	2,459	18.9	32.2	88.3	28.7	54.9	48.9
4/4	1,593	4,576	1,775	6,957	4,927	2,498	18.4	32.1	88.0	28.8	55.3	48.6
2003.1/4	1,567	4,298	1,601	7,176	4,904	2,088	17.2	29.3	89.9	28.8	55.7	49.2
2/4	1,590	4,433	1,771	7,250	5,082	2,177	17.8	29.5	90.3	28.6	56.9	49.1
2001. 8	1,555	4,676	1,966	6,706	4,613	2,221	18.6	32.7	87.5	27.7	54.2	50.6
9	1,570	4,665	1,976	6,762	4,752	2,266	19.0	32.9	87.1	28.0	54.5	52.4
10	1,590	4,681	1,991	6,750	4,773	2,297	18.9	32.5	87.5	28.0	54.5	52.7
11	1,598	4,592	1,878	6,763	4,847	2,382	19.0	32.8	87.5	28.3	54.5	51.9
12	1,600	4,382	1,651	6,779	4,886	2,331	18.9	32.6	86.7	28.4	54.4	51.6
2002. 1	1,605	4,319	1,597	6,740	4,838	2,243	18.4	32.9	86.7	28.1	54.2	51.6
2	1,596	4,316	1,604	6,749	4,861	2,293	18.9	32.6	86.7	28.2	54.2	52.2
3	1,640	4,527	1,738	6,788	4,765	2,313	19.1	32.6	87.9	28.6	54.8	50.3
4	1,637	4,644	1,845	6,853	4,857	2,465	18.9	32.7	88.5	28.9	54.7	50.1
5	1,625	4,671	1,878	6,849	4,943	2,490	19.4	32.5	88.5	28.9	55.1	49.5
6	1,630	4,670	1,906	6,862	4,923	2,523	19.3	32.5	88.8	28.8	55.0	49.3
7	1,634	4,656	1,891	6,860	4,940	2,552	19.0	32.3	88.4	28.6	54.8	48.0
8	1,634	4,674	1,884	6,851	4,806	2,372	19.1	32.0	88.1	28.7	54.7	49.5
9	1,621	4,675	1,900	6,923	4,919	2,452	18.6	32.4	88.3	28.8	55.2	49.2
10	1,605	4,692	1,896	6,944	4,899	2,503	18.4	32.4	88.3	28.9	55.2	49.4
11	1,592	4,607	1,796	6,950	4,943	2,501	18.3	32.1	88.4	28.8	55.4	48.2
12	1,582	4,431	1,634	6,977	4,940	2,489	18.5	31.7	87.1	28.8	55.4	48.3
2003. 1	1,560	4,272	1,594	7,142	4,893	2,102	16.9	29.2	90.0	29.2	54.8	49.5
2	1,571	4,295	1,586	7,158	4,853	2,035	17.6	29.3	89.2	28.6	55.9	48.8
3	1,570	4,326	1,622	7,227	4,966	2,127	17.4	29.5	90.4	28.6	56.5	49.3
4	1,568	4,378	1,726	7,237	5,079	2,168	17.2	29.2	90.6	28.4	57.1	49.0
5	1,592	4,460	1,800	7,266	5,082	2,171	17.9	29.5	90.4	28.6	56.9	48.9
6	1,611	4,460	1,788	7,245	5,086	2,193	18.4	29.9	89.8	28.6	56.8	49.4
7	1,639	4,439	1,777	7,239	5,152	2,210	18.1	30.3	89.2	28.8	56.5	48.6
8	1,680	4,535	1,762	7,236	4,872	2,041	18.3	30.4	88.9	29.5	56.7	47.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19>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성별)

(단위 : 천명, %)

	남 자			여 자		
	상 용	임 시	일 용	상 용	임 시	일 용
1997	5,262	1,866	1,017	2,020	2,370	869
1998	4,885	1,786	881	1,650	2,257	839
1999	4,574	1,966	1,100	1,562	2,289	1,174
2000	4,716	2,112	1,135	1,679	2,496	1,222
2001	4,854	2,137	1,059	1,861	2,589	1,159
2002	4,894	2,205	1,226	1,968	2,682	1,207
1999.1/4	4,578	1,837	879	1,537	2,202	965
2/4	4,534	1,921	1,140	1,538	2,268	1,231
3/4	4,551	2,015	1,189	1,576	2,286	1,224
4/4	4,631	2,089	1,192	1,596	2,401	1,276
2000.1/4	4,636	2,116	1,064	1,598	2,446	1,197
2/4	4,710	2,111	1,171	1,655	2,490	1,270
3/4	4,730	2,105	1,155	1,698	2,510	1,201
4/4	4,787	2,115	1,152	1,764	2,539	1,220
2001.1/4	4,791	2,064	929	1,802	2,523	1,088
2/4	4,897	2,134	1,079	1,865	2,626	1,168
3/4	4,870	2,148	1,110	1,869	2,574	1,163
4/4	4,856	2,202	1,119	1,908	2,633	1,217
2002.1/4	4,846	2,199	1,110	1,913	2,623	1,173
2/4	4,876	2,213	1,255	1,979	2,695	1,237
3/4	4,901	2,205	1,257	1,977	2,684	1,202
4/4	4,952	2,202	1,283	2,005	2,725	1,215
2003.1/4	5,109	2,171	1,060	2,067	2,733	1,027
2/4	5,180	2,188	1,108	2,070	2,894	1,069
2001. 8	4,848	2,115	1,097	1,858	2,499	1,124
9	4,872	2,163	1,078	1,890	2,589	1,187
10	4,860	2,174	1,085	1,890	2,599	1,211
11	4,852	2,203	1,144	1,911	2,643	1,237
12	4,856	2,228	1,128	1,923	2,658	1,203
2002. 1	4,843	2,217	1,085	1,897	2,621	1,158
2	4,848	2,227	1,097	1,901	2,635	1,196
3	4,848	2,153	1,149	1,940	2,613	1,164
4	4,872	2,202	1,228	1,981	2,655	1,236
5	4,871	2,220	1,258	1,978	2,724	1,232
6	4,885	2,217	1,279	1,977	2,706	1,244
7	4,895	2,231	1,328	1,965	2,709	1,224
8	4,882	2,177	1,198	1,969	2,629	1,174
9	4,927	2,205	1,245	1,996	2,714	1,207
10	4,938	2,197	1,267	2,006	2,702	1,236
11	4,949	2,205	1,295	2,001	2,738	1,206
12	4,970	2,205	1,287	2,007	2,735	1,202
2003. 1	5,058	2,214	1,060	2,084	2,680	1,041
2	5,110	2,140	1,042	2,048	2,713	993
3	5,159	2,158	1,079	2,068	2,807	1,048
4	5,183	2,178	1,105	2,054	2,900	1,062
5	5,186	2,188	1,109	2,080	2,894	1,062
6	5,170	2,197	1,111	2,075	2,889	1,083
7	5,154	2,241	1,137	2,085	2,911	1,073
8	5,103	2,110	1,069	2.133	2,762	97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0> 연령대별 실업자

(단위 : 천명)

	남 자					여 자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전 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997	361	188	148	21	3	207	134	67	5	1
1998	1,005	404	518	74	9	486	251	213	18	4
1999	926	355	484	83	5	448	219	205	21	3
2000	613	242	320	47	4	300	160	126	13	1
2001	561	229	289	40	4	284	159	115	9	1
2002	467	207	226	30	4	241	135	97	8	1
1999.1/4	1,189	441	641	101	6	587	296	259	28	5
2/4	988	367	527	88	6	469	216	228	20	4
3/4	837	331	422	80	3	399	180	194	21	3
4/4	692	278	346	63	5	337	184	137	14	2
2000.1/4	734	302	370	56	6	380	210	149	20	2
2/4	580	223	308	44	4	280	152	116	11	1
3/4	564	219	299	43	3	269	138	121	9	1
4/4	575	226	301	45	3	269	139	119	11	1
2001.1/4	718	278	382	55	4	342	192	137	13	1
2/4	537	208	283	42	4	278	162	106	9	0
3/4	497	211	250	33	3	258	135	115	7	1
4/4	493	222	239	29	4	258	147	103	7	1
2002.1/4	531	235	256	35	5	298	175	112	8	3
2/4	455	199	222	30	4	234	128	94	10	1
3/4	435	187	214	30	4	217	118	91	8	1
4/4	449	206	213	25	5	215	118	90	6	1
2003.1/4	503	239	223	37	3	303	185	107	11	1
2/4	470	208	224	36	3	281	154	118	9	1
2001. 8	501	212	256	32	2	276	135	133	7	1
9	469	206	231	28	5	238	122	109	7	1
10	480	203	240	33	4	245	125	110	8	1
11	490	224	239	23	3	250	144	100	5	1
12	510	239	236	30	4	278	172	98	7	1
2002. 1	549	251	263	34	1	299	185	106	6	1
2	541	236	268	32	6	295	175	107	8	4
3	503	219	238	38	8	300	164	122	11	3
4	481	210	231	34	6	253	140	100	11	3
5	448	195	218	30	4	241	128	101	11	1
6	436	190	217	26	3	206	115	82	8	0
7	436	199	202	33	3	222	128	86	8	1
8	461	187	239	31	3	231	121	101	7	2
9	407	175	200	25	5	199	106	85	8	0
10	434	190	214	25	6	205	112	88	4	1
11	441	198	218	21	4	207	115	86	6	0
12	470	231	207	28	4	232	127	96	9	1
2003. 1	487	236	210	35	6	302	188	103	11	0
2	518	250	228	39	1	304	192	103	9	0
3	503	231	232	38	3	303	176	114	12	1
4	471	210	221	38	2	285	152	122	10	1
5	465	207	220	35	4	278	152	116	10	1
6	474	207	230	34	3	281	159	115	7	0
7	485	218	227	37	3	296	167	116	11	2
8	480	200	242	33	5	277	144	119	12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1> 연령대별 실업률

(단위 : %)

	남 자					여 자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이상
1997	2.8	6.4	1.8	1.5	0.7	2.3	4.9	1.4	0.5	0.2
1998	7.8	14.1	6.3	5.5	1.8	5.5	10.0	4.5	1.9	1.1
1999	7.2	12.8	5.9	6.2	1.0	5.1	8.8	4.2	2.2	0.7
2000	4.7	8.6	3.8	3.6	0.8	3.3	6.3	2.5	1.3	0.2
2001	4.3	8.7	3.4	3.0	0.7	3.1	6.2	2.2	0.9	0.2
2002	3.5	8.0	2.6	2.1	0.6	2.5	5.3	1.8	0.8	0.2
1999.1/4	9.4	15.9	7.9	7.9	1.4	7.1	11.9	5.5	3.3	1.6
2/4	7.6	13.2	6.4	6.5	1.2	5.3	8.8	4.6	2.0	0.9
3/4	6.4	11.8	5.1	5.9	0.6	4.5	7.2	3.9	2.0	0.6
4/4	5.3	10.1	4.1	4.7	0.9	3.7	7.3	2.7	1.4	0.4
2000.1/4	5.7	10.9	4.5	4.5	1.3	4.4	8.2	3.1	2.3	0.5
2/4	4.5	8.2	3.6	3.3	0.7	3.1	6.0	2.3	1.1	0.2
3/4	4.3	8.0	3.5	3.3	0.5	2.9	5.4	2.4	0.9	0.2
4/4	4.4	8.3	3.5	3.4	0.6	2.9	5.5	2.2	1.6	0.2
2001.1/4	5.6	10.4	4.5	4.4	0.8	3.9	7.4	2.7	1.5	0.3
2/4	4.1	7.9	3.3	3.1	0.7	2.9	6.3	2.0	0.9	0.0
3/4	3.7	8.0	2.9	2.4	0.5	2.7	5.3	2.2	0.7	0.2
4/4	3.7	8.6	2.7	2.1	0.7	2.7	5.7	1.9	0.7	0.2
2002.1/4	4.0	8.9	3.0	2.6	0.9	3.2	6.7	2.1	0.9	0.2
2/4	3.4	7.7	2.5	2.1	0.6	2.4	5.0	1.7	1.0	0.2
3/4	3.2	7.3	2.4	2.1	0.6	2.3	4.6	1.7	0.8	0.2
4/4	3.3	8.2	2.4	1.7	0.8	2.3	4.7	1.7	0.6	0.2
2003.1/4	3.8	9.5	2.5	2.7	0.5	3.3	7.3	2.0	1.3	0.2
2/4	3.5	8.5	2.5	2.5	0.5	3.0	6.2	2.2	0.9	0.2
2001. 8	3.8	8.0	3.0	2.3	0.3	3.0	5.3	2.6	0.7	0.2
9	3.5	8.0	2.7	2.0	0.8	2.5	4.8	2.0	0.7	0.2
10	3.6	7.9	2.8	2.3	0.6	2.6	5.0	2.0	0.8	0.2
11	3.7	8.6	2.7	1.7	0.5	2.6	5.6	1.9	0.5	0.2
12	3.9	9.2	2.7	2.2	0.7	3.0	6.6	1.9	0.8	0.2
2002. 1	4.2	9.4	3.1	2.6	0.2	3.3	7.0	2.0	0.7	0.2
2	4.1	8.9	3.1	2.4	1.1	3.2	6.7	2.1	0.9	0.9
3	3.8	8.5	2.7	2.7	1.4	3.2	6.4	2.3	1.2	0.6
4	3.6	8.0	2.6	2.4	0.9	2.6	5.4	1.8	1.1	0.5
5	3.3	7.5	2.5	2.1	0.6	2.5	4.9	1.8	1.1	0.2
6	3.2	7.4	2.5	1.8	0.4	2.1	4.5	1.5	0.8	0.0
7	3.2	7.5	2.3	2.3	0.4	2.3	4.9	1.6	0.8	0.2
8	3.4	7.3	2.7	2.2	0.5	2.4	4.8	1.9	0.7	0.4
9	3.0	7.0	2.3	1.7	0.7	2.1	4.2	1.6	0.8	0.0
10	3.2	7.6	2.4	1.7	0.9	2.1	4.5	1.6	0.4	0.2
11	3.3	7.9	2.4	1.4	0.6	2.2	4.6	1.6	0.6	0.0
12	3.5	9.1	2.3	2.0	0.6	2.5	5.0	1.8	1.0	0.2
2003. 1	3.7	9.3	2.4	2.6	1.1	3.3	7.3	2.0	1.3	0.0
2	3.9	9.9	2.6	2.9	0.2	3.4	7.5	2.0	1.1	0.0
3	3.8	9.3	2.6	2.7	0.5	3.3	7.0	2.1	1.3	0.2
4	3.5	8.5	2.5	2.7	0.3	3.0	6.1	2.2	1.0	0.2
5	3.4	8.4	2.4	2.4	0.6	2.9	6.1	2.1	1.0	0.2
6	3.5	8.5	2.5	2.3	0.5	2.9	6.3	2.1	0.7	0.0
7	3.6	8.6	2.5	2.6	0.5	3.1	6.4	2.1	1.1	0.4
8	3.6	8.2	2.7	2.3	0.8	2.9	5.7	2.2	1.2	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2> 교육수준별 실업자

(단위 : 천명)

	남 자				여 자			
	고졸미만	고졸	(초)대졸미만[1]	(초)대졸이상	고졸미만	고졸	(초)대졸미만[1]	(초)대졸이상
1997	76	164	37	84	42	95	20	50
1998	262	470	68	205	141	212	40	92
1999	234	415	80	197	125	195	43	84
2000	148	256	61	149	79	124	30	67
2001	127	226	57	151	64	119	31	70
2002	89	184	54	140	50	96	24	71
1999. 1/4	321	540	104	224	168	245	68	105
2/4	245	455	74	214	125	220	31	92
3/4	206	377	73	181	116	175	31	77
4/4	164	290	70	168	93	140	42	62
2000. 1/4	174	312	73	175	98	148	43	91
2/4	133	250	48	149	70	124	17	70
3/4	145	230	57	132	76	116	24	54
4/4	140	231	65	140	73	107	37	53
2001. 1/4	187	288	73	170	85	138	42	77
2/4	121	222	39	154	59	120	22	76
3/4	100	209	50	139	58	105	28	68
4/4	100	184	67	142	54	114	31	58
2002. 1/4	105	211	69	146	60	116	41	81
2/4	88	188	42	137	47	101	13	73
3/4	83	175	48	129	46	85	21	66
4/4	78	162	59	149	45	83	21	66
2003.1/4	72	208	67	156	44	112	39	108
2/4	70	197	46	156	40	122	19	100
2001. 8	101	212	45	143	68	117	19	72
9	90	197	46	135	53	106	20	60
10	98	189	54	139	58	110	16	61
11	97	186	65	143	48	120	26	56
12	106	179	81	144	57	111	53	58
2002. 1	106	200	95	148	62	112	63	62
2	110	224	62	145	61	109	41	83
3	99	209	50	144	57	127	20	97
4	86	201	46	148	51	113	14	74
5	93	182	38	135	51	102	13	76
6	85	179	43	129	39	86	11	69
7	84	170	60	122	46	80	30	66
8	91	193	45	132	51	94	17	69
9	74	160	40	132	42	80	15	62
10	76	161	50	146	34	87	14	70
11	75	162	54	150	43	79	22	64
12	84	163	72	152	57	82	28	65
2003. 1	69	197	85	136	50	102	64	87
2	75	214	71	158	36	119	38	112
3	72	215	44	172	46	116	16	126
4	70	194	42	164	42	130	13	100
5	66	207	37	155	39	119	14	105
6	75	191	59	149	38	118	30	94
7	79	183	81	142	51	122	40	83
8	84	195	50	150	52	116	21	88

주 : 1) (초)대 재학・중퇴・휴학.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3> 교육수준별 실업률

(단위 : %)

	남 자				여 자			
	고졸미만	고졸	(초)대졸미만[1]	(초)대졸이상	고졸미만	고졸	(초)대졸미만[1]	(초)대졸이상
1997	2.1	3.0	6.2	2.7	1.0	2.9	6.5	3.6
1998	8.1	8.4	13.8	5.8	3.9	6.6	14.4	6.1
1999	7.3	7.6	13.1	5.5	3.4	6.1	12.6	5.2
2000	4.7	4.7	8.7	4.1	2.1	3.8	7.8	3.8
2001	4.1	4.1	7.5	3.9	1.8	3.5	7.3	3.7
2002	2.9	3.4	6.5	3.5	1.4	2.8	5.4	3.4
1999. 1/4	10.5	10.0	17.7	6.4	5.1	7.9	19.4	6.7
2/4	7.5	8.3	13.2	6.0	3.3	6.8	10.7	5.7
3/4	6.3	6.8	11.6	5.1	3.1	5.5	8.8	4.7
4/4	5.0	5.3	10.6	4.7	2.5	4.3	11.4	3.8
2000. 1/4	5.7	5.7	10.8	4.8	2.8	4.6	10.8	5.5
2/4	4.1	4.6	7.5	4.0	1.8	3.8	5.3	4.0
3/4	4.5	4.2	7.7	3.6	2.0	3.6	6.0	3.0
4/4	4.4	4.2	8.8	3.8	2.0	3.2	8.9	3.0
2001. 1/4	6.4	5.3	9.9	4.5	2.6	4.2	9.5	4.2
2/4	3.8	4.1	5.4	4.0	1.6	3.5	5.9	3.9
3/4	3.2	3.8	6.3	3.6	1.6	3.1	6.2	3.6
4/4	3.2	3.3	8.5	3.6	1.5	3.3	7.1	3.0
2002. 1/4	3.6	3.9	8.0	3.7	1.8	3.4	8.4	4.1
2/4	2.8	3.4	5.3	3.4	1.3	2.9	3.2	3.5
3/4	2.7	3.2	5.7	3.2	1.3	2.5	4.7	3.2
4/4	2.5	3.0	7.2	3.6	1.3	2.4	5.0	3.1
2003. 1/4	2.6	3.9	9.5	3.5	1.5	3.3	9.7	4.7
2/4	2.4	3.6	6.9	3.4	1.2	3.5	5.3	4.2
2001. 8	3.3	3.9	5.6	3.7	1.9	3.6	4.1	3.8
9	2.9	3.6	6.1	3.5	1.4	3.1	4.9	3.1
10	3.1	3.4	7.1	3.6	1.5	3.2	4.0	3.2
11	3.1	3.4	8.3	3.7	1.3	3.5	6.0	2.9
12	3.5	3.3	9.9	3.7	1.7	3.6	11.1	3.0
2002. 1	3.7	3.7	10.3	3.8	1.9	3.3	11.4	3.3
2	3.8	4.1	7.1	3.7	1.9	3.2	8.1	4.3
3	3.3	3.8	6.4	3.6	1.7	3.7	4.8	4.7
4	2.8	3.6	5.8	3.7	1.4	3.2	3.4	3.5
5	3.0	3.3	4.7	3.3	1.4	2.9	3.1	3.6
6	2.7	3.2	5.4	3.2	1.1	2.5	2.8	3.3
7	2.7	3.1	6.6	3.0	1.3	2.3	6.2	3.2
8	3.0	3.5	5.4	3.2	1.4	2.8	3.7	3.3
9	2.4	2.9	5.1	3.2	1.2	2.3	3.7	2.9
10	2.4	2.9	6.3	3.5	0.9	2.5	3.5	3.3
11	2.4	2.9	6.6	3.6	1.2	2.3	5.3	3.0
12	2.8	3.0	8.4	3.7	1.7	2.4	6.4	3.0
2003. 1	2.5	3.7	11.2	3.1	1.7	3.0	13.8	3.9
2	2.8	4.0	9.9	3.5	1.2	3.5	9.2	4.9
3	2.6	4.0	7.0	3.8	1.5	3.3	4.8	5.3
4	2.5	3.6	6.5	3.6	1.3	3.7	3.9	4.2
5	2.3	3.8	5.6	3.4	1.2	3.4	4.0	4.4
6	2.4	3.6	6.9	3.4	1.2	3.5	5.3	4.2
7	2.8	3.4	9.7	3.1	1.6	3.5	8.0	3.5
8	3.0	3.7	6.5	3.3	1.6	3.4	4.3	3.8

주 : 1) (초)대 재학・중퇴・휴학.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4> 실업자 구조

(단위 : 천명)

	신규실업자[1]	전직실업자[2]	구직기간			
			3개월미만	3~5개월	6~11개월	12개월이상
1998	127	1,364	832	439	197	22
1999	98	1,276	731	387	204	52
2000	62	851	543	240	109	21
2001	55	790	512	223	91	19
2002	44	664	412	198	81	18
1999. 2/4	99	1,358	745	423	228	60
3/4	80	1,155	653	331	202	49
4/4	68	961	582	277	139	31
2000. 1/4	95	1,019	667	298	124	25
2/4	57	804	493	243	107	18
3/4	50	783	500	207	109	15
4/4	46	799	513	211	97	24
2001. 1/4	75	985	663	275	96	26
2/4	53	761	468	230	94	22
3/4	44	711	457	194	88	16
4/4	47	704	460	192	86	13
2002. 1/4	66	763	514	215	85	14
2/4	43	646	403	196	72	17
3/4	30	622	373	184	74	21
4/4	37	626	356	197	93	17
2003. 1/4	106	700	530	216	57	2
2/4	60	692	473	207	68	3
2001. 8	38	739	489	185	87	16
9	34	673	395	202	95	16
10	29	696	427	199	87	13
11	46	694	467	176	82	15
12	66	722	486	202	88	13
2002. 1	74	773	548	200	88	12
2	66	770	496	241	84	15
3	57	746	499	205	83	15
4	50	684	466	177	75	17
5	43	646	391	207	74	17
6	37	606	352	204	68	19
7	40	619	381	190	67	20
8	28	663	404	187	79	21
9	23	582	332	174	77	22
10	24	615	363	173	85	19
11	37	611	362	184	86	16
12	49	652	344	234	107	17
2003. 1	113	676	540	206	42	1
2	120	702	538	225	55	4
3	83	724	514	217	73	2
4	71	685	496	193	66	1
5	53	691	458	218	64	4
6	55	700	465	211	75	3
7	59	722	507	201	71	2
8	42	714	463	199	90	3

주 : 1)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없었던 실업
2)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었던 실업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5> 실업자의 구조 : 성별 · 이직이유별[1)]

(단위 : 천명)

	남 자				여 자			
	개인사유[2)]	작업여건 불만족[3)]	휴/폐업[4)]	비자발적 사유[5)]	개인사유	작업여건 불만족	휴/폐업	비자발적 사유
1999[7)]	181	79	98	368	121	38	38	127
2000	81	113	30	255	64	58	11	91
2001	94	95	28	218	66	61	12	76
2002	85	111	16	148	65	63	7	51
1999. 2/4	194	86	108	384	120	44	42	126
3/4	185	68	84	321	109	31	26	129
4/4	168	54	53	257	116	23	12	98
2000. 1/4	86	116	35	332	71	70	13	120
2/4	71	113	31	235	58	62	9	86
3/4	82	120	26	226	55	54	12	84
4/4	87	105	26	229	73	48	8	72
2001. 1/4	119	100	37	302	73	65	16	97
2/4	84	78	29	218	69	62	11	64
3/4	81	100	28	180	57	56	14	73
4/4	92	102	19	171	65	59	7	69
2002. 1/4	93	104	16	182	68	76	8	66
2/4	88	104	13	137	61	63	9	49
3/4	79	114	19	133	63	59	6	50
4/4	79	122	16	140	69	55	5	38
2003.1/4	72	96	23	159	59	74	11	51
2/4	71	100	23	161	67	78	15	52
2001. 8	72	106	29	189	59	66	15	81
9	81	98	25	162	59	48	13	71
10	90	97	21	173	64	53	8	69
11	96	99	16	172	64	59	7	70
12	91	111	20	169	67	65	6	67
2002. 1	93	107	21	194	75	77	5	67
2	88	102	12	197	63	76	7	66
3	97	102	14	156	66	75	13	65
4	97	104	15	139	63	69	14	49
5	87	102	11	140	68	61	11	47
6	81	106	12	133	53	60	4	50
7	90	109	16	121	63	56	4	56
8	84	125	22	143	69	66	5	53
9	63	110	19	135	58	56	7	41
10	71	119	18	145	71	53	4	35
11	77	123	16	138	63	52	6	38
12	87	126	14	138	72	59	5	41
2003. 1	64	93	21	147	56	69	10	56
2	75	98	24	159	63	71	11	46
3	76	97	22	170	59	80	13	53
4	66	94	22	162	73	71	15	50
5	72	100	21	164	63	79	16	55
6	75	106	24	158	66	85	15	50
7	74	108	22	178	69	84	16	63
8	69	126	23	176	71	75	18	64

주 : 1) 이직시기 1년 미만 전직실업자.
2) 개인 · 가족적 이유, 건강상 이유, 정년퇴직/연로(정년퇴직/연로는 적은 수를 차지).
3) 작업여건(시간 · 보수 등) 불만족.
4) 직장의 휴업 · 폐업.
5) 명예 · 조기퇴직 · 정리해고 /임시적 ·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 없음 /사업경영 악화.
6) 1999년도 휴 · 폐업은 휴 · 폐업 및 해고를 포함, 비자발적사유에서 명예 · 조기퇴직 · 정리해고는 제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6> 비경제활동인구(전체)

(단위 : 천명, %)

	전 체	통학 비중	비통학 비경활	비경활이유별					
				육 아	가 사	통 학	연 로	심신장애	기 타
1997	13,070	34.0	8,622	1,476	5,010	4,448	1,170	276	689
1998	13,919	32.6	9,379	1,785	5,061	4,540	1,352	263	918
1999	14,092	34.9	9,167	1,854	4,925	4,474	1,380	292	1,167
2000	14,118	30.8	9,766	1,774	5,013	4,352	1,328	328	1,321
2001	14,162	29.6	9,966	1,679	5,143	4,196	1,291	374	1,478
2002	14,086	29.2	9,978	1,562	5,253	4,108	1,288	408	1,467
1999. 1/4	14,704	29.8	10,323	1,922	5,440	4,381	1,412	269	1,279
2/4	13,893	32.7	9,350	1,822	4,711	4,543	1,379	294	1,144
3/4	13,873	32.1	9,423	1,844	4,749	4,450	1,386	311	1,134
4/4	13,898	32.5	9,378	1,829	4,801	4,520	1,343	295	1,111
2000. 1/4	14,517	29.2	10,274	1,869	5,323	4,243	1,364	311	1,407
2/4	13,927	31.9	9,487	1,773	4,813	4,440	1,320	328	1,253
3/4	13,933	31.1	9,598	1,740	4,887	4,335	1,310	336	1,325
4/4	14,093	31.2	9,703	1,716	5,030	4,390	1,319	338	1,300
2001. 1/4	14,747	27.8	10,643	1,750	5,555	4,104	1,338	357	1,642
2/4	13,874	30.7	9,609	1,664	4,914	4,265	1,286	377	1,367
3/4	13,978	29.7	9,822	1,669	5,002	4,156	1,269	383	1,498
4/4	14,049	30.3	9,791	1,632	5,102	4,258	1,272	381	1,405
2002. 1/4	14,485	27.4	10,522	1,624	5,538	3,963	1,292	397	1,671
2/4	13,807	30.1	9,656	1,555	5,056	4.151	1,271	393	1,381
3/4	13,944	29.5	9,836	1,539	5,182	4,108	1,273	418	1,425
4/4	14,107	29.8	9,898	1,528	5,235	4,209	1,318	425	1,393
2003. 1/4	14,755	26.5	10,841	1,510	5,496	3,914	1,680	442	1,712
2/4	14,243	28.8	10,140	1,474	4,977	4,103	1,718	439	1,532
2001. 8	14,120	29.2	10,004	1,681	5,094	4,116	1,267	387	1,575
9	13,963	30.9	9,652	1,659	4,930	4,311	1,261	380	1,423
10	13,884	31.2	9,558	1,629	4,923	4,326	1,266	380	1,360
11	13,925	30.7	9,654	1,630	5,013	4,271	1,273	376	1,362
12	14,336	29.1	10,161	1,637	5,369	4,175	1,276	386	1,494
2002. 1	14,602	27.0	10,662	1,648	5,634	3,940	1,292	399	1,688
2	14,570	26.5	10,715	1,645	5,618	3,855	1,293	401	1,757
3	14,284	28.7	10,191	1,578	5,361	4,093	1,291	392	1,568
4	13,853	29.6	9,755	1,556	5,107	4,098	1,271	390	1,430
5	13,773	30.0	9,636	1,554	5,040	4,137	1,272	392	1,379
6	13,794	30.6	9,575	1,555	5,021	4,219	1,270	396	1,333
7	13,793	29.0	9,787	1,552	5,159	4,006	1,269	407	1,399
8	14,098	28.9	10,026	1,532	5,277	4,072	1,282	423	1,511
9	13,942	30.4	9,698	1,534	5,109	4,244	1,267	424	1,364
10	13,895	30.7	9,630	1,515	5,061	4,265	1,302	421	1,331
11	14,057	30.1	9,828	1,536	5,179	4,229	1,318	429	1,367
12	14,370	28.8	10,237	1,534	5,466	4,133	1,332	424	1,480
2003. 1	14,809	26.2	10,930	1,507	5,716	3,879	1,602	434	1,669
2	14,873	25.4	11,099	1,538	5,586	3,774	1,677	445	1,852
3	14,582	28.0	10,493	1,485	5,184	4,089	1,762	447	1,614
4	14,350	28.7	10,231	1,480	5,035	4,119	1,755	440	1,520
5	14,187	29.0	10,072	1,461	4,949	4,115	1,704	436	1,521
6	14,192	28.7	10,118	1,480	4,948	4,074	1,693	441	1,555
7	14,128	27.1	10,305	1,488	5,025	3,823	1,693	449	1,649
8	14,508	27.1	10,574	1,532	5,165	3,934	1,682	457	1,73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7> 비경제활동인구(여자)

(단위 : 천명, %)

	전 체	통학 비중	비통학 비경활	비경활이유별					
				육 아	가 사	통 학	연 로	심신장애	기 타
1997	9,027	22.6	6,984	1,472	4,563	2,043	663	88	197
1998	9,647	22.1	7,512	1,782	4,637	2,135	748	92	254
1999	9,665	21.9	7,545	1,850	4,535	2,120	742	101	318
2000	9,596	21.5	7,529	1,769	4,635	2,067	693	114	318
2001	9,584	20.8	7,591	1,673	4,747	1,993	683	135	353
2002	9,576	20.3	7,633	1,556	4,907	1,943	680	152	339
1999.1/4	10,062	20.6	7,985	1,918	4,876	2,077	769	91	332
2/4	9,534	22.7	7,374	1,818	4,390	2,160	746	103	318
3/4	9,538	22.1	7,428	1,839	4,424	2,110	740	108	318
4/4	9,527	22.4	7,394	1,824	4,451	2,133	714	102	302
2000.1/4	9,877	20.4	7,867	1,863	4,841	2,010	715	106	343
2/4	9,472	22.2	7,371	1,767	4,499	2,101	694	114	297
3/4	9,466	21.8	7,404	1,735	4,558	2,062	679	117	315
4/4	9,566	21.9	7,471	1,710	4,644	2,095	685	118	315
2001.1/4	9,920	19.7	7,961	1,743	5,006	1,959	700	124	388
2/4	9,408	21.6	7,375	1,659	4,564	2,033	688	134	330
3/4	9,490	20.8	7,517	1,665	4,668	1,973	676	142	367
4/4	9,517	21.1	7,511	1,626	4,751	2,006	669	138	327
2002.1/4	9,793	19.1	7,921	1,617	5,105	1,872	682	146	372
2/4	9,381	20.9	7,416	1,549	4,747	1,965	671	145	304
3/4	9,504	20.5	7,557	1,534	4,858	1,947	675	160	329
4/4	9,626	20.7	7,638	1,524	4,916	1,988	692	156	350
2003.1/4	10,053	18.6	8,184	1,506	5,341	1,869	787	147	403
2/4	9,694	20.1	7,741	1,472	4,915	1,953	841	152	361
2001. 8	9,587	20.5	7,626	1,676	4,747	1,961	676	143	384
9	9,440	21.6	7,404	1,654	4,603	2,036	670	141	338
10	9,400	21.8	7,348	1,624	4,596	2,052	669	136	323
11	9,435	21.3	7,427	1,624	4,677	2,008	671	138	317
12	9,717	20.2	7,759	1,629	4,979	1,958	668	140	342
2002. 1	9,880	18.9	8,013	1,640	5,167	1,867	681	147	378
2	9,847	18.5	8,022	1,638	5,161	1,825	683	148	392
3	9,653	19.9	7,730	1,571	4,988	1,923	684	142	345
4	9,418	20.6	7,478	1,551	4,787	1,940	671	141	328
5	9,350	20.9	7,397	1,548	4,735	1,953	673	146	296
6	9,377	21.4	7,375	1,550	4,720	2,002	668	148	290
7	9,446	20.1	7,541	1,546	4,844	1,905	677	152	322
8	9,595	20.2	7,659	1,526	4,939	1,936	681	165	349
9	9,470	21.1	7,469	1,529	4,792	2,001	669	162	317
10	9,454	21.3	7,443	1,512	4,772	2,011	684	156	320
11	9,598	20.8	7,602	1,533	4,881	1,996	692	157	340
12	9,825	19.9	7,866	1,527	5,095	1,956	699	155	390
2003. 1	10,088	18.3	8,239	1,502	5,461	1,849	734	144	399
2	10,144	17.9	8,327	1,534	5,439	1,817	779	145	431
3	9,928	19.6	7,985	1,482	5,123	1,943	849	152	379
4	9,771	20.1	7,809	1,478	4,979	1,962	853	151	349
5	9,657	20.3	7,698	1,460	4,887	1,959	838	151	363
6	9,653	20.1	7,714	1,478	4,880	1,940	832	153	371
7	9,642	18.9	7,816	1,486	4,951	1,826	823	160	395
8	9,848	18.9	7,985	1,529	5,076	1,863	805	162	4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표 28> 주요 노동이동지표

(단위 : 천명, %)

	당월입직 (입직률)	신규채용 (신규채용률)	당월이직 (이직률)	퇴직및 해고 (퇴직및 해고율)
1997	121.1 (2.32)	102.3 (1.96)	138.3 (2.65)	114.6 (2.20)
1998	86.4 (1.78)	64.9 (1.34)	129.7 (2.68)	103.4 (2.13)
1999	155.7 (2.75)	129.9 (2.29)	142.3 (2.51)	105.0 (1.85)
2000	165.6 (2.89)	144.1 (2.52)	152.4 (2.66)	120.6 (2.10)
2001	138.1 (2.34)	123.0 (2.08)	150.4 (2.55)	122.3 (2.07)
2002	152.2 (2.52)	137.0 (2.27)	151.1 (2.50)	122.0 (2.02)
1999.2/4	158.2 (2.81)	130.5 (2.31)	144.1 (2.56)	104.3 (1.85)
3/4	160.7 (2.83)	132.8 (2.34)	145.3 (2.55)	111.6 (1.96)
4/4	161.8 (2.82)	142.7 (2.49)	137.0 (2.39)	106.6 (1.86)
2000.1/4	196.1 (3.48)	167.7 (2.97)	167.4 (2.97)	131.5 (2.33)
2/4	167.9 (2.93)	147.6 (2.58)	152.7 (2.67)	117.6 (2.05)
3/4	154.4 (2.68)	136.1 (2.36)	145.1 (2.52)	115.1 (2.00)
4/4	143.9 (2.49)	125.1 (2.16)	144.7 (2.50)	117.9 (2.04)
2001.1/4	157.6 (2.65)	134.6 (2.26)	165.8 (2.79)	127.1 (2.14)
2/4	137.7 (2.32)	122.5 (2.07)	148.7 (2.51)	120.9 (2.04)
3/4	133.7 (2.27)	121.3 (2.06)	147.6 (2.51)	122.6 (2.08)
4/4	123.4 (2.11)	113.5 (1.94)	139.5 (2.39)	118.5 (2.03)
2002.1/4	161.3 (2.68)	142.5 (2.37)	158.4 (2.63)	130.7 (2.17)
2/4	156.1 (2.59)	140.3 (2.32)	158.3 (2.62)	123.9 (2.05)
3/4	149.5 (2.48)	134.2 (2.22)	146.8 (2.43)	116.5 (1.93)
4/4	142.1 (2.35)	131.2 (2.17)	140.8 (2.33)	116.9 (1.94)
2003.1/4	187.2 (2.90)	167.5 (2.60)	186.3 (2.89)	165.0 (2.56)
2/4	154.8 (2.40)	139.7 (2.17)	165.2 (2.56)	146.9 (2.28)
2001. 7	137.1 (2.32)	122.5 (2.08)	152.6 (2.59)	125.4 (2.13)
8	130.7 (2.22)	120.0 (2.04)	152.2 (2.59)	128.2 (2.18)
9	133.2 (2.27)	121.4 (2.07)	138.0 (2.35)	114.2 (1.95)
10	130.0 (2.22)	118.4 (2.02)	149.4 (2.55)	128.1 (2.19)
11	130.6 (2.24)	121.2 (2.08)	141.7 (2.43)	122.9 (2.11)
12	109.7 (1.88)	100.9 (1.73)	127.5 (2.19)	104.6 (1.79)
2002. 1	126.3 (2.10)	114.8 (1.91)	126.0 (2.09)	101.1 (1.68)
2	142.0 (2.36)	120.5 (2.00)	152.1 (2.52)	126.5 (2.10)
3	215.7 (3.59)	192.1 (3.19)	197.1 (3.28)	164.6 (2.74)
4	175.0 (2.90)	154.0 (2.55)	166.8 (2.76)	132.7 (2.20)
5	151.4 (2.51)	136.5 (2.26)	159.2 (2.64)	124.7 (2.06)
6	142.0 (2.35)	130.5 (2.16)	149.0 (2.47)	114.2 (1.89)
7	160.4 (2.66)	145.3 (2.41)	148.0 (2.46)	115.0 (1.91)
8	145.7 (2.41)	128.5 (2.13)	153.3 (2.54)	121.5 (2.01)
9	142.5 (2.36)	128.6 (2.13)	139.0 (2.30)	113.0 (1.87)
10	151.2 (2.51)	139.0 (2.30)	153.0 (2.53)	126.6 (2.10)
11	150.3 (2.49)	140.0 (2.32)	138.1 (2.29)	116.6 (1.93)
12	124.8 (2.06)	114.7 (1.90)	131.3 (2.17)	107.6 (1.78)
2003. 1	180.7 (2.80)	160.4 (2.49)	177.2 (2.67)	146.6 (2.27)
2	168.4 (2.61)	148.2 (2.30)	179.7 (2.78)	158.9 (2.46)
3	212.4 (3.29)	193.9 (3.01)	207.1 (3.21)	189.5 (2.94)
4	175.6 (2.72)	154.1 (2.39)	170.5 (2.64)	148.0 (2.29)
5	143.6 (2.22)	129.8 (2.01)	169.6 (2.63)	148.0 (2.29)
6	145.1 (2.26)	135.3 (2.10)	155.7 (2.42)	144.5 (2.25)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7~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29> 사업체 규모별 노동이동

(단위 : 천명)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5규모		6규모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입직자	이직자
1997	-	-	36.7	40.3	35.6	40.6	24.8	27.9	6.6	8.1	17.4	21.4
1998	-	-	26.7	36.3	26.6	37.4	18.0	26.3	4.1	8.3	10,9	21.5
1999	26.2	23.3	41.0	38.2	40.0	34.4	25.0	23.1	5.5	5.3	17.9	18.0
2000	24.3	21.5	43.0	41.0	43.2	39.9	29.1	26.9	5.7	6.0	20.3	17.2
2001	24.9	24.0	39.4	41.0	34.8	39.3	21.6	25.3	3.9	5.6	13.5	15.2
2002	27.0	26.5	43.8	44.0	41.3	39.8	22.7	23.1	5.8	5.9	11.7	11.8
1999. 2/4	26.9	24.8	43.4	40.8	41.0	35.5	23.0	23.2	4.9	5.3	19.1	14.5
3/4	27.0	24.7	40.8	40.3	42.9	35.6	27.2	22.5	6.5	5.2	16.3	17.0
4/4	25.8	22.6	44.7	36.7	40.8	31.9	26.6	22.2	5.9	4.7	18.0	18.9
2000. 1/4	27.7	24.4	50.7	44.3	51.0	44.4	33.6	28.7	7.3	6.4	25.8	19.2
2/4	25.5	21.7	42.0	41.8	42.6	37.9	29.8	29.5	6.1	6.9	21.9	14.9
3/4	22.8	20.7	40.4	39.2	40.3	39.6	28.7	25.3	5.3	5.0	16.9	15.2
4/4	21.4	19.1	38.9	38.8	38.9	37.6	24.2	24.2	4.3	5.5	16.3	19.4
2001. 1/4	28.4	25.7	45.9	43.2	38.0	42.0	23.7	27.0	4.3	8.3	17.3	19.6
2/4	25.4	23.9	40.5	42.8	34.4	39.1	20.0	24.8	3.6	4.9	13.8	13.2
3/4	23.7	23.8	36.1	41.3	35.4	38.3	22.2	26.1	4.3	5.2	12.0	13.1
4/4	22.1	22.7	35.2	36.7	31.6	37.9	20.5	23.5	3.4	3.8	10.7	14.9
2002. 1/4	28.8	27.1	43.3	42.8	43.8	42.2	25.2	24.5	6.1	6.9	14.2	14.8
2/4	27.3	28.3	47.8	48.9	40.0	39.7	22.8	24.2	5.6	6.0	12.6	11.2
3/4	26.4	25.7	42.3	42.8	42.3	39.5	22.3	22.5	5.7	5.4	10.6	10.8
4/4	25.6	25.0	41.8	41.4	39.1	37.8	20.6	21.2	5.7	5.1	9.3	10.3
2003. 1/4	31.4	31.1	51.9	52.7	45.2	48.2	28.7	27.1	9.8	9.2	20.2	18.1
2/4	27.4	27.8	46.0	45.3	38.2	45.5	22.7	26.2	7.2	8.0	13.3	12.5
2001. 6	24.9	25.0	36.5	48.0	32.9	38.2	19.6	25.7	3.6	4.5	9.7	11.6
7	26.6	26.4	34.9	43.0	34.7	37.8	23.6	26.9	3.8	5.4	13.6	13.1
8	21.2	23.3	38.5	44.0	35.5	41.3	21.2	24.6	4.6	5.0	9.6	14.0
9	23.3	21.7	34.8	36.7	36.0	35.7	21.7	26.6	4.6	5.0	12.8	12.2
10	22.0	22.8	36.0	38.8	34.3	37.2	22.1	28.4	3.4	4.3	12.2	17.8
11	24.4	24.8	37.0	38.2	32.2	39.0	22.8	22.1	3.8	3.7	10.4	13.9
12	19.8	20.4	32.5	33.2	28.2	37.6	16.6	19.8	3.0	3.5	9.6	12.9
2002. 1	17.7	19.5	35.1	33.4	37.2	32.6	20.9	21.4	5.0	5.6	10.4	13.6
2	27.8	27.4	39.2	39.7	38.5	42.6	20.5	22.5	5.2	6.9	10.9	13.0
3	41.0	34.6	55.5	55.4	55.6	51.3	34.1	29.5	8.2	8.4	21.2	17.8
4	31.2	31.2	53.7	52.2	42.8	38.5	26.6	26.5	6.6	6.1	13.9	12.3
5	25.4	29.6	45.1	47.5	41.5	40.6	21.5	24.7	5.0	6.1	12.9	10.7
6	25.1	24.1	44.6	47.0	35.7	40.1	20.2	21.4	5.2	5.9	11.2	10.4
7	29.0	28.0	45.7	42.5	43.5	38.7	23.9	21.6	6.0	5.2	12.3	12.1
8	26.1	23.8	40.6	47.9	43.0	43.2	21.4	23.3	5.4	5.3	9.2	9.9
9	24.0	25.2	40.5	38.2	40.5	36.6	21.6	22.7	5.6	5.8	10.4	10.5
10	27.0	28.9	44.6	44.9	42.9	39.0	20.8	24.0	5.9	5.5	10.1	10.7
11	28.9	22.8	42.4	39.5	42.0	39.0	21.6	20.9	5.5	5.0	9.8	10.8
12	20.9	23.5	38.3	39.7	32.4	35.2	19.5	18.6	5.5	4.9	8.1	9.4
2003. 1	29.0	29.7	52.7	49.4	38.7	43.3	30.6	25.9	10.2	8.1	19.5	15.7
2	28.4	31.1	47.5	48.8	41.0	45.8	25.2	27.6	8.6	9.1	17.6	17.3
3	36.7	32.5	55.6	59.7	55.9	55.4	30.2	27.7	10.6	10.4	23.5	21.4
4	31.7	30.2	50.5	46.9	43.4	45.2	26.0	26.7	7.7	8.4	16.5	13.1
5	25.7	26.6	40.8	46.0	35.7	49.2	22.7	27.3	7.1	7.6	11.7	13.0
6	24.7	26.7	46.7	43.1	35.7	42.1	19.4	24.6	6.8	7.9	11.8	11.3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7～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규모: 5～9인, 2규모: 10～29인, 3규모: 30～99인, 4규모: 100～299인, 5규모: 300～499인, 6규모: 500～999인을 의미.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0> 주요 업종 노동이동

(단위 :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1]		숙박음식점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2]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1997	2.45	2.93	2.63	3.03	2.84	3.21	2.48	3.08	2.04	2.23	1.38	1.69	2.89	2.93
1998	1.79	2.90	2.55	3.33	1.87	3.36	1.35	3.15	1.71	2.04	1.38	2.18	2.32	3.07
1999	2.75	2.47	3.38	2.87	3.22	3.06	3.62	3.28	2.33	2.02	2.20	2.06	3.19	3.20
2000	2.88	2.59	3.44	3.36	3.29	3.18	3.16	3.18	2.64	2.13	2.02	2.05	3.81	3.43
2001	2.14	2.45	2.91	3.28	2.82	2.86	2.94	3.15	2.14	2.49	1.76	2.04	3.44	3.27
2002	2.56	2.54	2.93	2.87	2.65	2.70	3.46	3.41	2.26	2.25	1.89	1.84	3.33	3.29
1999.2/4	2.82	2.45	4.90	3.13	3.03	3.29	3.32	2.89	2.13	2.01	2.11	2.57	3.26	3.38
3/4	2.77	2.63	2.85	2.91	3.65	2.96	3.83	3.69	3.06	2.12	2.24	1.99	3.17	2.94
4/4	3.13	2.55	2.89	2.56	3.21	2.97	3.63	3.40	2.11	1.86	2.03	1.52	3.15	2.87
2000.1/4	3.53	2.81	3.89	3.53	3.61	3.47	3.32	3.44	2.91	2.04	2.51	2.42	4.49	3.67
2/4	2.81	2.64	3.72	3.36	3.29	3.26	2.95	2.92	2.86	2.19	2.11	1.93	3.88	3.65
3/4	2.66	2.35	3.25	3.08	3.29	3.05	3.34	3.54	2.39	2.23	1.92	1.89	3.71	3.43
4/4	2.54	2.55	2.92	3.47	2.96	2.93	3.04	2.81	2.40	2.07	1.57	1.95	3.20	2.98
2001.1/4	2.28	2.52	3.08	3.98	3.28	2.93	3.33	3.63	2.10	2.68	2.47	2.65	4.08	3.50
2/4	2.20	2.50	2.96	3.47	2.81	2.86	3.07	3.04	2.08	2.38	1.49	1.85	3.23	3.32
3/4	2.07	2.35	2.82	3.10	2.68	2.88	2.33	3.04	2.19	2.50	1.82	1.98	3.33	3.21
4/4	2.00	2.45	2.75	2.55	2.52	2.79	3.04	2.90	2.17	2.38	1.25	1.66	3.14	3.05
2002.1/4	2.39	2.59	3.33	3.29	2.65	2.62	3.37	3.03	2.53	2.21	2.12	2.02	3.62	3.24
2/4	2.56	2.66	3.22	3.18	2.62	2.85	3.67	3.19	2.36	2.28	2.05	1.91	3.46	3.27
3/4	2.57	2.42	2.53	2.66	2.70	2.59	3.40	3.77	2.24	2.31	2.11	1.85	3.21	3.42
4/4	2.53	2.43	2.73	2.48	2.66	2.49	3.12	3.47	2.09	2.13	1.37	1.69	3.18	3.20
2003.1/4	2.76	2.92	3.35	3.18	3.01	2.95	3.19	2.92	2.28	2.25	2.33	2.47	3.67	3.84
2/4	2.42	2.66	2.70	2.73	2.57	2.98	2.83	3.26	1.99	2.50	1.84	1.81	3.53	3.31
2001. 8	2.09	2.41	3.16	2.67	2.47	2.97	2.11	3.32	2.15	2.44	1.73	1.55	3.12	3.11
9	2.03	2.26	2.54	2.77	2.49	2.53	2.45	2.34	2.16	2.58	1.87	2.28	3.27	3.19
10	2.10	2.53	2.46	2.43	2.65	2.97	3.18	2.81	2.24	2.55	1.59	1.90	3.22	3.38
11	2.20	2.35	3.17	2.87	2.70	3.26	3.34	3.51	2.32	2.33	0.95	1.80	3.03	3.12
12	1.70	2.46	2.61	2.35	2.19	2.14	2.59	2.39	1.94	2.27	1.22	1.27	3.18	2.65
2002. 1	1.90	2.03	2.90	3.11	2.40	2.20	3.44	2.02	2.14	1.91	1.58	1.49	3.28	3.14
2	2.11	2.53	3.56	3.06	2.17	2.37	2.23	3.21	2.70	2.25	1.83	1.54	3.39	2.74
3	3.15	3.21	3.55	3.69	3.37	3.30	4.45	3.85	2.75	2.47	2.95	3.04	4.19	3.83
4	2.99	2.80	3.53	3.20	2.64	3.42	4.37	3.69	2.50	2.27	2.76	2.41	3.57	3.26
5	2.72	2.77	3.21	3.33	2.73	3.29	3.33	3.29	2.13	2.33	1.81	1.39	2.97	3.24
6	2.48	2.60	2.58	2.66	2.39	2.53	4.17	3.08	1.96	2.46	1.37	1.60	3.38	3.41
7	2.84	2.44	3.00	3.13	2.94	2.75	3.32	3.81	2.26	2.57	2.26	1.91	3.15	3.22
8	2.47	2.54	2.41	2.78	2.69	2.50	3.06	3.76	2.14	2.13	2.51	2.52	3.25	3.35
9	2.41	2.29	2.19	2.05	2.49	2.53	3.81	3.73	2.31	2.22	1.56	1.13	3.22	3.70
10	2.67	2.61	2.85	2.64	2.74	3.01	3.99	4.07	2.08	1.98	1.36	2.05	3.29	3.38
11	2.70	2.43	2.59	2.23	2.87	2.28	2.91	2.32	2.24	2.47	1.62	1.48	3.51	3.20
12	2.23	2.24	2.74	2.59	2.36	2.19	2.46	4.01	1.95	1.94	1.14	1.55	2.75	3.02
2003. 1	2.63	2.71	3.58	2.89	3.34	2.98	2.15	2.79	2.21	2.07	2.51	2.56	4.15	3.77
2	2.50	2.83	3.32	3.21	3.01	2.64	3.12	2.87	2.06	2.36	2.35	2.30	3.61	3.54
3	3.16	3.23	3.15	3.43	2.69	3.23	4.30	3.09	2.56	2.31	2.14	2.55	3.27	4.20
4	2.69	2.66	3.18	3.40	3.12	3.46	3.23	3.44	2.42	2.25	2.64	2.02	3.32	3.27
5	2.22	2.70	3.01	2.89	2.03	2.95	2.73	3.43	1.74	3.03	1.69	2.12	3.36	3.33
6	2.34	2.64	1.92	1.91	2.55	2.54	2.53	2.90	1.82	2.22	1.20	1.30	3.90	3.32

주 :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7~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1999~2001년 6차 산업분류, 2002년 8차 산업분류.
1999~2001년 도소매→도소매 및 자동차용품 수리업, 2002→도소매 및 소매.
3) 도소매 및 자동차용품 수리 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1> 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

(단위 : 천원/월)

	전 산 업					제 조 업				
	임금총액				실질임금	임금총액				실질임금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97	1,463	1,012	118	333	1,622	1,326	893	155	278	1,470
1998	1,427	1,050	100	276	1,471	1,284	920	130	234	1,324
1999	1,544	1,102	117	325	1,578	1,443	963	179	301	1,476
2000	1,668	1,182	133	352	1,668	1,568	1,024	205	338	1,568
2001	1,752	1,257	131	365	1,683	1,659	1,095	204	361	1,594
2002	1,948	1,408	126	413	1,822	1,857	1,266	197	395	1,737
2000. 2/4	1,610	1,170	135	304	1,624	1,505	1,012	206	287	1,518
3/4	1,721	1,199	139	383	1,712	1,637	1,046	219	371	1,628
4/4	1,744	1,217	138	389	1,725	1,655	1,050	212	394	1,637
2001. 1/4	1,718	1,225	127	365	1,669	1,625	1,064	197	364	1,579
2/4	1,675	1,246	130	299	1,609	1,579	1,081	203	295	1,517
3/4	1,793	1,268	132	394	1,713	1,706	1,110	205	391	1,630
4/4	1,825	1,289	135	401	1,746	1,728	1,125	210	393	1,654
2002. 1/4	1,862	1,371	117	374	1,765	1,744	1,218	183	342	1,653
2/4	1,860	1,396	127	338	1,740	1,747	1,250	200	297	1,634
3/4	1,994	1,415	127	452	1,856	1,909	1,273	199	437	1,778
4/4	2,076	1,453	133	490	1,924	2,028	1,321	206	501	1,879
2003. 1/4	2,102	1,494	128	481	1,915	1,984	1,336	195	452	1,807
2/4	2,014	1,513	135	366	1,822	1,873	1,348	206	319	1,695
2001. 6	1,825	1,253	133	439	1,750	1,734	1,080	207	447	1,663
7	1,738	1,267	132	340	1,663	1,628	1,100	202	326	1,558
8	1,700	1,265	131	304	1,621	1,663	1,114	205	344	1,585
9	1,942	1,272	132	537	1,853	1,829	1,118	205	503	1,745
10	1,670	1,267	139	264	1,594	1,592	1,110	218	263	1,519
11	1,590	1,270	134	186	1,526	1,447	1,113	210	123	1,388
12	2,215	1,329	132	754	2,122	2,148	1,153	201	795	2,057
2002. 1	1,763	1,379	116	268	1,679	1,638	1,224	179	235	1,560
2	2,017	1,345	111	560	1,912	1,939	1,187	170	582	1,838
3	1,805	1,388	124	294	1,701	1,655	1,244	200	211	1,560
4	1,862	1,384	126	352	1,745	1,742	1,236	199	307	1,633
5	1,712	1,400	127	184	1,599	1,602	1,256	203	143	1,496
6	2,006	1,403	127	476	1,874	1,897	1,257	198	442	1,773
7	1,939	1,413	128	398	1,817	1,875	1,267	200	408	1,757
8	1,901	1,410	128	364	1,770	1,826	1,268	201	356	1,700
9	2,141	1,421	127	593	1,983	2,026	1,284	195	547	1,876
10	1,884	1,428	134	322	1,750	1,837	1,303	210	324	1,706
11	1,778	1,425	130	223	1,650	1,607	1,282	202	123	1,491
12	2,563	1,505	135	923	2,367	2,637	1,377	205	1,055	2,435
2003. 1	2,384	1,502	128	754	2,187	2,315	1,348	198	769	2,124
2	1,962	1,467	124	371	1,790	1,831	1,294	187	351	1,671
3	1,962	1,514	131	317	1,769	1,808	1,369	201	237	1,630
4	2,012	1,503	131	379	1,818	1,882	1,341	201	340	1,700
5	1,866	1,519	138	209	1,689	1,713	1,354	213	146	1,550
6	2,168	1,520	137	511	1,967	2,033	1,356	205	472	1,844

주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996～1998년은 1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표 32> 산업별 임금총액 추이

	전산업		광 업		제 조 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자동차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1997	1,463	333	1,535	310	1,326	278	2,079	638	1,624	275	1,427	300	1,202	251
1998	1,427	276	1,525	266	1,284	234	2,022	483	1,502	166	1,397	254	1,178	223
1999	1,544	325	1,563	274	1,443	301	2,304	565	1,576	245	1,426	260	1,052	123
2000	1,668	352	1,679	313	1,568	338	2,458	536	1,701	274	1,548	284	1,106	121
2001	1,752	365	1,745	309	1,659	361	2,835	715	1,687	221	1,725	331	1,174	129
2002	1,948	413	1,938	371	1,857	395	3,206	822	1,859	251	1,888	356	1,364	224
1999. 2/4	1,479	264	1,525	250	1,385	242	2,318	570	1,484	167	1,359	186	996	97
3/4	1,583	368	1,665	352	1,474	334	2,101	414	1,666	337	1,464	294	1,110	159
4/4	1,644	383	1,658	320	1,567	380	2,595	834	1,627	245	1,528	332	1,072	125
2000. 1/4	1,594	333	1,542	246	1,470	298	2,290	421	1,670	293	1,429	229	1,068	126
2/4	1,610	304	1,624	265	1,505	287	2,348	477	1,579	164	1,475	214	1,094	102
3/4	1,721	383	1,790	408	1,637	371	2,579	649	1,791	349	1,630	343	1,135	137
4/4	1,744	389	1,765	333	1,655	394	2,615	598	1,764	288	1,657	350	1,129	119
2001. 1/4	1,718	365	1,587	204	1,625	364	2,744	676	1,632	206	1,644	288	1,138	134
2/4	1,675	299	1,747	325	1,579	295	2,660	624	1,632	174	1,644	247	1,148	107
3/4	1,793	394	1,837	375	1,706	391	2,709	612	1,772	281	1,751	343	1,212	153
4/4	1,825	401	1,812	334	1,728	393	3,230	951	1,716	224	1,863	447	1,200	124
2002. 1/4	1,862	374	1,825	309	1,744	342	2,938	646	1,794	239	1,826	323	1,299	188
2/4	1,860	338	1,883	321	1,747	297	2,845	535	1,772	182	1,819	290	1,337	205
3/4	1,994	452	1,990	421	1,909	437	3,401	1,032	1,932	310	1,925	386	1,385	237
4/4	2,076	490	2,057	437	2,028	501	3,636	1,074	1,937	274	1,983	427	1,436	266
2003. 1/4	2,102	481	2,112	446	1,984	452	3,527	814	2,058	340	2,064	417	1,409	197
2/4	2,014	366	2,161	467	1,873	319	3,488	759	1,937	173	1,985	326	1,415	192
2001. 6	1,825	439	2,058	605	1,734	447	3,281	1,207	1,740	267	1,785	390	1,177	134
7	1,738	340	1,580	119	1,628	326	2,230	128	1,741	251	1,731	321	1,212	146
8	1,700	304	1,830	365	1,663	344	2,304	193	1,581	86	1,602	193	1,164	112
9	1,942	537	2,105	643	1,829	503	3,594	1,515	1,994	506	1,921	515	1,260	200
10	1,607	264	1,617	164	1,592	264	2,369	229	1,555	74	1,644	238	1,213	144
11	1,590	186	1,631	157	1,447	123	2,774	533	1,633	149	1,569	174	1,136	65
12	2,215	754	2,188	683	2,148	795	4,548	2,090	1,958	448	2,377	931	1,250	161
2002. 1	1,763	268	1,628	85	1,638	235	2,479	148	1,762	195	1,686	181	1,264	141
2	2,017	560	1,841	416	1,939	582	2,946	629	1,877	356	1,983	493	1,381	284
3	1,805	294	2,006	428	1,655	211	3,388	1,162	1,743	165	1,810	296	1,253	140
4	1,862	352	1,689	133	1,742	307	2,696	418	1,790	207	1,800	280	1,366	239
5	1,712	184	1,761	161	1,602	143	2,473	169	1,675	88	1,666	131	1,236	103
6	2,006	476	2,203	672	1,897	442	3,364	1,018	1,852	252	1,993	460	1,409	273
7	1,939	398	1,779	211	1,875	408	2,915	574	1,867	258	1,842	299	1,355	215
8	1,901	364	1,928	349	1,826	356	2,669	341	1,796	177	1,826	297	1,399	253
9	2,141	593	2,264	704	2,026	547	4,615	2,176	2,133	496	2,106	562	1,400	243
10	1,884	322	1,822	205	1,837	324	2,846	396	1,760	112	1,838	300	1,414	253
11	1,778	223	1,771	173	1,607	123	2,718	211	1,768	125	1,690	148	1,345	173
12	2,563	923	2,578	934	2,637	1,055	5,348	2,618	2,282	585	2,418	830	1,548	373
2003. 1	2,384	754	2,159	473	2,315	769	3,312	650	2,312	591	2,247	571	1,458	230
2	1,962	371	1,957	348	1,831	351	3,307	539	1,947	264	1,989	373	1,448	242
3	1,962	317	2,212	517	1,808	237	3,956	1,250	1,918	166	1,960	309	1,312	118
4	2,012	379	1,896	218	1,882	340	3,155	432	1,925	174	2,012	367	1,440	222
5	1,866	209	1,894	203	1,713	146	2,847	135	1,826	78	1,816	143	1,312	84
6	2,168	511	2,683	975	2,033	472	4,459	1,708	2,061	266	2,140	469	1,502	271

주 · 자료 : <표 31>과 동일.

(단위 : 천원/월)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임금 총액	특별 급여
1997	1,398	292	2,054	678	1,362	298	2,202	665	1,462	347	1,820	452
1998	1,351	222	1,967	550	1,329	240	2,190	607	1,484	316	1,765	364
1999	1,555	309	2,185	713	1,404	238	1,831	373	1,531	278	1,575	314
2000	1,744	352	2,396	777	1,495	247	1,932	381	1,581	258	1,756	380
2001	1,777	319	2,592	851	1,550	238	1,948	364	1,708	310	1,772	338
2002	1,926	389	2,941	1,022	1,753	249	2,393	540	1,824	390	1,869	383
1999. 2/4	1,556	320	2,010	552	1,324	186	1,759	298	1,523	258	1,549	277
3/4	1,537	304	2,264	845	1,464	282	1,931	453	1,536	286	1,609	365
4/4	1,641	352	2,350	776	1,504	310	1,803	328	1,514	272	1,650	385
2000. 1/4	1,632	294	2,491	937	1,421	222	1,887	379	1,543	239	1,653	329
2/4	1,781	398	2,215	634	1,453	205	1,905	365	1,611	249	1,732	384
3/4	1,759	351	2,428	804	1,528	272	1,970	393	1,573	273	1,768	356
4/4	1,799	363	2,452	734	1,575	287	1,967	386	1,596	273	1,868	452
2001. 1/4	1,686	265	2,694	971	1,532	249	1,929	390	1,664	292	1,718	319
2/4	1,781	338	2,336	630	1,495	184	1,902	318	1,666	263	1,722	294
3/4	1,794	337	2,649	905	1,568	249	1,995	400	1,795	396	1,783	346
4/4	1,851	338	2,691	898	1,606	269	1,965	349	1,706	287	1,867	391
2002. 1/4	1,764	305	3,026	1,132	1,699	226	2,309	472	1,766	346	1,760	310
2/4	1,930	412	2,720	827	1,727	219	2,312	467	1,766	359	1,786	315
3/4	1,959	402	2,936	1,045	1,764	256	2,527	663	1,874	421	1,918	428
4/4	2,051	438	3,080	1,087	1,823	295	2,421	557	1,891	436	2,011	479
2003. 1/4	2,040	426	3,520	1,391	1,817	259	2,539	651	1,888	379	1,977	398
2/4	2,115	460	3,050	899	1,811	235	2,471	539	1,877	335	1,956	350
2001. 6	1,904	448	2,598	876	1,621	309	1,985	334	1,788	319	1,888	477
7	1,646	163	2,776	1,071	1,530	213	1,986	395	1,707	281	1,726	294
8	1,846	407	2,258	522	1,470	151	1,881	305	1,740	381	1,674	246
9	1,887	441	2,913	1,176	1,704	382	2,118	500	1,939	527	1,949	499
10	1,756	283	2,382	666	1,429	120	1,881	292	1,671	189	1,717	272
11	1,700	221	2,234	496	1,423	108	1,985	384	1,587	207	1,693	230
12	2,096	511	3,461	1,537	1,964	579	2,030	370	1,860	466	2,191	670
2002. 1	1,667	231	2,894	924	1,619	148	2,368	502	1,650	212	1,637	185
2	1,943	490	3,335	1,479	1,763	297	2,200	438	1,943	538	1,920	485
3	1,682	195	2,850	991	1,716	232	2,358	476	1,706	288	1,724	260
4	2,008	511	2,783	918	1,725	223	2,287	440	1,732	334	1,760	294
5	1,654	136	2,465	559	1,650	142	2,304	459	1,624	219	1,637	167
6	2,128	589	2,913	1,005	1,806	292	2,346	504	1,943	524	1,961	485
7	1,745	189	2,990	1,092	1,702	193	2,557	670	1,789	341	1,913	420
8	2,088	533	2,583	700	1,722	215	2,315	466	1,831	390	1,768	287
9	2,045	486	3,236	1,341	1,868	360	2,707	853	2,003	531	2,075	578
10	1,844	275	2,586	701	1,685	174	2,320	471	1,796	340	1,831	327
11	2,014	449	2,672	732	1,639	124	2,416	547	1,674	227	1,705	214
12	2,295	590	3,983	1,830	2,144	588	2,527	655	2,204	742	2,499	896
2003. 1	2,093	507	4,529	2,366	1,904	350	2,961	1,077	1,989	470	2,172	593
2	2,144	540	2,882	783	1,723	172	2,191	315	1,889	393	1,915	345
3	1,882	229	3,155	1,025	1,831	255	2,434	554	1,771	270	1,850	257
4	2,245	591	2,932	835	1,784	213	2,424	505	1,861	338	1,919	332
5	1,816	142	2,959	782	1,728	152	2,487	552	1,781	237	1,802	191
6	2,302	651	3,257	1,080	1,915	339	2,502	559	1,978	427	2,153	527

<표 33> 사업체 규모별 임금추이(비농 전산업)

	중소규모		5~9인		10~29인		30~99인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1997	1,344	260	-	-	1,283	209	1,342	262
1998	1,310	209	-	-	1,255	174	1,307	207
1999	1,401	244	1,192	138	1,376	241	1,439	253
2000	1,530	274	1,274	152	1,497	266	1,567	267
2001	1,615	281	1,344	153	1,606	278	1,680	294
2002	1,775	325	1,466	178	1,705	290	1,856	356
1999. 2/4	1,330	183	1,140	94	1,313	172	1,340	176
3/4	1,453	298	1,228	180	1,430	304	1,500	309
4/4	1,467	274	1,216	146	1,425	264	1,522	286
2000. 1/4	1,472	268	1,243	151	1,480	289	1,498	260
2/4	1,481	233	1,242	113	1,422	201	1,516	231
3/4	1,582	310	1,317	194	1,560	318	1,624	296
4/4	1,582	285	1,292	149	1,524	256	1,630	282
2001. 1/4	1,577	280	1,321	158	1,600	309	1,622	277
2/4	1,545	223	1,294	109	1,510	195	1,605	232
3/4	1,662	314	1,391	191	1,667	319	1,737	331
4/4	1,677	308	1,370	156	1,648	289	1,757	338
2002. 1/4	1,711	301	1,437	173	1,679	293	1,794	335
2/4	1,709	282	1,421	149	1,654	258	1,789	310
3/4	1,826	368	1,519	227	1,745	325	1,919	410
4/4	1,855	367	1,503	187	1,767	321	1,925	394
2003. 1/4	1,865	351	1,509	175	1,787	311	1,965	409
2/4	1,827	278	1,479	118	1,728	221	1,910	314
2001. 6	1,654	323	1,341	151	1,596	279	1,744	345
7	1,630	282	1,375	176	1,650	304	1,708	301
8	1,558	211	1,289	92	1,533	182	1,606	204
9	1,799	449	1,507	305	1,820	423	1,896	488
10	1,554	205	1,290	89	1,530	186	1,600	202
11	1,497	145	1,278	71	1,503	156	1,540	141
12	1,981	573	1,542	308	1,912	525	2,133	675
2002. 1	1,649	229	1,406	142	1,583	184	1,771	302
2	1,811	426	1,488	236	1,807	440	1,856	431
3	1,674	249	1,418	140	1,646	255	1,755	272
4	1,702	270	1,383	113	1,605	207	1,792	301
5	1,602	153	1,365	83	1,540	132	1,668	162
6	1,815	364	1,468	180	1,741	331	1,890	390
7	1,792	329	1,491	198	1,717	297	1,881	360
8	1,714	261	1,419	134	1,613	196	1,802	301
9	1,974	516	1,645	349	1,905	482	2,073	569
10	1,695	228	1,411	111	1,615	191	1,739	225
11	1,670	202	1,389	79	1,604	171	1,739	231
12	2,198	671	1,709	369	2,082	602	2,297	724
2003. 1	2,067	548	1,648	312	1,939	462	2,252	694
2	1,734	242	1,424	97	1,677	216	1,761	227
3	1,793	263	1,455	116	1,748	255	1,884	307
4	1,813	277	1,450	103	1,695	199	1,880	299
5	1,737	183	1,441	81	1,687	173	1,827	211
6	1,931	376	1,547	171	1,800	291	2,037	434

주・자료 : <표 31>과 동일.

(단위 : 천원/월)

	100~299인		대규모		300~499인		500인 이상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임금총액	특별급여
1997	1,418	317	1,739	500	1,619	419	1,774	524
1998	1,382	252	1,720	446	1,570	338	1,765	480
1999	1,561	327	1,973	567	1,794	456	2,019	595
2000	1,713	385	2,147	624	1,973	516	2,195	655
2001	1,785	384	2,276	683	2,135	564	2,313	714
2002	2,067	476	2,629	761	2,357	597	2,718	815
1999. 2/4	1,503	282	1,921	506	1,742	417	1,966	529
3/4	1,610	375	1,974	578	1,837	494	2,008	599
4/4	1,662	379	2,185	719	1,927	533	2,251	767
2000. 1/4	1,598	340	2,018	558	1,877	477	2,059	581
2/4	1,689	367	2,057	551	1,879	446	2,107	581
3/4	1,751	405	2,202	636	2,007	542	2,255	663
4/4	1,812	428	2,306	750	2,130	600	2,354	791
2001. 1/4	1,711	353	2,253	689	2,069	561	2,301	722
2/4	1,739	356	2,176	591	2,068	505	2,205	613
3/4	1,800	395	2,291	697	2,164	583	2,324	727
4/4	1,893	433	2,387	756	2,243	607	2,424	794
2002. 1/4	1,908	390	2,454	661	2,194	502	2,538	713
2/4	1,958	407	2,460	647	2,233	521	2,534	688
3/4	2,119	513	2,652	780	2,384	608	2,739	835
4/4	2,233	578	2,946	971	2,577	739	3,065	1,047
2003. 1/4	2,150	483	2,936	936	2,394	564	3,123	1,063
2/4	2,160	453	2,666	672	2,380	534	2,763	719
2001. 6	1,898	518	2,481	880	2,274	713	2,534	923
7	1,724	319	2,150	562	1,979	408	2,194	601
8	1,775	374	2,240	658	2,108	528	2,274	692
9	1,902	493	2,483	872	2,406	814	2,503	887
10	1,769	346	2,112	488	1,980	372	2,146	518
11	1,631	205	1,945	340	2,055	456	1,916	310
12	2,279	749	3,107	1,444	2,695	995	3,213	1,560
2002. 1	1,810	277	2,210	423	2,080	359	2,253	445
2	2,066	583	2,828	1,088	2,434	793	2,957	1,185
3	1,849	310	2,322	472	2,069	356	2,405	510
4	2,032	474	2,496	679	2,325	613	2,551	701
5	1,834	243	2,145	307	2,019	209	2,186	312
6	2,157	559	2,757	914	2,469	718	2,850	978
7	2,072	460	2,518	672	2,280	519	2,594	722
8	2,029	427	2,638	768	2,365	585	2,726	828
9	2,257	652	2,802	898	2,507	721	2,897	956
10	2,034	406	2,629	691	2,355	554	2,718	735
11	1,949	330	2,205	307	2,200	393	2,206	279
12	2,715	999	4,004	1,917	3,175	1,270	4,274	2,127
2003. 1	2,363	678	3,501	1,477	2,671	785	3,786	1,715
2	2,061	427	2,753	825	2,351	577	2,892	910
3	2,027	344	2,556	506	2,161	331	2,689	566
4	2,204	510	2,714	736	2,448	619	2,802	776
5	1,966	251	2,300	299	2,111	261	2,366	313
6	2,322	600	2,983	980	2,589	725	3,119	1,068

<표 34> 성별 · 내역별 임금 추이

(단위 : 천원/월)

	남 자				여 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97	1,635	1,124	136	375	1,015	721	73	221
1998	1,579	1,157	115	307	1,006	755	61	191
1999	1,735	1,226	136	373	1,090	808	72	210
2000	1,885	1,320	156	408	1,178	870	81	227
2001	1,976	1,400	156	420	1,257	940	75	242
2002	2,193	1,574	148	472	1,393	1,035	76	282
1999. 2/4	1,661	1,218	138	305	1,042	804	74	165
3/4	1,779	1,221	137	421	1,116	801	72	243
4/4	1,858	1,264	146	448	1,141	832	78	231
2000. 1/4	1,801	1,274	141	386	1,123	836	75	212
2/4	1,818	1,306	159	353	1,139	864	81	194
3/4	1,947	1,341	162	443	1,213	880	85	249
4/4	1,971	1,358	162	450	1,236	901	83	252
2001. 1/4	1,940	1,367	151	423	1,227	912	76	239
2/4	1,890	1,387	157	346	1,200	934	72	194
3/4	2,014	1,409	158	448	1,302	953	74	274
4/4	2,060	1,436	161	464	1,300	961	78	261
2002. 1/4	2,088	1,528	137	423	1,344	1,012	71	262
2/4	2,091	1,558	149	384	1,337	1,027	77	233
3/4	2,242	1,581	149	512	1,435	1,040	78	317
4/4	2,352	1,627	157	568	1,455	1,061	79	314
2003. 1/4	2,376	1,674	150	552	1,487	1,090	77	320
2/4	2,274	1,694	159	421	1,430	1,107	80	243
2001. 6	2,061	1,391	159	511	1,301	947	75	279
7	1,944	1,407	159	379	1,281	955	72	254
8	1,914	1,406	156	351	1,224	950	75	200
9	2,185	1,414	158	614	1,401	956	76	368
10	1,876	1,408	164	304	1,212	955	82	175
11	1,785	1,414	160	211	1,156	950	77	129
12	2,521	1,486	158	877	1,533	977	75	481
2002. 1	1,974	1,537	136	301	1,281	1,019	70	192
2	2,268	1,500	130	638	1,445	992	69	384
3	2,024	1,548	145	331	1,307	1,024	74	209
4	2,096	1,544	147	405	1,331	1,023	76	233
5	1,922	1,564	150	208	1,237	1,030	77	130
6	2,255	1,568	149	538	1,441	1,029	77	335
7	2,174	1,578	150	447	1,409	1,042	78	289
8	2,148	1,576	150	422	1,345	1,035	77	233
9	2,404	1,589	149	666	1,551	1,044	78	429
10	2,129	1,598	158	373	1,337	1,047	82	208
11	1,997	1,592	154	251	1,289	1,050	77	162
12	2,931	1,691	160	1,079	1,739	1,087	79	573
2003. 1	2,684	1,683	151	849	1,711	1,095	77	539
2	2,226	1,642	146	438	1,369	1,073	75	221
3	2,220	1,697	154	369	1,381	1,101	80	200
4	2,278	1,683	154	440	1,418	1,099	78	242
5	2,100	1,701	162	236	1,342	1,111	83	149
6	2,450	1,701	162	587	1,534	1,114	80	341

주 · 자료 : <표 31>과 동일.

<표 35> 최저임금제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 원)

	시간급	일급(8시간기준)	최저임금(월환산액)	인 상 률
1988	1그룹 : 462.5	3,700	111,000 (240시간 기준)	-
	2그룹 : 487.5	3,900	117,000 (240시간 기준)	-
1989	600	4,800	144,000 (240시간 기준)	-
1990	690	5,520	165,600 (240시간 기준)	15.0
1991	820	6,560	192,700 (235시간 기준)	18.8
1992	925	7,400	209,050 (226시간 기준)	12.8
1993	1,005	8,040	227,130 (226시간 기준)	8.6
1994. 1월~1994. 8월	1,085	8,680	245,210 (226시간 기준)	8.0
1994. 9월~1995. 8월	1,170	9,360	264,420 (226시간 기준)	7.8
1995. 9월~1996. 8월	1,275	10,200	288,150 (226시간 기준)	9.0
1996. 9월~1997. 8월	1,400	11,200	316,400 (226시간 기준)	9.8
1997. 9월~1998. 8월	1,485	11,880	335,610 (226시간 기준)	6.1
1998. 9월~1999. 8월	1,525	12,200	344,650 (226시간 기준)	2.7
1999. 9월~2000. 8월	1,600	12,800	361,600 (226시간 기준)	4.9
2000. 9월~2001. 8월	1,865	14,920	421,490 (226시간 기준)	16.5
2001. 9월~2002. 8월	2,100	16,800	474,600 (226시간 기준)	12.6
2002. 9월~2003. 8월	2,275	18,200	514,150 (226시간 기준)	8.3
2003. 9월~2004. 8월	2,510	20,080	567,260 (226시간 기준)	10.3

주 : 1) 1988년의 1그룹과 2그룹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1그룹 : 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 신발, 나무, 종이, 고무, 플라스틱, 도기, 자기, 전기기기, 기타 제조업의 12업종.
2그룹 : 1그룹 외의 제조업 19업종.
2) 최초 실시연도인 1988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10인 이상의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1989년에는 10인 이상의 건설업 및 광업이 추가됨. 1990년부터 10인 이상 전산업으로 1999년부터는 5인 이상 전산업으로 그리고 2000년부터는 1인 이상 전산업으로 확대하여 적용됨.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편람』.

<표 36> 최저임금제 적용사업장 및 수혜근로자 추이

	적용업종	적용대상근로자 (천명)	수혜근로자 (천명)	영향률 (%)
1988	10인 이상 제조업	2,267	94	4.2
1989	10인 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3,053	328	10.7
1990	10인 이상 전산업	4,386	187	4.3
1991	10인 이상 전산업	4,556	393	8.6
1992	10인 이상 전산업	4,620	392	8.5
1993	10인 이상 전산업	5,045	228	4.5
1994.1.~1994.8.	10인 이상 전산업	4,916	102	2.1
1994.9.~1995.8.	10인 이상 전산업	4,864	103	2.1
1995.9.~1996.8.	10인 이상 전산업	5,381	103	1.9
1996.9.~1997.8.	10인 이상 전산업	5,240	127	2.4
1997.9.~1998.8.	10인 이상 전산업	5,325	124	2.3
1998.9.~1999.8.	10인 이상 전산업	5,136	23	0.4
1999.9.~2000.8.	5인 이상 전산업	5,031	54	1.1
2000.9.~2001.8.	5인 이상 전산업 (~2000. 11. 23)	5,367	98	1.8
	1인 이상 전산업 (2000. 11. 24~)	6,692	141	2.1
2001.9.~2002.8.	1인 이상 전산업	7,152	201	2.8
2002.9.~2003.8.	1인 이상 전산업	상용 : 7,421 전체 : 13,216	상용 : 215 전체 : 849	상용 : 2.9 전체 : 6.4
2003.9.~2004.8.	1인 이상 전산업	상용 : 7,971 전체 : 13,631	상용 : 342 전체 : 1,035	상용 : 4.3 전체 : 7.6

주 : 1) 영향률=수혜근로자÷적용대상근로자수×100
2) 2002. 8까지는 노동부기준 상용근로자 수치임.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편람』.

<표 37>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단위 : 천원,%)

	소 득		근로소득		가계지출	
	액 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 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 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996	2,153	12.6	1,838	11.9	1,603	13.7
1997	2,287	6.3	1,939	5.5	1,677	4.6
1998	2,133	-6.7	1,816	-6.4	1,536	-8.4
1999	2,225	4.3	1,873	3.2	1,731	12.6
2000	2,387	7.3	2,008	7.2	1,888	9.1
2001	2,625	10.0	2,211	10.1	2,058	9.0
2002	2,792	6.4	2,380	7.7	2,136	3.8
1998. 1/4	2,232	-2.8	1,921	-0.1	1,584	-7.1
2/4	2,095	-5.3	1,744	-6.8	1,465	-10.7
3/4	2,072	-14.4	1,798	-12.8	1,463	-13.9
4/4	2,134	-3.8	1,798	-5.3	1,633	-1.9
1999. 1/4	2,222	-0.5	1,816	-5.5	1,725	8.9
2/4	2,102	0.4	1,772	1.6	1,662	13.5
3/4	2,248	8.5	1,974	9.8	1,711	17.0
4/4	2,327	9.1	1,932	7.4	1,823	11.7
2000. 1/4	2,349	5.7	1,943	7.0	1,919	11.2
2/4	2,331	10.9	1,953	10.2	1,841	10.7
3/4	2,443	8.6	2,087	5.7	1,872	9.4
4/4	2,425	4.2	2,051	6.2	1,921	5.4
2001. 1/4	2,580	9.8	2,150	10.7	2,060	7.4
2/4	2,476	6.2	2,106	7.8	1,974	7.3
3/4	2,735	12.0	2,297	10.0	2,079	11.0
4/4	2,710	11.8	2,290	11.6	2,117	10.2
2002. 1/4	2,788	8.1	2,317	7.8	2,201	6.8
2/4	2,714	9.6	2,305	9.5	2,084	5.6
3/4	2,863	4.7	2,457	7.0	2,153	3.6
4/4	2,804	3.5	2,439	6.5	2,106	-0.5
2003. 1/4	2,908	4.3	2,541	9.6	2,300	4.5
2/4	2,828	4.2	2,497	8.3	2,235	7.2

주 :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인 이상 가구 중 근로자가구 평균임.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호.

<표 38>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가계지출

(단위 : 천원,%)

	평균		2인		3인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997	1,677	4.6	1,293	1.6	1,574	8.1
1998	1,536	-8.4	1,177	-9.0	1,411	-10.4
1999	1,731	12.6	1,339	13.7	1,566	11.0
2000	1,888	9.1	1,437	7.3	1,684	7.5
2001	2,058	9.0	1,553	8.1	1,874	11.3
2002	2,136	3.8	1,660	6.9	2,012	7.3
1999. 2/4	1,662	13.5	1,311	12.9	1,503	11.4
3/4	1,711	17.0	1,308	16.9	1,548	13.6
4/4	1,823	11.7	1,415	15.9	1,662	10.2
2000. 1/4	1,919	11.2	1,438	8.7	1,710	10.2
2/4	1,841	10.7	1,433	9.3	1,586	5.5
3/4	1,872	9.4	1,413	8.0	1,672	8.0
4/4	1,921	5.4	1,464	3.5	1,767	6.3
2001. 1/4	2,060	7.4	1,493	3.8	1,865	9.1
2/4	1,974	7.3	1,462	2.0	1,789	12.8
3/4	2,079	11.0	1,625	15.0	1,884	12.7
4/4	2,117	10.2	1,633	11.5	1,959	10.9
2002. 1/4	2,201	6.8	1,720	15.2	2,043	9.5
2/4	2,084	5.6	1,613	10.4	1,967	9.9
3/4	2,153	3.6	1,684	3.6	2,034	8.0
4/4	2,106	-0.5	1,623	-0.6	2,004	2.3
2003. 1/4	2,300	4.5	1,674	-2.7	2,178	6.6
2/4	2,235	7.2	1,709	6.0	2,132	8.4

	4인		5인		6인 이상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액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997	1,762	4.0	2,013	8.4	2,046	-2.1
1998	1,617	-8.2	1,825	-9.3	2,142	4.7
1999	1,873	15.8	2,055	12.6	2,181	1.8
2000	2,080	11.0	2,304	12.1	2,458	12.7
2001	2,245	7.9	2,581	12.0	2,752	11.9
2002	2,315	3.1	2,652	2.7	2,714	-1.3
1999. 2/4	1,797	17.8	1,969	14.8	1,979	-6.5
3/4	1,855	21.3	2,041	17.9	2,171	5.4
4/4	1,969	13.3	2,157	9.5	2,389	12.4
2000. 1/4	2,081	11.2	2,428	18.3	2,430	11.3
2/4	2,027	12.8	2,235	13.5	2,795	41.2
3/4	2,090	12.7	2,273	11.4	2,273	4.7
4/4	2,120	7.7	2,278	5.6	2,335	-2.3
2001. 1/4	2,263	8.7	2,617	7.8	2,714	11.7
2/4	2,207	8.9	2,379	6.5	2,588	-7.4
3/4	2,252	7.7	2,595	14.2	2,808	23.5
4/4	2,258	6.5	2,732	19.9	2,896	24.0
2002. 1/4	2,361	4.3	2,801	7.0	2,901	6.9
2/4	2,263	2.5	2,648	11.3	2,516	-2.8
3/4	2,329	3.4	2,678	3.2	2,713	-3.4
4/4	2,310	2.3	2,479	-9.2	2,728	-5.8
2003. 1/4	2,534	7.4	2,657	-5.1	2,716	-6.4
2/4	2,437	7.7	2,524	-4.7	2,754	9.5

주 · 자료 : <표 37>과 동일.

<표 39> 노동생산성 및 노임단가지수 추이(제조업)

(단위 : 1995,2000=100)

	물적노동생산성		불변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단위노동비용지수	단위노동비용지수 (달러)
	전체종사원	상용근로자 기준	전체종사원 기준	상용근로자 기준	상용근로자 기준
1996	113.2	113.4	111.3	100.6	141.4
1997	127.6	128.5	125.7	94.5	112.3
1998	145.7	146.0	141.6	83.7	67.5
1999	92.3	91.6	92.8	99.2	94.3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1	97.9	99.3	99.2	108.8	95.3
2002	105.8	107.5	106.3	113.8	102.9
1996. 1/4	108.3	108.2	107.7	99.7	144.0
2/4	113.5	113.5	112.1	93.1	133.9
3/4	112.6	112.9	111.4	109.0	150.8
4/4	118.5	119.2	114.6	100.8	137.1
1997. 1/4	119.5	120.4	119.3	100.6	130.7
2/4	127.6	128.6	126.2	90.7	115.1
3/4	129.9	130.7	127.5	100.1	125.9
4/4	133.9	134.5	129.1	87.4	86.4
1998. 1/4	137.5	138.1	136.4	90.3	63.6
2/4	139.5	139.7	139.6	83.6	67.8
3/4	142.5	142.7	139.3	83.4	71.1
4/4	163.4	163.6	150.3	78.2	69.1
1999. 1/4	87.9	87.0	88.9	102.0	96.4
2/4	89.8	89.1	92.5	96.5	91.7
3/4	91.7	91.3	93.6	102.3	96.8
4/4	98.6	98.1	95.8	96.7	93.3
2000. 1/4	98.0	98.0	95.3	95.7	96.2
2/4	100.7	100.7	101.3	95.6	96.9
3/4	101.6	101.3	104.4	104.7	106.2
4/4	100.0	99.9	98.7	103.8	100.6
2001. 1/4	95.0	96.5	96.8	110.4	98.2
2/4	97.5	99.1	98.9	102.5	88.8
3/4	97.3	98.7	101.0	112.6	98.4
4/4	101.1	102.8	101.0	109.4	95.7
2002. 1/4	104.0	105.7	103.6	112.6	96.5
2/4	105.1	107.0	105.2	105.6	94.2
3/4	105.0	106.9	107.2	119.6	113.0
4/4	108.7	110.2	108.5	117.3	108.8
2003. 1/4	107.5	108.9	108.7	121.7	114.4

주 : 1) 물적 노동생산성지수 = $\frac{\text{산출량지수(산업생산지수)}}{\text{노동투입량지수(MH)}} \times 100$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 = $\frac{\text{산출량지수(불변GDP)}}{\text{노동투입량지수(MH)}} \times 100$

단위노동비용지수 = $\frac{\text{임금비용지수(MH)}}{\text{노동생산성지수(MH)}} \times 100$

2) 1998년까지는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상용근로자 10인이상의 조사결과로서 1995=100.0기준이며, 1999년 이후는 5인이상, 2000=100.0기준임.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각호.

<표 4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전산업		광 업		제 조 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매및자동차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1997	203.0	23.4	190.8	21.6	207.6	29.3	213.5	30.5	193.4	8.1	194.3	10.3	198.7	16.6
1998	199.2	20.0	190.0	20.6	200.0	23.8	212.6	28.8	192.4	6.8	193.9	9.0	194.6	10.6
1999	206.6	22.6	192.9	21.4	216.0	33.3	195.4	8.0	198.1	9.8	203.1	12.6	203.1	12.6
2000	204.8	23.4	193.6	23.4	213.1	33.3	193.2	8.7	194.2	8.7	204.2	14.5	204.2	14.5
2001	202.4	20.4	191.4	23.2	208.7	29.8	213.2	30.5	192.9	6.2	193.7	8.8	204.3	13.5
2002	199.6	18.0	195.7	23.6	206.4	28.7	207.2	26.2	190.5	5.4	191.7	8.1	200.0	10.3
1999. 2/4	208.7	23.0	195.6	22.7	218.9	33.9	213.7	24.4	198.1	7.7	200.5	10.4	204.3	12.9
3/4	206.0	22.7	193.2	21.8	214.6	33.5	214.9	25.3	194.3	8.4	197.5	9.7	201.6	11.8
4/4	214.0	23.5	202.6	23.5	224.5	35.2	216.2	28.4	202.4	8.0	203.5	8.9	208.5	12.8
2000. 1/4	205.1	23.1	188.8	19.3	213.1	33.0	209.2	27.1	192.9	8.4	194.4	8.5	204.8	15.1
2/4	203.9	24.1	194.4	24.2	212.5	33.9	208.1	29.0	190.7	8.5	193.2	9.2	203.9	14.5
3/4	201.7	23.2	191.8	24.2	209.7	33.3	207.3	27.0	191.2	8.9	191.8	8.7	202.4	14.6
4/4	208.4	23.3	199.7	26.1	217.2	33.0	214.0	27.3	198.0	9.1	197.7	8.6	205.7	13.7
2001. 1/4	198.8	21.4	186.5	21.9	206.0	30.1	204.0	26.5	186.5	5.7	189.3	8.6	198.6	13.0
2/4	203.7	20.4	194.2	23.5	211.2	30.1	213.8	29.5	193.6	6.4	194.9	9.1	206.0	13.7
3/4	204.2	20.0	191.9	23.9	208.8	29.5	219.9	33.0	196.7	6.5	196.5	9.3	207.7	15.6
4/4	203.3	19.8	193.0	23.7	208.9	29.6	215.5	33.3	195.0	6.5	194.3	8.4	205.3	13.8
2002. 1/4	193.6	17.3	186.3	19.9	199.2	27.1	195.9	22.9	184.7	6.1	187.0	8.2	194.3	9.8
2/4	202.2	18.3	203.0	29.3	210.3	29.5	206.6	25.7	192.4	5.0	193.2	8.0	202.3	10.2
3/4	197.6	18.1	191.1	21.5	203.0	28.7	208.3	25.7	189.3	5.1	190.6	8.4	200.0	10.8
4/4	205.0	18.5	202.4	23.7	213.1	29.5	217.8	30.3	195.6	5.2	195.9	7.9	203.4	10.5
2003. 1/4	196.0	17.3	191.6	22.8	203.5	27.6	206.6	26.4	185.4	4.6	187.0	7.5	192.6	8.7
2/4	198.7	17.8	198.5	24.9	207.5	28.3	206.1	25.3	189.6	7.4	189.5	7.5	197.6	8.3
2001. 6	204.5	20.2	193.9	23.6	212.0	30.6	220.0	32.8	195.4	6.7	195.8	9.1	206.9	13.3
7	204.4	20.3	189.9	24.1	209.9	29.7	217.5	33.8	196.7	7.1	196.7	10.0	207.8	13.8
8	204.5	19.8	191.0	24.4	206.0	29.0	222.4	33.4	199.6	6.2	197.7	8.9	210.7	13.6
9	203.6	19.8	194.9	23.1	210.2	29.9	219.8	31.7	193.6	6.0	195.0	8.9	204.5	13.3
10	197.1	20.1	182.2	22.2	202.7	30.1	206.0	33.7	187.1	6.0	187.9	8.8	199.7	13.8
11	210.2	19.8	201.8	24.6	216.7	30.2	221.5	31.3	202.6	6.5	201.2	8.2	209.0	13.0
12	202.4	19.3	194.7	24.2	207.2	28.4	218.8	34.7	195.3	6.9	193.7	8.2	207.0	14.6
2002. 1	206.3	17.4	197.3	17.3	211.5	26.4	207.7	24.3	199.8	6.6	200.0	8.3	207.5	10.5
2	172.6	16.0	165.1	18.8	177.4	24.7	179.6	20.4	162.0	5.4	166.9	7.9	172.9	8.6
3	201.7	18.5	196.5	23.6	208.6	30.1	200.5	24.1	192.5	6.2	194.1	8.6	202.5	10.2
4	203.2	18.5	215.7	39.3	211.8	30.0	204.9	28.0	193.6	5.5	193.9	7.8	201.6	10.0
5	210.1	18.3	206.7	24.4	217.5	29.6	212.2	24.4	200.8	4.6	201.2	8.1	208.3	10.6
6	193.3	18.1	186.6	24.1	201.7	28.8	202.8	24.8	182.9	4.9	184.4	8.1	197.0	10.1
7	203.4	18.4	197.3	21.2	209.8	29.3	209.0	24.8	196.4	5.0	196.7	8.5	203.8	10.5
8	199.9	18.2	192.6	22.1	203.9	29.0	211.8	25.3	193.6	5.2	193.5	8.4	203.3	11.0
9	189.4	17.6	183.3	21.2	195.3	27.8	204.0	27.2	177.8	5.2	181.6	8.4	192.9	10.8
10	207.7	18.9	203.4	23.1	214.8	30.3	211.8	26.5	198.3	5.8	198.5	8.4	205.8	10.8
11	207.0	18.2	206.3	23.5	215.7	29.1	224.5	30.0	198.2	4.8	197.8	7.6	205.1	10.3
12	200.4	18.5	197.6	24.4	208.7	29.1	217.2	34.4	190.3	5.1	191.5	7.7	199.3	10.5
2003. 1	200.0	17.6	194.6	23.2	207.3	28.0	212.9	28.0	189.6	4.4	191.6	7.9	196.3	10.1
2	187.2	16.4	182.0	21.4	194.0	26.0	203.6	27.4	176.5	4.4	178.2	7.1	183.6	7.9
3	200.8	17.9	197.5	23.8	209.5	28.8	202.8	23.8	190.1	5.0	191.4	7.4	196.6	8.1
4	202.7	17.5	201.9	24.6	211.8	28.1	209.9	25.0	192.1	5.0	194.0	7.3	198.0	7.3
5	197.9	18.3	193.7	24.6	206.5	29.3	202.2	25.2	186.5	4.9	189.0	7.8	199.9	9.1
6	196.1	17.7	199.4	25.3	204.9	27.7	206.3	25.6	190.3	12.3	186.5	7.4	196.3	8.5

주 • 자료 : <표 31>과 동일.

(단위 : 시간/월)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전체	초과
1997	210.0	30.5	187.1	5.3	208.1	33.3	183.6	3.5	195.5	11.9	199.5	16.0
1998	207.3	28.6	187.6	4.4	209.2	34.0	185.3	2.9	195.1	10.0	198.5	13.3
1999	215.9	30.4	188.3	6.1	206.2	26.3	192.9	10.5	195.2	9.3	196.6	9.4
2000	213.6	30.5	186.9	5.9	204.8	27.6	196.1	16.8	194.8	9.4	193.2	8.7
2001	212.0	29.7	185.5	4.7	203.7	15.8	190.9	12.5	195.4	9.2	195.8	8.9
2002	206.8	27.6	182.0	5.5	203.6	7.2	182.1	6.0	192.3	8.7	193.2	8.6
1999. 2/4	217.3	30.6	188.6	6.0	207.4	27.7	194.1	9.0	196.3	9.3	198.5	9.9
3/4	216.6	30.8	187.0	5.6	205.8	24.7	194.8	12.4	197.1	11.0	197.4	10.4
4/4	220.5	31.4	198.3	7.8	212.2	25.3	202.3	12.7	200.0	8.5	202.1	8.5
2000. 1/4	213.3	29.7	188.2	5.9	204.5	24.8	202.6	20.6	194.4	9.8	193.3	9.0
2/4	214.3	32.3	185.1	6.8	201.2	27.1	197.4	19.2	195.7	10.9	193.4	9.9
3/4	210.7	29.4	182.7	5.4	203.5	28.3	191.4	15.8	190.6	8.4	190.7	8.1
4/4	216.1	30.5	191.5	5.6	209.8	30.2	192.9	11.7	198.4	8.6	195.5	7.8
2001. 1/4	208.1	29.2	182.9	6.0	199.6	26.2	185.2	10.5	192.6	9.9	190.7	8.0
2/4	212.0	29.3	184.4	3.7	202.4	15.0	193.6	14.0	195.3	8.7	196.6	9.8
3/4	214.5	30.2	188.4	4.2	208.4	12.1	191.9	13.4	197.3	9.0	198.8	9.3
4/4	213.6	30.3	186.6	4.9	204.6	10.3	193.0	12.3	196.6	9.5	197.1	8.8
2002. 1/4	201.7	26.3	179.2	5.0	197.9	7.7	175.8	5.3	186.7	8.8	187.8	8.5
2/4	207.2	27.7	185.2	5.4	204.3	6.9	185.5	6.2	194.6	8.6	194.5	8.8
3/4	206.9	27.8	180.1	5.6	203.1	7.1	179.1	5.7	190.7	8.8	192.5	8.7
4/4	211.5	28.7	183.5	6.1	208.9	7.2	187.8	6.7	197.2	8.8	198.0	8.4
2003. 1/4	202.4	27.0	175.1	4.7	202.1	6.8	179.3	5.9	187.7	7.9	189.6	8.6
2/4	204.6	27.4	175.3	4.9	201.8	7.1	180.7	5.9	189.8	7.5	193.9	9.5
2001. 6	212.5	29.6	185.7	3.9	202.3	10.2	194.8	14.0	191.1	8.4	197.0	9.3
7	214.9	30.5	186.4	4.2	207.4	12.6	191.9	14.1	196.1	8.6	196.9	9.6
8	216.7	30.1	192.3	4.0	211.8	13.1	192.4	13.3	199.9	9.4	202.6	9.3
9	211.8	29.9	186.3	4.4	205.8	12.4	191.1	12.6	195.7	9.0	196.9	8.7
10	208.7	30.3	180.3	4.5	199.1	10.7	187.0	12.6	190.2	10.2	190.9	9.6
11	216.8	29.3	194.3	5.0	210.3	9.7	201.4	12.9	203.5	9.0	203.2	7.2
12	215.1	31.0	185.2	5.1	204.2	10.2	190.5	11.4	195.9	9.2	197.0	8.8
2002. 1	212.0	27.0	192.8	4.8	211.4	9.6	188.1	5.7	201.3	9.3	201.2	8.8
2	185.7	25.4	159.1	5.4	176.6	6.8	154.6	4.8	164.3	8.5	166.4	7.9
3	207.5	26.5	185.7	4.7	205.6	6.8	184.7	5.3	194.5	8.7	195.7	8.7
4	207.0	27.0	187.6	5.4	205.1	6.7	185.7	6.1	195.1	8.4	194.8	8.8
5	213.3	28.1	194.6	5.5	213.0	6.7	196.4	6.4	205.0	8.6	203.3	8.8
6	201.3	28.1	173.5	5.4	194.9	7.2	174.3	5.9	183.8	8.7	185.4	8.7
7	211.5	28.6	184.3	5.5	208.1	7.3	181.3	5.8	196.8	8.6	199.0	8.8
8	210.9	27.9	183.3	5.5	206.5	7.2	182.3	5.7	193.6	8.7	195.8	9.0
9	198.2	27.0	172.7	5.8	194.7	6.7	173.8	5.7	181.8	9.2	182.5	8.4
10	214.8	28.7	188.2	5.9	212.5	7.4	192.2	6.0	200.9	9.2	201.4	9.1
11	210.9	27.5	184.7	6.2	210.3	7.3	190.1	6.9	198.9	8.3	199.5	8.1
12	208.9	29.8	177.5	6.2	204.0	7.1	180.9	7.1	191.8	8.8	193.0	8.1
2003. 1	207.4	27.5	178.1	4.7	205.9	6.7	183.0	5.9	192.6	8.3	193.0	7.9
2	192.6	24.5	169.0	4.9	193.0	6.8	172.3	5.7	179.7	7.7	182.5	9.1
3	207.1	28.9	178.6	4.7	208.2	6.8	180.6	6.0	189.3	7.8	193.8	8.9
4	207.5	27.8	182.0	4.8	205.2	6.7	185.9	6.2	192.4	7.0	196.8	9.2
5	206.9	28.5	172.2	5.2	200.4	7.3	179.2	5.9	189.4	7.7	193.2	10.3
6	200.9	26.2	171.5	4.8	199.3	7.3	176.9	5.7	186.7	7.6	186.7	7.6

<표 4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중소규모		5~9인		10~29인		30~99인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1997	203.4	21.5	-	-	197.3	12.7	204.5	23.8
1998	200.6	19.1	-	-	196.7	12.1	202.1	21.7
1999	206.7	20.7	196.6	8.8	202.4	15.9	209.9	24.7
2000	205.1	21.8	195.1	8.5	200.9	16.8	207.7	25.3
2001	203.1	18.6	194.5	7.0	200.0	14.2	205.1	22.1
2002	200.3	16.0	193.3	5.6	197.0	10.7	202.4	19.2
1999. 2/4	208.4	21.0	198.6	8.8	204.3	16.0	211.4	25.0
3/4	206.2	21.0	196.0	8.8	201.5	16.1	209.2	24.7
4/4	213.9	21.5	203.3	8.9	210.0	16.7	217.2	25.3
2000. 1/4	205.4	21.3	194.9	8.7	200.7	15.8	209.0	25.5
2/4	204.7	22.7	194.9	8.8	199.7	17.1	207.9	27.1
3/4	201.8	21.5	192.0	8.1	198.0	17.0	204.2	24.9
4/4	208.5	21.6	198.7	8.2	205.1	17.1	209.7	23.6
2001. 1/4	198.6	19.5	190.2	7.7	194.9	14.9	200.2	22.2
2/4	204.2	18.7	195.4	7.0	201.0	14.5	206.4	22.1
3/4	205.5	18.5	196.9	6.7	202.9	14.1	207.5	22.3
4/4	204.3	18.1	195.7	6.7	201.5	13.3	206.6	21.9
2002. 1/4	194.2	15.2	187.7	5.6	191.0	10.2	196.0	18.4
2/4	198.6	15.8	191.7	5.6	195.3	10.5	200.5	18.9
3/4	198.5	16.0	191.6	5.5	194.9	10.6	200.6	19.2
4/4	205.7	16.4	198.1	5.6	202.4	11.2	208.1	19.7
2003. 1/4	196.6	15.5	189.0	5.3	192.5	9.5	199.5	19.1
2/4	199.1	15.9	192.8	6.7	194.7	9.4	202.0	19.6
2001. 6	205.0	18.2	196.7	6.5	201.5	13.7	207.4	22.0
7	205.6	18.8	196.7	6.7	202.5	14.5	207.5	22.6
8	206.4	18.2	197.9	6.3	204.3	13.9	186.5	22.1
9	204.4	18.2	195.9	7.0	201.7	13.7	206.2	21.9
10	197.8	18.1	189.2	6.6	194.9	13.4	199.9	22.2
11	211.1	18.1	202.3	6.6	208.5	13.3	213.6	21.9
12	204.0	17.9	195.3	6.8	201.1	13.0	206.1	21.4
2002. 1	207.4	15.4	200.5	5.9	204.7	10.8	209.6	18.4
2	172.7	13.9	166.2	4.9	169.5	9.4	173.5	16.7
3	202.6	16.2	196.2	6.0	198.7	10.4	204.8	20.0
4	203.7	16.5	195.8	5.8	200.3	10.7	206.5	20.1
5	211.3	16.6	203.9	5.7	208.0	10.9	213.8	19.5
6	193.7	16.0	187.4	5.3	190.6	10.7	194.8	18.8
7	204.9	16.5	198.3	5.9	201.6	11.0	207.0	19.8
8	201.2	16.0	194.3	5.4	197.7	10.7	203.4	19.0
9	189.5	15.5	182.2	5.2	185.5	10.3	191.3	18.6
10	208.8	16.7	200.9	5.5	205.2	11.2	211.7	20.0
11	207.4	16.2	200.4	5.7	204.5	11.2	210.0	19.7
12	200.8	16.4	193.1	5.5	197.5	11.0	202.7	19.6
2003. 1	200.9	15.8	193.1	5.2	197.0	9.9	203.8	19.3
2	187.2	14.6	180.9	5.3	183.3	9.2	190.0	17.7
3	201.6	16.3	192.9	5.4	197.5	9.6	205.0	20.4
4	203.0	15.7	195.0	5.8	198.5	9.4	206.2	19.1
5	198.2	16.3	191.9	6.0	194.4	9.7	202.4	20.7
6	196.1	15.7	191.6	8.5	191.0	9.1	198.9	19.1

주・자료 : <표 31>과 동일.

(단위 : 시간/월)

	100~299인		대규모		300~499인		500인 이상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전 체	초과근로
1997	208.9	28.7	202.2	27.8	205.8	28.4	201.2	27.6
1998	203.4	24.1	195.6	22.5	199.6	22.7	194.4	22.4
1999	216.9	32.3	206.2	28.3	210.9	28.5	205.0	28.3
2000	214.4	33.5	203.7	29.1	208.3	29.4	202.5	29.0
2001	212.7	31.1	199.9	26.9	202.2	25.5	199.3	27.2
2002	209.3	29.8	196.7	26.1	201.5	25.0	195.2	26.4
1999. 2/4	218.4	32.8	209.5	29.3	213.9	29.5	208.3	29.2
3/4	217.3	33.0	205.4	28.1	209.4	27.9	204.3	28.1
4/4	223.6	33.6	214.2	29.7	218.3	30.4	213.1	29.5
2000. 1/4	214.2	32.2	204.0	29.1	208.5	28.3	202.7	29.4
2/4	214.1	34.5	201.3	29.0	207.0	30.7	199.7	28.6
3/4	210.7	32.8	201.5	29.2	204.9	29.9	200.6	29.0
4/4	218.4	34.6	208.2	29.1	212.7	28.6	206.9	29.2
2001. 1/4	209.3	32.7	199.6	28.7	197.1	24.9	200.3	29.7
2/4	213.8	30.9	201.8	26.8	203.4	26.2	201.4	26.9
3/4	214.5	30.4	199.3	25.9	204.1	25.2	198.1	26.0
4/4	213.5	30.4	199.1	26.3	204.7	25.8	197.7	26.4
2002. 1/4	203.2	27.7	191.0	25.5	196.5	24.9	189.2	25.7
2/4	207.5	29.3	195.2	25.7	199.9	25.0	193.6	26.0
3/4	207.8	30.1	193.9	26.1	199.6	24.5	192.1	26.6
4/4	214.5	30.5	202.5	26.8	206.4	25.5	201.3	27.2
2003. 1/4	204.8	28.1	194.0	23.5	198.1	23.9	192.6	23.3
2/4	206.8	28.1	197.6	24.5	201.0	24.4	196.4	24.5
2001. 6	214.5	30.1	202.6	27.7	203.9	25.9	202.3	28.2
7	215.4	30.9	199.9	25.8	203.6	24.6	198.9	26.1
8	214.1	30.1	197.4	25.8	204.2	24.6	195.7	26.2
9	213.8	30.1	200.6	25.9	204.5	26.4	199.6	25.8
10	207.4	30.0	194.3	27.6	197.4	25.2	193.5	28.3
11	219.7	30.6	206.5	26.2	212.0	25.5	205.1	26.4
12	213.2	30.4	196.5	24.8	204.4	26.5	194.4	24.3
2002. 1	215.0	27.4	202.1	25.0	209.7	25.3	199.6	24.9
2	182.8	25.7	172.4	24.0	175.6	23.2	171.3	24.3
3	211.7	29.8	198.4	27.4	204.0	26.3	196.5	27.8
4	212.7	30.6	201.1	26.3	204.8	25.0	199.9	26.8
5	220.0	31.9	205.4	25.2	211.5	25.0	203.4	25.2
6	203.1	30.4	191.8	26.4	194.0	25.0	191.4	26.8
7	213.3	30.8	197.5	25.6	203.6	24.5	195.5	25.9
8	210.1	30.4	195.1	26.7	203.2	25.1	192.5	27.2
9	200.1	29.2	189.2	25.9	191.9	24.0	188.3	26.6
10	217.8	31.4	203.2	27.8	209.9	26.5	201.0	28.3
11	215.1	29.3	205.4	26.0	208.4	25.1	204.4	26.4
12	210.5	30.9	199.0	26.6	201.1	25.0	198.4	27.1
2003. 1	209.3	28.6	196.9	24.0	202.0	24.0	195.1	24.0
2	195.3	26.1	186.4	22.6	189.0	22.9	185.6	22.6
3	209.9	29.5	198.7	23.8	203.3	24.9	196.9	23.4
4	211.6	28.5	202.3	23.9	205.5	23.5	201.0	24.0
5	205.5	28.8	195.0	25.2	199.7	25.6	193.6	25.1
6	204.3	27.2	195.5	24.4	198.5	24.2	194.5	24.5

<표 42> 산업별 임금근로자 주평균 근로시간 추이

	전산업	농업 및 임업	어업	광 업	제 조 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및 자동차용 품수리업
1996	51.0	47.0	57.8	52.9	51.3	47.0	51.9	53.0
1997	50.1	46.0	56.3	52.4	50.1	46.0	50.3	52.0
1998	48.9	44.9	51.6	50.7	48.8	48.2	46.5	51.7
1999	49.8	44.9	47.3	49.2	50.4	47.7	47.6	52.2
2000	50.0	44.7	47.4	52.1	50.9	47.5	48.4	51.4
2001	49.7	45.2	52.0	51.5	50.5	47.1	48.7	51.0
2002	49.1	44.7	51.4	48.5	49.7	46.0	48.3	50.6
1999. 2/4	50.1	47.0	46.5	49.4	50.4	48.9	48.4	52.2
3/4	49.3	45.0	46.9	49.7	50.0	46.0	47.6	51.8
4/4	50.6	43.9	50.8	49.8	51.2	47.4	48.5	52.4
2000. 1/4	50.1	42.5	44.2	49.9	51.4	48.1	46.8	52.2
2/4	50.0	45.6	45.2	52.3	50.6	47.0	49.1	51.3
3/4	49.4	46.3	51.1	51.9	50.5	46.7	48.3	50.7
4/4	50.4	43.5	49.8	54.4	51.2	47.9	49.1	51.3
2001. 1/4	49.8	43.1	51.0	50.2	51.1	47.3	46.3	51.6
2/4	50.7	46.8	50.6	53.5	51.1	48.7	50.4	51.4
3/4	48.3	45.3	52.8	50.5	49.1	44.8	48.2	49.8
4/4	50.2	44.8	53.0	51.7	50.8	47.4	49.7	51.4
2002. 1/4	49.7	42.3	51.9	50.4	50.7	47.1	47.5	51.4
2/4	49.8	46.4	50.9	49.9	50.1	47.2	49.5	51.2
3/4	47.3	44.6	51.8	46.4	47.8	44.2	46.7	49.3
4/4	49.7	44.6	51.1	46.6	50.3	45.5	49.2	50.6
2003. 1/4	48.8	42.6	46.3	51.4	50.5	45.9	47.0	50.2
2/4	49.3	43.8	49.5	55.7	50.3	47.3	48.3	49.9
2001. 8	46.3	44.7	51.8	49.1	47.6	42.0	47.1	48.3
9	50.2	46.1	52.7	50.7	50.8	47.9	50.3	51.5
10	50.4	45.8	52.4	51.2	50.9	47.6	50.3	51.5
11	50.2	46.5	55.4	52.5	50.8	47.1	50.1	51.4
12	50.0	41.7	51.4	51.3	50.5	47.5	48.8	51.2
2002. 1	48.8	39.4	51.8	48.8	50.5	47.6	46.5	51.3
2	49.8	42.0	50.6	51.2	50.6	47.5	46.8	51.6
3	50.5	44.7	53.9	51.4	51.0	46.2	49.2	51.5
4	50.4	45.4	49.7	52.1	51.0	47.8	50.1	51.5
5	50.3	45.7	48.1	49.4	50.9	48.6	49.2	51.6
6	48.8	48.1	55.4	47.8	48.3	45.0	49.2	50.5
7	47.2	43.1	53.7	48.7	47.2	44.1	46.4	49.2
8	45.0	42.7	45.0	45.4	46.1	42.6	44.1	47.7
9	49.7	47.7	56.0	45.0	50.0	46.1	49.5	50.9
10	49.9	46.6	48.0	46.4	50.6	45.5	49.8	50.8
11	49.7	45.0	51.2	47.6	50.4	45.7	49.6	50.5
12	49.5	41.9	53.3	45.7	50.0	45.4	48.2	50.5
2003. 1	48.2	42.2	45.3	50.5	50.5	45.7	46.8	50.6
2	48.8	42.0	45.6	50.5	50.5	45.5	46.9	50.2
3	49.2	43.2	47.8	53.1	50.6	46.5	47.3	49.9
4	49.3	43.3	48.7	55.6	50.4	47.5	47.6	49.9
5	49.4	44.7	50.6	54.6	50.4	46.8	49.2	49.9
6	49.2	43.4	49.4	56.8	50.1	47.7	48.2	50.0
7	45.8	40.9	47.5	55.1	46.2	42.2	43.5	48.0
8	43.1	43.3	48.4	54.9	44.5	40.2	43.7	45.6

주 : 1) 15세 이상 인구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직)에 대한 평균임.
2) 2000년부터는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단위 : 시간/주)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6	56.9	55.5		46.7	53.0		40.0	49.7	50.8
1997	56.1	54.7		45.9	52.0		39.6	49.4	50.1
1998	53.9	54.2		46.7	51.4		39.5	49.0	49.3
1999	54.4	55.0		47.6	52.7		39.6	50.0	50.0
2000	54.4	56.1	48.6	47.3	56.5	51.1	39.8	49.0	52.0
2001	53.5	56.1	49.6	47.1	55.8	50.8	39.3	49.1	52.0
2002	54.4	55.7	49.2	45.9	54.4	50.0	38.7	48.5	51.6
1999. 2/4	54.0	55.3		47.8	52.8		42.4	50.4	50.1
3/4	53.6	54.8		46.6	52.1		36.8	49.8	50.0
4/4	55.2	55.3		48.6	53.1		42.4	50.5	51.0
2000. 1/4	55.2	55.8	49.5	48.4	56.5	51.5	37.7	50.1	52.3
2/4	54.7	56.2	48.4	47.1	56.2	50.8	41.7	49.6	51.7
3/4	54.1	55.9	47.5	46.2	56.4	50.7	37.3	47.8	51.5
4/4	53.8	56.5	49.0	47.5	56.7	51.4	42.3	48.8	52.5
2001. 1/4	53.6	56.3	49.4	47.5	56.4	51.4	37.5	49.9	52.9
2/4	54.0	56.8	50.8	48.1	56.4	51.7	42.8	50.1	52.5
3/4	52.9	55.4	47.7	44.7	54.9	49.0	35.0	47.3	50.9
4/4	53.4	56.1	50.5	48.0	55.6	51.3	41.8	49.1	51.8
2002. 1/4	53.9	56.4	50.4	48.0	55.4	51.8	37.3	49.5	51.6
2/4	54.4	56.4	49.6	46.9	55.4	50.6	41.1	49.1	51.6
3/4	54.2	54.4	46.4	43.0	52.9	47.3	34.5	46.8	50.7
4/4	55.1	55.7	50.4	45.8	53.9	50.6	41.8	48.9	52.4
2003. 1/4	53.0	55.5	48.5	46.1	54.1	50.7	36.2	49.5	51.5
2/4	52.9	54.9	48.5	46.7	54.0	51.0	41.8	49.8	51.5
2001. 8	52.3	53.9	45.7	42.4	54.8	46.9	27.1	45.2	49.5
9	53.5	56.5	49.8	47.2	54.9	51.1	41.6	48.8	51.7
10	53.6	56.5	50.4	47.6	56.0	51.3	41.9	49.3	52.0
11	53.2	56.1	50.2	47.9	55.7	51.1	41.6	48.9	52.0
12	53.5	55.7	50.9	48.5	55.2	51.4	41.9	49.0	51.5
2002. 1	53.2	56.1	50.3	48.2	54.7	51.9	29.5	49.0	51.1
2	54.1	56.3	50.4	48.1	55.5	51.3	39.7	49.5	51.2
3	54.3	56.7	50.6	47.8	55.9	52.0	42.4	50.0	52.5
4	54.5	56.9	50.4	47.5	56.3	51.3	42.0	49.4	51.9
5	54.4	56.9	50.5	47.9	55.3	51.5	41.5	49.4	52.0
6	54.3	55.3	47.9	45.1	54.7	49.0	39.7	48.4	51.1
7	54.7	53.8	45.7	42.6	52.8	47.1	36.0	46.5	50.2
8	53.2	53.0	44.0	40.4	51.9	44.8	26.0	45.0	49.7
9	54.7	56.5	49.5	46.0	54.1	50.0	41.2	48.8	52.2
10	55.1	56.1	49.9	45.9	53.5	50.8	41.7	49.0	52.7
11	54.8	55.8	50.1	45.6	53.9	50.6	41.7	49.1	52.3
12	55.3	55.1	51.3	45.9	54.4	50.5	41.9	48.7	52.1
2003. 1	53.1	55.4	49.0	46.3	54.6	50.9	28.9	49.5	51.5
2	52.9	55.6	47.9	46.1	53.9	50.9	37.9	49.0	51.4
3	53.0	55.5	48.7	45.9	53.8	50.2	41.6	49.9	51.5
4	53.1	54.9	48.2	46.7	53.6	50.9	42.1	50.0	51.4
5	53.2	54.6	48.5	46.8	54.4	50.8	41.6	49.8	51.6
6	52.2	55.2	48.7	46.4	54.1	51.2	41.6	49.7	51.5
7	51.7	53.2	44.3	41.3	52.5	47.0	36.2	46.5	49.2
8	51.5	51.4	40.3	38.1	49.6	44.3	24.4	44.4	45.9

<표 43> 직종별 임금근로자 주평균 근로시간 추이

	전직종	고위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1996	51.0	49.9	43.8	47.8	48.9	55.9	
1997	50.1	48.8	43.7	47.1	48.0	55.0	
1998	48.9	49.5	44.3	47.5	48.3	53.7	
1999	49.8	50.6	45.3	48.8	48.9	54.0	
2000	50.0	50.0	45.2	48.7	48.6	54.0	50.2
2001	49.7	49.1	45.5	48.5	48.2	53.1	50.1
2002	49.1	47.8	44.5	47.4	47.3	53.2	50.0
1999. 2/4	50.1	51.3	48.0	49.2	49.4	53.8	
3/4	49.3	49.9	42.7	48.2	48.1	53.5	
4/4	50.6	52.0	47.8	49.4	49.3	54.6	
2000. 1/4	50.1	50.9	44.1	49.6	49.4	54.5	51.1
2/4	50.0	50.4	46.3	48.4	48.4	54.2	50.0
3/4	49.4	48.6	43.1	47.9	48.0	53.4	49.8
4/4	50.4	49.9	47.4	49.1	48.7	53.8	50.2
2001. 1/4	49.8	49.4	44.5	49.3	48.8	53.5	50.5
2/4	50.7	50.4	48.2	49.6	49.1	53.7	50.3
3/4	48.3	46.7	41.7	46.6	46.3	52.2	49.1
4/4	50.2	49.9	47.4	48.6	48.7	53.1	50.4
2002. 1/4	49.7	49.2	43.8	49.0	48.6	53.0	50.7
2/4	49.8	49.3	46.8	48.2	48.1	53.4	50.3
3/4	47.3	44.6	40.4	44.7	44.8	52.7	49.1
4/4	49.7	48.0	46.8	47.6	47.8	53.9	50.0
2003. 1/4	48.8	49.2	42.5	47.6	48.0	51.9	49.8
2/4	49.3	49.9	46.9	48.0	48.2	52.5	48.9
2001. 8	46.3	43.9	35.3	44.3	44.0	51.1	47.8
9	50.2	49.0	47.1	48.7	48.6	52.9	50.5
10	50.4	49.7	47.6	48.7	48.8	53.4	50.3
11	50.2	50.0	47.4	48.6	48.6	52.9	50.5
12	50.0	50.0	47.3	48.6	48.7	53.0	50.4
2002. 1	48.8	48.5	38.5	48.7	48.5	52.1	50.5
2	49.8	49.5	45.1	48.9	48.4	53.2	51.1
3	50.5	49.7	47.6	49.4	49.0	53.6	50.6
4	50.4	50.1	47.6	49.2	48.9	53.6	50.3
5	50.3	50.2	47.8	48.7	49.0	53.5	50.9
6	48.8	47.6	44.9	46.6	46.6	53.0	49.7
7	47.2	44.9	41.3	44.4	44.5	53.1	49.1
8	45.0	41.4	33.7	42.2	42.3	51.3	47.7
9	49.7	47.4	46.2	47.5	47.5	53.7	50.5
10	49.9	48.1	46.8	47.7	48.1	53.9	50.0
11	49.7	47.8	46.9	47.5	47.6	53.7	49.9
12	49.5	48.1	46.7	47.6	47.8	54.1	50.2
2003. 1	48.2	48.8	37.4	47.5	48.1	51.5	50.2
2	48.8	48.9	43.6	47.7	47.8	51.9	50.0
3	49.2	49.9	46.6	47.8	48.1	52.3	49.2
4	49.3	50.1	46.9	48.0	48.3	52.8	49.1
5	49.4	49.7	46.6	48.1	48.3	52.7	48.8
6	49.2	49.8	47.1	47.8	48.0	52.1	48.8
7	45.8	44.7	41.3	43.8	43.5	51.2	47.6
8	43.1	41.5	32.2	40.3	40.1	49.2	45.9

주 : 1) 15세 이상 인구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직)에 대한 평균임.
2) 2000년부터는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단위 : 시간/주)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종사자
1996	52.6	52.5	55.0	49.8
1997	51.7	51.2	53.8	49.0
1998	46.0	48.3	52.2	46.4
1999	45.7	49.8	54.1	46.5
2000	46.1	50.7	54.4	48.0
2001	47.3	51.0	54.0	48.0
2002	46.7	50.1	53.6	47.8
1999. 2/4	46.9	50.1	54.1	46.3
3/4	45.9	49.7	54.2	46.4
4/4	46.9	50.8	55.2	46.9
2000. 1/4	42.1	50.1	54.5	47.6
2/4	46.4	50.7	54.1	48.2
3/4	48.4	50.6	54.1	47.9
4/4	47.1	51.3	54.7	48.3
2001. 1/4	44.8	50.3	54.2	47.8
2/4	48.3	51.8	54.5	48.6
3/4	47.4	50.3	52.9	47.1
4/4	48.3	51.4	54.3	48.3
2002. 1/4	44.7	50.3	54.5	48.0
2/4	46.8	50.9	54.0	48.0
3/4	46.1	48.6	52.0	46.9
4/4	49.0	50.6	53.8	48.4
2003. 1/4	45.5	49.8	53.4	47.5
2/4	47.8	50.1	53.4	47.7
2001. 8	46.2	49.0	51.7	46.6
9	47.1	52.1	54.1	48.1
10	48.7	51.9	54.5	48.5
11	49.3	51.5	54.7	48.3
12	47.0	50.9	53.8	48.0
2002. 1	42.7	49.7	54.3	47.5
2	43.9	49.9	54.4	47.9
3	47.6	51.2	54.7	48.5
4	46.3	51.6	54.9	48.3
5	45.6	51.2	54.7	47.8
6	48.7	50.1	52.5	48.0
7	44.5	48.4	51.6	46.2
8	43.2	46.6	50.8	45.7
9	50.1	50.9	53.6	48.8
10	48.8	51.2	53.9	48.8
11	50.0	50.8	53.9	48.3
12	48.1	49.7	53.6	48.1
2003. 1	47.1	49.8	53.3	47.6
2	42.4	49.9	53.3	47.6
3	47.2	49.7	53.7	47.5
4	46.0	49.9	53.4	47.4
5	48.6	50.5	53.4	48.1
6	49.0	50.0	53.3	47.8
7	47.6	46.6	49.7	45.2
8	47.8	46.1	48.8	44.3

<표 44> 규모별, 성별 임금근로자 주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주)

	전규모			10인 미만			10~299인			300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98	48.9	50.6	46.4	48.8	50.3	47.3	49.2	51.2	45.3	48.4	48.9	46.8
1999	49.8	51.8	46.7	49.4	51.3	47.6	50.2	52.6	45.7	49.5	50.2	47.2
2000	50.0	52.0	47.0	49.8	51.9	47.9	50.1	52.6	45.9	49.6	50.4	47.3
2001	49.7	51.9	46.6	49.7	52.1	47.4	50.0	52.5	45.7	48.9	49.8	46.5
2002	49.1	51.3	46.1	49.4	51.5	47.2	49.2	51.8	45.0	47.9	48.8	45.5
1999. 2/4	50.1	52.2	47.0	49.5	51.4	47.6	50.7	53.2	46.3	49.8	50.6	47.3
3/4	49.3	51.5	46.0	49.0	51.1	47.0	49.6	52.2	44.8	48.9	49.7	46.5
4/4	50.6	52.7	47.5	50.0	52.0	48.0	51.2	53.6	46.8	50.4	51.1	48.0
2000. 1/4	50.1	52.1	47.1	49.9	51.8	48.1	50.2	52.6	45.9	50.5	51.2	48.1
2/4	50.0	52.0	47.0	50.0	52.0	47.9	50.3	52.7	46.1	49.1	49.8	47.1
3/4	49.4	51.5	46.3	49.6	51.6	47.6	49.4	51.9	45.0	49.0	49.8	46.5
4/4	50.4	52.4	47.4	50.1	52.2	47.9	50.7	53.1	46.8	49.9	50.8	47.4
2001. 1/4	49.8	51.9	46.9	49.7	51.6	47.9	50.0	52.5	45.8	49.8	50.6	47.5
2/4	50.7	52.9	47.4	50.4	52.9	48.0	51.1	53.6	46.9	49.8	50.7	47.3
3/4	48.3	50.5	45.0	48.9	51.3	46.5	48.1	50.8	43.4	47.0	47.9	44.4
4/4	50.2	52.5	47.0	49.9	52.4	47.4	50.7	53.2	46.6	49.1	49.9	46.7
2002. 1/4	49.7	51.9	46.5	49.5	51.6	47.5	49.9	52.5	45.5	49.3	50.3	46.4
2/4	49.8	52.1	46.7	49.9	52.2	47.6	50.1	52.7	45.9	48.4	49.2	46.2
3/4	47.3	49.2	44.5	48.2	50.0	46.4	47.0	49.6	42.7	45.5	46.2	43.4
4/4	49.7	51.9	46.6	49.8	52.0	47.5	49.9	52.4	45.8	48.6	49.6	46.0
2003. 1/4	48.8	50.8	45.8	48.8	50.8	46.9	48.3	50.9	44.6	49.4	50.7	45.8
2/4	49.3	51.5	46.3	49.0	51.2	46.8	49.4	51.9	45.6	49.8	51.2	46.2
2001. 8	46.3	48.6	42.9	47.9	50.3	45.6	45.3	48.4	40.1	44.8	45.7	42.1
9	50.2	52.5	46.8	50.0	52.7	47.4	50.6	53.1	46.3	49.1	50.0	46.7
10	50.4	52.7	47.1	50.3	52.9	47.7	50.8	53.3	46.5	49.3	50.3	46.5
11	50.2	52.5	46.9	49.9	52.6	47.3	50.7	53.2	46.5	49.3	50.2	46.8
12	50.0	52.1	47.0	49.6	51.9	47.3	50.7	53.1	46.7	48.6	49.3	46.8
2002. 1	48.8	51.2	45.5	49.0	51.0	47.0	48.6	51.5	43.8	49.2	50.2	46.1
2	49.8	51.9	46.7	49.5	51.5	47.5	50.1	52.6	46.0	49.2	50.1	46.6
3	50.5	52.7	47.2	50.2	52.4	47.9	50.9	53.5	46.6	49.5	50.6	46.6
4	50.4	52.8	47.1	50.3	52.7	47.8	50.8	53.5	46.5	49.5	50.5	46.7
5	50.3	52.6	47.1	50.0	52.2	47.8	50.7	53.4	46.4	49.6	50.4	47.2
6	48.8	50.8	46.0	49.5	51.7	47.2	48.9	51.4	44.9	46.1	46.6	44.7
7	47.2	49.0	44.5	48.1	49.6	46.5	46.9	49.5	42.7	44.9	45.7	42.9
8	45.0	46.9	42.3	46.7	48.2	45.1	44.0	46.8	39.5	43.3	44.0	41.3
9	49.7	51.8	46.7	49.9	52.2	47.5	49.9	52.3	45.9	48.2	49.0	46.1
10	49.9	52.1	46.8	50.1	52.4	47.7	50.1	52.6	46.0	48.7	49.7	46.1
11	49.7	51.9	46.5	49.8	52.1	47.3	49.9	52.5	45.7	48.6	49.5	46.1
12	49.5	51.6	46.5	49.5	51.5	47.5	49.7	52.2	45.7	48.6	49.7	45.7
2003. 1	48.2	50.4	45.1	49.0	50.8	47.2	47.1	50.1	42.6	48.9	50.2	45.4
2	48.8	50.8	46.0	48.8	50.8	46.9	48.6	50.9	45.1	49.3	50.7	45.4
3	49.2	51.3	46.3	48.7	50.7	46.7	49.3	51.7	45.9	49.9	51.2	46.4
4	49.3	51.4	46.5	48.9	50.9	47.0	49.4	51.8	45.9	49.9	51.2	46.4
5	49.4	51.6	46.3	49.3	51.7	47.0	49.4	52.0	45.6	49.7	51.0	46.2
6	49.2	51.5	46.0	48.9	51.2	46.6	49.2	51.9	45.3	49.8	51.2	46.0
7	45.8	47.7	43.2	46.7	48.6	44.9	45.5	48.0	41.8	45.0	46.1	41.9
8	43.1	45.1	40.3	45.2	47.1	43.3	41.7	44.8	37.0	42.3	43.2	39.9

주 : 15세 이상 인구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직)에 대한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45>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추이

	노동조합수	총연합단체	산별연맹 (노 조)	지 부	분 회	노 동 조합원수
				(단위노조)		
1963	2,150	1	16	313	1,820	224,420
1964	2,463	1	16	341	2,105	271,579
1965	2,634	1	16	362	2,255	301,523
1966	2,735	1	16	359	2,359	336,974
1967	3,022	1	16	386	2,619	377,576
1968	3,134	1	16	385	2,732	412,906
1969	3,373	1	16	417	2,939	444,783
1970	3,500	1	17	419	3,063	473,259
1971	3,525	1	17	446	3,061	497,221
1972	3,409	1	17	430	2,961	515,292
1973	3,286	1	17	403	2,865	548,054
1974	3,802	1	17	432	3,352	655,785
1975	4,091	1	17	488	3,585	750,235
1976	4,389	1	17	517	3,854	845,630
1977	4,598	1	17	538	4,042	954,727
1978	4,875	1	17	552	4,305	1,054,608
1979	4,965	1	17	553	4,394	1,088,061
1980	2,635	1	16	2,618		948,134
1981	2,158	1	16	2,141		966,738
1982	2,208	1	16	2,191		984,136
1983	2,255	1	16	2,238		1,009,881
1984	2,382	1	16	2,365		1,010,522
1985	2,551	1	16	2,534		1,004,398
1986	2,675	1	16	2,658		1,035,890
1987. 6. 30	2,742	1	16	2,725		1,050,201
1987. 12. 31	4,103	1	16	4,086		1,267,457
1988	6,164	1	21	6,142		1,707,456
1989	7,883	1	21	7,861		1,932,415
1990	7,698	1	21	7,676		1,886,884
1991	7,656	1	21	7,634		1,803,408
1992	7,527	1	21	7,505		1,734,598
1993	7,147	1	26	7,120		1,667,373
1994	7,025	1	26	6,998		1,659,011
1995	6,606	1	26	6,579		1,614,800
1996	6,424	1	26	6,397		1,598,558
1997	5,733	1	40	5,692		1,484,194
1998	5,560	1	42	5,517		1,401,940
1999	5,637	2	43	5,592		1,480,666
2000	5,698	2	44	5,652		1,526,995
2001	6,150	2	45	6,150		1,568,723

주 : 1) 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동조합수는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단위노동조합, 지부, 분회 및 연합단체를 모두 합한 수치임.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법외노동단체는 통계에서 제외되었음.

2) 1980년 12월 31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종전의 지부 및 분회가 기업별 단위노조로 통폐합되었음.

자료 : 노동부.

<표 46> 산별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200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조합수	조합원수		
			계	남자	여자
전체		6,150	1,568,723	1,263,314	305,409
한국노총	계	3,940	877,827	707,226	170,601
	한국노총(직할노조)	58	4,457	3,018	1,439
	철도노조	1	25,612	24,597	1,015
	섬유·유통노련	190	32,690	14,769	17,921
	광산노련	23	6,374	6,052	322
	전력노조	3	23,664	21,842	1,822
	외기노련	44	21,211	14,749	6,462
	통신노련	46	11,171	9,334	1,837
	항운노련	61	33,103	31,600	1,503
	해상노련	58	29,516	29,408	108
	금융노련	82	79,128	55,186	23,942
	담배인삼노조	4	5,611	4,805	806
	화학노련	680	86,138	66,538	19,600
	금속노련	667	120,768	89,172	31,596
	연합노련	581	70,870	53,558	17,312
	출판노련	58	3,600	2,687	913
	자동차노련	493	69,751	68,238	1,513
	관광노련	121	12,026	7,257	4,769
	체신노조	1	21,966	16,416	5,550
	택시노련	550	118,948	117,362	1,586
	고무노련	17	8,425	7,249	1,176
	도시철도노련	6	8,657	7,689	968
	공공서비스노련	46	13,971	10,104	3,867
	아파트노련	37	3,601	3,485	116
	공공건설노련	17	5,576	4,779	797
	의료산업노련	8	4,247	1,320	2,927
	정투노련	26	18,944	17,278	1,666
	예능인노련	20	2,246	1,559	687
	한교조	1	25,060	9,960	15,100
	식품산업노련	41	10,496	7,215	3,281
민주노총	계	1,513	643,506	517,078	126,428
	민주노총(직할노조)	116	35,983	28,766	7,217
	언론노련	59	22,463	21,339	1,124
	병원노련	28	37,796	37,290	506
	전국대학노조	3	7,604	5,007	2,597
	금속산업노련	295	181,938	171,423	10,515
	화물운송노련	27	7,534	7,402	132
	시설관리노련	35	1,806	1,507	299
	민주택시노련	165	20,591	20,442	149
	사무금융노련	204	70,741	45,580	25,161
	공공노련	223	92,178	76,647	15,531
	여성노련	18	2,362	-	2,362
	건설산업노련	123	29,806	28,179	1,627
	민주화확섬유노련	144	30,045	26,652	3,393
	전교조	1	87,996	39,396	48,600
	서비스연맹	72	14,663	7,448	7,215
상급단체미가입		697	47,390	39,010	8,380

주 : 1) 조합수에는 지부·분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직할노조는 산업별 연맹에는 가입하지 아니하고 노총·민노총 지역본부에만 직접 가입한 노조임.
2) 비가맹노조란 산별연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단위노조를 지칭함.

자료 : 노동부.

<표 47>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

	조 직 률(A)			조 직 률(B)			조직률(C)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1964	23.3	24.0	20.8	11.5	11.6	11.0	-
1965	22.4	23.5	19.1	11.6	11.7	11.2	-
1966	22.7	22.3	21.2	11.8	11.8	11.7	-
1967	22.2	22.1	22.5	12.4	12.4	12.5	-
1968	21.1	21.3	20.6	12.1	12.3	11.7	-
1969	21.3	21.3	20.9	12.5	12.9	11.6	-
1970	20.0	20.1	19.7	12.6	13.1	11.5	-
1971	19.7	20.0	18.7	12.7	12.9	11.9	-
1972	20.4	20.5	20.1	12.9	12.9	12.9	-
1973	20.4	20.4	20.5	13.2	13.0	13.6	-
1974	22.1	21.4	23.9	14.8	14.2	16.2	-
1975	23.0	21.4	27.4	15.8	14.5	19.3	-
1976	23.3	21.7	27.1	16.5	15.2	19.5	-
1977	24.3	22.7	28.5	16.7	15.6	19.5	-
1978	24.0	22.8	26.8	16.9	15.9	21.2	-
1979	23.6	22.8	25.4	16.8	16.2	18.1	-
1980	20.1	18.5	23.6	14.7	13.6	17.0	-
1981	19.6	18.5	21.8	14.6	13.9	16.3	-
1982	19.1	18.6	20.1	14.4	13.8	15.7	-
1983	18.1	17.8	18.5	14.1	14.2	13.9	-
1984	16.8	16.6	17.2	13.2	13.5	12.8	-
1985	15.7	15.9	15.2	12.4	13.1	11.1	16.9
1986	15.5	16.2	14.2	12.3	13.2	10.5	16.8
1987. 6. 30	14.7	15.6	12.9	11.7	13.0	9.5	15.7
1987. 12. 31	17.3	18.5	15.0	13.8	15.3	11.1	18.5
1988	22.0	23.9	18.1	17.8	20.1	13.7	19.5
1989	23.3	25.8	18.5	18.6	21.8	13.4	19.8
1990	21.5	24.4	16.3	17.2	20.5	12.0	18.4
1991	19.6	22.7	14.1	15.8	19.0	10.6	17.2
1992	18.3	21.8	12.1	14.9	18.4	9.3	16.4
1993	17.2	20.5	11.3	14.1	17.4	8.8	15.6
1994	16.3	19.9	10.0	13.5	16.9	7.9	14.5
1995	15.2	18.7	9.3	12.6	15.9	7.4	13.8
1996	14.7	18.4	8.4	12.2	15.7	6.7	13.3
1997	13.5	17.5	7.0	11.2	14.9	5.6	12.2
1998	13.8	17.8	6.9	11.5	15.3	5.4	12.6
1999	14.9	18.7	8.4	11.8	15.5	6.2	11.9
2000	14.6	18.6	7.8	11.6	15.6	5.8	12.0
2001	14.5	19.0	7.4	11.8	16.0	5.6	12.0

주 : 조직률 A=조합원수÷비농가상시고×100
조직률 B=조합원수÷임금근로자×100
조직률 C=1987년 이전은 조합원수÷(상시고-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88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99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철도, 체신 등 기능직 공무원과 국공립교원은 제외)×100
조직률 C는 노동부 집계방식.
1991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시계열 조정에 따른 수치보정.

자료 : 노동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48> 주요 노사분규지표

		발생건수(건수)	분규참가자수(명)	노동손실일수(일)
1988		1,873	293,455	5,400,837
1989		1,616	409,134	6,351,443
1990		322	133,916	4,487,151
1991		234	175,089	3,271,334
1992		235	105,034	1,527,612
1993		144	108,577	1,308,326
1994		121	104,339	1,484,368
1995		88	49,717	392,581
1996		85	79,495	892,987
1997		78	43,991	444,720
1998		129	146,065	1,452,096
1999		198	92,026	1,366,281
2000		250	177,969	1,893,563
2001		235	88,548	1,083,079
2002		321	93,709	1,579,678
2001.	2	10	368<4,015>	69,469
	3	21	1,837<4,015>	92,669
	4	37	4,956	125,870
	5	54	8,986	195,636
	6	114	31,694	354.929
	7	153	59,202	511,265
	8	173	61,803	643,078
	9	194	65,543	697,699
	10	208	70,913	746,786
	11	222	72,218	799,778
	12	235	88,548	1,083,079
2002.	1	12<11>	1,272<732>	31,160
	2	21<11>	16,615<732>	80,394
	3	30<11>	17,531<732>	212,450
	4	40<11>	18,021<732>	240,565
	5	172<11>	46,148<732>	395,669
	6	207<11>	65,334<732>	764,817
	7	234	80,245	1,110,896
	8	250	82,841	1,262,183
	9	264	86,089	1,380,973
	10	279	89,837	1,462,300
	11	292	91,664	1,537,918
	12	321	93,709	1,579,678
2003.	1	11<10>	1,324<714>	18,445
	2	17<10>	2,382<714>	28,041
	3	25<10>	5,214<714>	67,195
	4	56<10>	9,211<714>	91,460
	5	81<10>	13,954<714>	116,564
	6	118<10>	58,478<714>	245,832
	7	256<10>	123,144<714>	806,964
	8	276	124,205	1,084,443

주 : 1) 분규참가자수는 분규발생업체의 발생당시 분규참가 인원수임.
2) < >안은 전년 이월분임.

자료 : 노동부.

<표 49>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 건)

	전 체	체불임금	임금인상	해 고	단체협약	기 타
1995	88	-	33	1	49	5
1996	85	1	19	-	62	3
1997	78	3	18	-	51	6
1998	129	23	28	3	57	10
1999	198	22	40	-	89	47
2000	250	7	47	2	167	27
2001	235	6	59	-	149	21
2002	322	2	44	8	249	19

자료 : 노동부.

<표 50> 사업체규모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 건, %)

	전 체	100인 미만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1995	88(100.0)	21(23.9)	27(30.7)	28(31.8)	12(13.6)
1996	85(100.0)	13(15.3)	25(29.4)	23(27.1)	24(28.2)
1997	78(100.0)	19(24.4)	26(33.3)	19(24.4)	14(17.9)
1998	129(100.0)	27(20.9)	35(27.1)	34(26.4)	33(25.6)
1999	198(100.0)	44(22.2)	55(27.8)	38(19.2)	61(30.8)
2000	250(100.0)	72(28.8)	58(23.2)	65(26.0)	55(22.0)
2001	235(100.0)	83(35.3)	66(28.1)	52(22.1)	34(14.5)
2002	322(100.0)	105(32.6)	110(34.2)	64(19.9)	43(13.4)

주 : ( )안은 구성비임.

자료 : 노동부.

<표 51> 산업대분류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 건, %)

	전 산 업	제 조 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기타 산업
1995	88(100.0)	57(64.8)	8(9.1)	9(10.2)	5(5.7)	9(10.2)
1996	85(100.0)	56(65.9)	8(9.4)	5(5.9)	9(10.6)	7(8.2)
1997	78(100.0)	42(53.8)	14(17.9)	4(5.1)	11(14.1)	7(9.0)
1998	129(100.0)	72(55.8)	37(28.7)	8(6.2)	9(7.0)	3(2.3)
1999	198(100.0)	116(58.6)	26(13.1)	21(10.6)	22(11.1)	13(6.6)
2000	250(100.0)	121(48.4)	25(10.0)	28(11.2)	54(21.6)	22(8.8)
2001	235(100.0)	117(49.8)	38(16.2)	17(7.2)	43(18.3)	20(8.5)
2002	322(100.0)	136(42.2)	72(22.4)	23(7.1)	81(25.2)	10(3.1)

주 : ( )안은 구성비임.
자료 : 노동부.

<표 52> 해결유형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 건, %)

	전 체	노사 직접교섭	노조 자체종결	기 타
1996	83(100.0)	79(95.2)	2(2.4)	2(2.4)
1997	77(100.0)	55(71.4)	20(26.0)	2(2.6)
1998	121(100.0)	81(66.9)	37(30.6)	3(2.5)
1999	194(100.0)	147(75.8)	46(23.7)	1(0.5)
2000	250(100.0)	189(75.6)	37(14.8)	24(9.6)
2001	235(100.0)	154(65.5)	57(24.3)	24(10.2)
2002	322(100.0)	235(73.0)	66(20.5)	21(6.5)

주 : ( )안은 구성비임.
자료 : 노동부.

<표 53> 주요 임금교섭 동향

(단위 : 개소,%)

	대상업체수	타결업체수	진도율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통상임금 기준
				임금총액 기준(2002년부터)	
1997	5,754	5,281	91.8	4.3	4.2
1998	5,476	5,156	94.2	-2.7	0.0
1999	5,097	4,744	93.1	2.1	2.1
2000	5,116	4,798	93.8	7.6	7.2
2001	5,218	4,857	93.1	6.0	6.0
2002	5,401	4,991	92.4		
7	5,116	3,276	64.0	7.9	7.7
8	5,116	3,677	71.9	7.9	7.3
9	5,116	3,985	77.9	7.8	7.3
10	5,116	4,232	82.7	7.7	7.3
11	5,116	4,410	86.2	7.7	7.3
12	5,116	4,798	93.8	7.6	7.2
2001. 1	5,218	21	0.4	5.8	3.9
2	5,218	129	2.5	5.8	4.8
3	5,218	286	5.5	5.4	5.0
4	5,218	628	12.0	5.4	5.2
5	5,218	1,262	24.2	5.7	5.4
6	5,218	1,803	34.6	5.7	5.5
7	5,218	2,589	49.6	6.1	6.1
8	5,218	3,187	61.1	6.1	6.0
9	5,218	3,720	71.3	6.0	5.9
10	5,218	4,072	78.0	6.0	5.9
11	5,218	4,588	87.9	6.0	5.9
12	5,218	4,857	93.1	6.0	6.0
2002. 1	5,401	74	1.4	7.4	
2	5,401	154	2.9	7.0	
3	5,401	420	7.8	5.5	
4	5,401	630	11.7	6.1	
5	5,401	1,435	26.6	6.6	
6	5,401	2,103	38.9	6.7	
7	5,401	2,887	53.5	6.9	
8	5,401	3,517	65.1	6.9	
9	5,401	4,161	77.0	6.9	
10	5,401	4,377	81.0	6.9	
11	5,401	4,655	86.2	6.8	
12	5,401	4,991	92.4	6.7	
2003. 1	5,751	107	1.9	5.0	
2	5,751	214	3.7	5.9	
3	5,751	413	7.2	6.0	
4	5,751	718	12.5	6.5	
5	5,751	1,306	22.7	6.7	
6	5,751	1,856	32.3	6.7	
7	5,751	2,491	43.3	6.7	
8	5,751	3,372	58.6	6.6	

자료 : 노동부.

<표 54> 산업재해 발생추이

(단위 : 개소, 명, 건수, %)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건수	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965	289	161,150	9,470	-	-	-	-
1966	594	222456	13,096	-	-	-	-
1967	1,142	336,159	18,207	-	-	-	-
1968	2,389	488,628	22,959	-	-	-	-
1969	3,696	683,377	31,705	-	-	-	-
1970	5,583	779,053	37,752	35,389	15.50	3.20	48.46
1971	7,799	833,441	44,545	43,090	15.44	3.73	53.45
1972	9,375	987,856	46,603	45,673	15.87	3.67	47.18
1973	13,924	1,166,650	59,367	58,485	15.12	2.84	50.89
1974	17,551	1,353,167	70,142	68,864	15.11	2.30	51.84
1975	21,369	1,836,209	81,641	79,819	16.76	3.29	44.46
1976	28,445	2,269,796	97,716	94,847	16.16	2.46	43.05
1977	38,829	2,646,506	118,011	117,077	16.21	2.72	44.60
1978	49,957	3,105,757	139,242	138,182	16.63	2.74	44.83
1979	55,763	3,607,595	130,307	128,457	13.52	2.89	36.12
1980	63,100	3,752,975	113,375	112,111	11.12	2.58	30.21
1981	59,029	3,456,746	117,938	116,698	12.38	2.72	34.12
1982	54,159	3,464,977	137,816	136,952	14.49	2.80	39.77
1983	60,213	3,941,152	156,972	156,116	14.00	2.66	35,99
1984	64,704	4,384,589	157,800	156,479	13.09	2.58	39.83
1985	66,803	4,495,185	141,809	140,218	11.57	2.68	31.55
1986	70,865	4,749,342	142,088	140,404	10.89	2.79	29.92
1987	83,536	5,356,546	142,596	141,495	9.77	2.90	26.62
1988	101,445	5,743,970	142,329	141,517	9.26	2.52	24.78
1989	118,894	6,687,821	134,127	128,138	7.47	2.19	20.06
1990	129,687	7,542,752	132,893	126,966	6.70	2.30	17.62
1991	146,284	7,922,704	128,169	125,755	6.35	2.34	16.18
1992	154,820	7,058,704	107,435	105,330	6.02	2.89	15.22
1993	163,152	6,942,527	90,288	88,817	5.18	2.73	13.01
1994	172,872	7,273,132	85,948	84,480	4.69	2.93	11.82
1995	186,021	7,893,727	78,034	76,388	3.90	2.82	9.89
1996	210,226	8,156,894	71,548	70,188	3.49	2.19	8.77
1997	227,564	8,236,641	66,770	65,732	3.28	2.32	8.11
1998	215,539	7,582,479	51,514	50,561	2.79	2.29	6.79
1999	249,405	7,441,160	55,405	54,534	2.92	2.11	7.45
2000	706,231	9,485,557	68,976	67,930	2.89	1.88	7.27
2001	909,461	10,581,186	81,434	80,433	3.13	2.12	7.70
2002	1,002,263	10,571,279	81,911	80,755	3.19	2.13	7.75

주 : 1) 도수율 $= \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2) 강도율 $= \frac{\text{총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3) 천인율 $=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표 55> 산업별 천인율 산업재해 발생추이

	전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1972	47.18	144.96	34.74	50.60	14.11	59.89
1973	50.89	115.99	41.55	48.27	12.53	69.90
1974	51.84	126.84	43.92	45.49	12.03	70.66
1975	44.46	134.09	41.76	38.45	21.25	59.94
1976	43.05	110.29	41.01	42.75	8.55	57.94
1977	44.60	102.31	44.50	34.98	11.32	72.56
1978	44.83	94.37	47.00	37.17	18.62	58.59
1979	36.12	96.55	36.70	31.38	14.58	45.61
1980	30.21	109.92	29.60	24.18	13.82	45.23
1981	34.12	129.23	31.99	33.72	17.72	43.31
1982	39.77	119.60	36.56	53.51	15.59	42.44
1983	39.83	113.40	38.93	47.47	17.57	36.14
1984	35.99	104.49	35.88	37.92	9.79	36.83
1985	31.55	119.77	31.51	31.41	7.52	31.60
1986	29.92	118.97	30.31	28.09	8.73	30.37
1987	26.62	111.21	27.80	22.74	7.75	28.56
1988	24.78	108.77	26.71	20.64	6.38	23.93
1989	20.06	113.99	23.26	14.18	6.05	22.42
1990	17.62	115.53	18.67	15.38	4.88	19.76
1991	16.18	113.18	16.86	16.10	4.01	18.74
1992	15.22	89.91	14.76	18.97	3.84	17.07
1993	13.01	89.82	13.48	14.38	2.84	15.45
1994	11.82	66.71	12.98	12.27	2.46	14.60
1995	9.89	53.53	11.81	10.06	2.83	12.53
1996	8.77	48.57	11.28	8.06	2.29	12.75
1997	8.11	51.69	10.17	7.19	2.52	12.07
1998	6.79	47.63	8.99	7.33	2.53	7.94
1999	7.45	60.40	11.38	6.05	2.59	7.87
2000	7.27	45.11	12.13	6.06	2.67	8.70
2001	7.70	73.52	12.15	6.88	2.57	8.76
2002	7.75	73.16	12.22	7.19	2.88	7.44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